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서용윤·이상훈·이종빈·김대민·김정민·이유정·김형만·이세정·정재호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 월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동국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서용윤 (부교수, 동국대학교)

연 구 원 : 이상훈 (조교수, 한남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종빈 (전임연구원, 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대민 (조교수, 동서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정민 (겸임교수, 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유정 (연구원, 휴먼메카)

연구보조원 : 김형만 (겸임교수, 동서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세정 (박사과정, 부경대학교)

연구보조원 : 정재호 (석사과정, 부경대학교)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4월 ~ 2022년 10월
- **핵심단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이행주체, 감독방안
- **연구과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1. 연구목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및 현장수준 확인

- 법령고찰 및 직무분석, 실태조사를 통한 직종별 이해관계자 분석, 안전이행 수준 확인, 직종별 필요한 안전조치 및 효과적인 감독방안 연구를 수행함

〈연구필요성과 연구목표〉

연구필요성	연구목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 책임주체의 정의	▶ (이해관계자 분석) 계약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책임주체를 정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효과적인 안전조치 방법 제시	▶ (직무분석 및 점검표 개발) 직무분석을 통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 형태 및 장소에 따른 효과적 안전조치 방법 제시
③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실태조사)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④ 법령 및 실무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 분석) 법령과 문헌의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분석 및 법령의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및 법령의 이론적 고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직무분석

- 직무정의 및 분석에 따른 주요 작업내용과 절차를 도출하고, 작업 중 위험요인 확인하여 실태조사에 활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안전조치 실태조사

- 직종별 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안전조치 점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수행

○ 직종별 이해관계자 분석 및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 안전조치 이행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로 이해관계자 모형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의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역할과 책임범위를 정의
- 노무를 제공받는 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이행의무주체의 혼동을 줄이고 안전조치사항 및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을 제시

○ 법령 개선방안 도출

-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

3. 연구결과

○ 관계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도출

-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협회 및 단체의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조치 책임과 의무주체를 도출하고, 안전조치 수준 향상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함
-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 역할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의 제도적 개선과 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언함
- 위험요인과 안전조치의 매트릭스 비교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공통 안전조치 사항을 떨어짐, 화물, 차량, 고객응대 측면에서 도출하고, 직종별 직무범위 정의를 통한 업무범위와 안전조치 사항을 정리한 뒤, 추가 개정할 안전조치 및 삭제 검토할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제시함

○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 이해관계자, 사업유형, 장소적 관계를 바탕으로 직종별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유형화하고 그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정의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안전조치 및 감독방안을 제시함
- 안전조치 이행 주체를 직종별 이해관계자 모형에 따라 계약체결사업자 중심의 사전조치 집중 사업자와 현장지배사업자 중심의 현장 안전조치 강화 사업자로 구분하여 현장 작동성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사전안전조치 집중 사업자 : 작업투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정보 제공 위주의 사전안전조치 역할과 책임 주체 정의
 - 현장 안전조치 강화 사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재해예방에 준하는 현장 안전조치 역할과 책임 주체 정의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용윤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위원 변정환
 - ☎ 052) 7030. 843
 - E-mail bjh6918@kosha.or.kr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배경	3
2) 연구필요성	5
2. 연구목표 및 체계	6
1) 연구목표	6
2) 연구체계 : 내용 및 방법	7
3. 선행연구분석 및 연구차별점	9
1) 선행연구분석	9
2) 연구차별점	17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령 고찰	 21
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령 고찰	23
1)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7조제1항)와 관련한 고찰	23
2) 안전보건교육(제77조제2항)과 관련한 고찰	39
2.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고찰	43

목 차

1) 산업안전보건법	4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3) 고용보험법	47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분석 및 사례 4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분석	51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령 제67조제2호)	51
2) 골프장 캐디(령 제67조제4호)	64
3) 택배기사(령 제67조제5호)	68
4) 퀵서비스(령 제67조제6호)	73
5) 대리운전기사(령 제67조제9호)	77
6) 방문판매원(령 제67조제10호)	81
7)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령 제67조제11호)	82
8)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령 제67조제12호)	84
9) 화물차주(령 제67조제13호)	8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사례	91

IV.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97

1. 실태조사 개요	9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자 의견수렴	102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102
2) 골프장캐디	105
3) 택배기사	107
4) 퀵서비스기사	110
5) 대리운전기사	112
6) 방문판매원	114
7) 방문점검원	116
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18
9) 화물차주	121
3. 전문가 의견수렴	124
1) 전문가 회의 개요	124
2) 의견수렴 내용	124
V. 직무위험분석 및 안전조치 개선사항	133
1. 직무위험분석	133

목 차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133
2) 골프장 캐디	135
3) 택배기사	136
4) 퀵서비스 기사	139
5) 대리운전기사	140
6) 방문판매원	141
7) 방문점검원	142
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43
9) 화물차주	145
 2. 안전조치 개선사항	146
1) 직종별 안전조치 적정성 점토	14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공통 안전조치 기준 검토	165
3) 직무정의 재검토	170
4) 사전 및 현장안전조치 책임 기준 검토	172
 VI. 안전조치 이행주체 분석 및 감독방안	177
1.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177
1) 이해관계자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177
2) 사업형태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180

3) 장소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184
4)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정의 및 범위	186
2. 이해관계자 분석	190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이해관계자 분석	190
2) 골프장캐디 이해관계자 분석	193
3) 택배기사 이해관계자 분석	194
4)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이해관계자 분석	196
5)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이해관계자 분석	199
6)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분석	200
3. 안전조치 감독 방안	203
1) 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자 유형화	203
2) 사업유형에 따른 사전조치 및 현장조치	206
3) 직종별 안전조치 감독 방안	211
VII. 결론	219
1. 규제 반영 방향	219
1) 안전조치 이행주체 정의	219
2) 안전조치 개선	220

목 차

3) 신규 직종 고려	221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2
참고문헌	225
Abstract	2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표 목차

〈표 I -1〉 연구필요성에 따른 연구목표	7
〈표 I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數)의 추정	12
〈표 I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형태 및 위험요인	13
〈표 I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국외 사례	16
〈표 II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직종별 안전조치	26
〈표 II -2〉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차이	32
〈표 II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	40
〈표 II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42
〈표 II -5〉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해석 문제	45
〈표 III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유형	53
〈표 III -2〉 건설기계 시도별 용도별 등록현황	54
〈표 III -3〉 건설기계 기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55
〈표 III -4〉 건설기계 기종별 명칭 및 형태	57
〈표 III -5〉 콘크리트 믹서트럭 작업분석	63
〈표 III -6〉 2020년 골프장 수	66
〈표 III -7〉 년도별 캐디 수	67
〈표 III -8〉 택배의 유형	69
〈표 III -9〉 택배기사 작업분석	72
〈표 III -10〉 퀵서비스 업무환경	73
〈표 III -11〉 퀵서비스 보험가입률	74
〈표 III -12〉 퀵서비스 작업분석	76

〈표 III-13〉 대리운전사업의 유형	78
〈표 III-14〉 방문판매원 작업분석	82
〈표 III-15〉 방문점검원 작업분석	84
〈표 III-16〉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작업분석	86
〈표 III-17〉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88
〈표 III-18〉 화물운송업 업종별 현황	89
〈표 III-19〉 화물운송업 작업분석	90
〈표 III-20〉 직종별 직무사례 시나리오	91
〈표 IV-1〉 실태조사 대상 및 수	100
〈표 IV-2〉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관계자 의견수렴	104
〈표 IV-3〉 골프장캐디 관계자 의견수렴	106
〈표 IV-4〉 택배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109
〈표 IV-5〉 퀵서비스 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111
〈표 IV-6〉 대리운전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113
〈표 IV-7〉 방문판매원 관계자 의견수렴	115
〈표 IV-8〉 방문점검원 관계자 의견수렴	117
〈표 IV-9〉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관계자 의견수렴	120
〈표 IV-10〉 화물차주 관계자 의견수렴	123
〈표 IV-11〉 노사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126
〈표 V-1〉 건설기계직접운전자(콘크리트믹서트럭) 위험요인	134
〈표 V-2〉 골프장 캐디 위험요인	135

표 목차

〈표 V-3〉 택배기사 재해 사례	137
〈표 V-4〉 택배기사 위험요인	137
〈표 V-5〉 퀵서비스 기사 위험요인	140
〈표 V-6〉 대리운전기사 위험요인	141
〈표 V-7〉 방문판매원 위험요인	142
〈표 V-8〉 방문점검원 위험요인	143
〈표 V-9〉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위험요인	144
〈표 V-10〉 화물차주 위험요인	145
〈표 V-11〉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47
〈표 V-12〉 골프장 캐디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0
〈표 V-13〉 택배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3
〈표 V-14〉 퀵서비스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4
〈표 V-15〉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5
〈표 V-16〉 방문판매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6
〈표 V-17〉 방문점검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58
〈표 V-1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60
〈표 V-19〉 화물차주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63
〈표 V-20〉 공통 안전조치 검토 사항	169
〈표 V-21〉 직무정의 검토 사항	172
〈표 VI-1〉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노무 주체 확인	178
〈표 VI-2〉 B2C 서비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181

〈표 VI-3〉 B2B 서비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182
〈표 VI-4〉 화물차주의 노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자	183
〈표 VI-5〉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 방향	185
〈표 VI-6〉 사업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방법 차별화	207
〈표 VI-7〉 현장안전조치의 책임 주체 및 감독 사항	209
〈표 VI-8〉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확인	211
〈표 VI-9〉 직종에 따른 사업유형별 이해관계자 모형 확인	213
〈표 VI-10〉 사업유형에 따른 직종별 안전조치 감독 주체	215
〈표 VII-1〉 연구 기대효과	223

그림목차

[그림 III-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관계도	52
[그림 III-2] 골프장 캐디 작업분석	68
[그림 III-3] 택배(기사)운송 업무흐름도	71
[그림 V-1]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한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46
[그림 VI-1] 건설기계 미소유자(도급기사)의 이해관계자 모형	191
[그림 VI-2] 건설기계 소유자의 직접 계약 유형의 이해관계자 모형	191
[그림 VI-3] 건설기계 소유자(지입, 개인사업자)의 중개 이해관계자 모형	192
[그림 VI-4] 골프장 캐디의 이해관계자 모형	193
[그림 VI-5] 골프장 캐디 교육 기관과의 이해관계자 모형	194
[그림 VI-6] 중간운송업자 중심 이해관계자 모형	195
[그림 VI-7] 운송사업자 중심 이해관계자 모형	196
[그림 VI-8] 퀵서비스/대리운전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자 모형	197
[그림 VI-9] 퀵서비스/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의 이해관계자 모형	198
[그림 VI-10]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가 통합된 경우의 이해관계자 모형	198
[그림 VI-11]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이해관계자 모형	200
[그림 VI-12] 화물차주(개인운송사업자) 이해관계자 모형	201
[그림 VI-13] 중개형 운송사업자 중심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모형	202
[그림 VI-14] 컨테이너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모형	202
[그림 VI-15] B2B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204
[그림 VI-16] B2C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205
[그림 VI-17] 장소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	2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I . 서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직접운전자, 골프장캐디,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등)는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영업자 형태를 지니는 중간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의 업무형태가 늘어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적 성격이 주목되면서, 정부에서는 안전 및 보건조치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체 수(모수)는 정의와 분류에 따라 정확히 집계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통계청(2021)의 경제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약 56만명 정도로 집계하거나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약 230만명 정도(2018년 기준)라는 연구보고서 결과(정홍준, 장희은, 2018)까지 다양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2015헌바413) 판결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로 언급하고 있다. 이보다도 먼저 2010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는 2019년 전부개정부터 조항이 포함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결과 법령에서 보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는 본인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대상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속(전속성)되어

경제적 의존성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일 노동법 상 ‘유사근로자’나 일본의 “위탁형 취업자”라는 용어로, 노동법 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제공계약 상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위주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돼 노동법 상의 보호가 요청되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임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어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전윤구 외 2021).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사용종속성을 이유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법적 규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의 특성과 관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2020년 1월 9개 직종으로 시작하여, 현재 14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산업재해발생 범위를 더 크게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의 의의가 있다.

- '20.1.26 9개 직종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인, 건설기계직접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21.11.19 5개 직종 추가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 ☞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소프트웨어기술자

또한, 사회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¹⁾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안전의 범위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규제하여, 재해예방조치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 연구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령 시행 초기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책적·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범위, 특성에 따라 직무분석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할 주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의무 등의 신설 이후 관련 제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 및 보건 교육)의 현장 안착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건설 기계직접운전자), 제4호부터 제6호(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까지의 해당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 교육이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대상 직종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노무관계가 복잡해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 관리하는 내용은 보험가입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은 단순히 보험가입사업주만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보험가입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는 이동경로나 상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적용제외 사유로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염병 등)가 있다.

역 장소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이행 주체를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작업형태의 위험성에 따라 현장에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의 계약이나 작업 프로세스, 장소 등을 파악하여, ① 안전조치 이행 책임주체 확인과 ② 안전조치 방법을 분석하고 제시해야 한다. 또한, ③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책임주체와 안전조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④ 법령 및 실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표 및 체계

1) 연구목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 I-1>과 같이 이해관계자 분석, 직무분석 및 점검표 개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실태조사, 문헌고찰 및 의견분석을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규정을 살펴보고, 직무분석을 통해 작업형태 및 장소에 따른 위험요인 도출과 안전조치 방법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주체를 살펴보고 안전조치 준수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한다. 최종적으로 전윤구 외(2021)에서의 논의와 유사하게, 안전조치 이행의무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직종별 이해관계자 분석을 수행하고,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검토·제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의 현장 작동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전윤구 외(202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표현하였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택배를 받는 일반 가정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범위에서 모호함을 보여준다.

〈표 I-1〉 연구필요성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필요성	연구목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 책임주체의 정의	▶ (이해관계자 분석) 계약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책임주체를 정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효과적인 안전조치 방법 제시	▶ (직무분석 및 점검표 개발) 직무분석을 통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 형태 및 장소에 따른 효과적 안전조치 방법 제시
③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실태조사)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④ 법령 및 실무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 분석) 법령과 문헌의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제시

2) 연구체계 : 내용 및 방법

- ① 문헌분석 및 법령의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분석) 국내와 유사하게 법률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종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주요 3개국 이상(독일, 영국, 일본 등) 비교·분석 수행
 - (법령의 이론적 고찰)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른 검토사항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안전조치 이행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② 직무분석 및 산업재해 현황 분석
 - (직무분석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 파악)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해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주요 사고발생형태의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안전조치 점검표 개발) 위험요인과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점검표 개발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안전조치 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 직종 : 건설기계직접운전자(시행령 제67조 제2호), 골프장캐디(제4호), 택배기사(제5호), 퀵서비스기사(제6호), 대리운전기사(제9호), 방문판매원(제10호), 방문점검원(제11호), 가전제품설치수리원(제12호), 화물차주(제13호)의 사업장
- (실태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확인 및 안전조치 우수사례 도출
- (실태조사 방식) 안전 및 보건조치 점검표 및 인터뷰 면접 조사
- (의견수렴 분석 및 시사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관리 방향
 - ☞ 직종별 안전 및 보건조치 점검표 개선 및 개발,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참여를 통한 자율안전 확대

④ 직종별 이해관계자 분석 및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 (직종별 이해관계자 모형)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계약, 업무, 장소 등 분석을 통해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행주체를 명확히 제시함

⑤ 법령 개선방안 도출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법령 개선방안 도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도출
- (구성 및 횟수) 노동계, 경영계, 학계, 고용부 및 공단 등 전문가 8명 내외(2회 이상)
- (내용) 연구 방향, 설문·실태조사 내용, 법령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토, 안전조치의 재해예방 실효성, 시행 후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인식 및 태도 변화, 동일직종 관련 사업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3. 선행연구분석 및 연구차별점

1) 선행연구분석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에 대한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후 송(2011)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적특성, 노동자성(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소득과 사회적 보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여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및 경제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박소민(2020)이 「근로기준법」과 현행 법률에 대한 해석론적 방식과 제개정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방식으로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두 방식의 절충방식 역시 제언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술 할 많은 연구(규모, 고용환경, 안전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범위를 먼저 규명하고 시작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종수 외(2021)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로 정리하였다.

-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 · 개별적 지위 · 감독 여부
-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 사용자가 근무 장소 · 시간을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 규정에 구속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에 따른 수익 ·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 · 고정급 여부
-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과의 전속성 여부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준하는 보호대상자 검토에 있어,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시각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의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오고 있다(이후송, 2011; 전윤구 외, 2021). 결과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거나 제3자 위탁형태를 취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 일본에서는 위탁형 취업자가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준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실태에 대한 연구

박지순 외(2014)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정책(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보험 등 고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직종별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나 경제적 전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위험 직종예측은 고용 및 취업, 산업안전 정책기획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자 및 시장 형성 시 발생할 고용환경과 산업안전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요구된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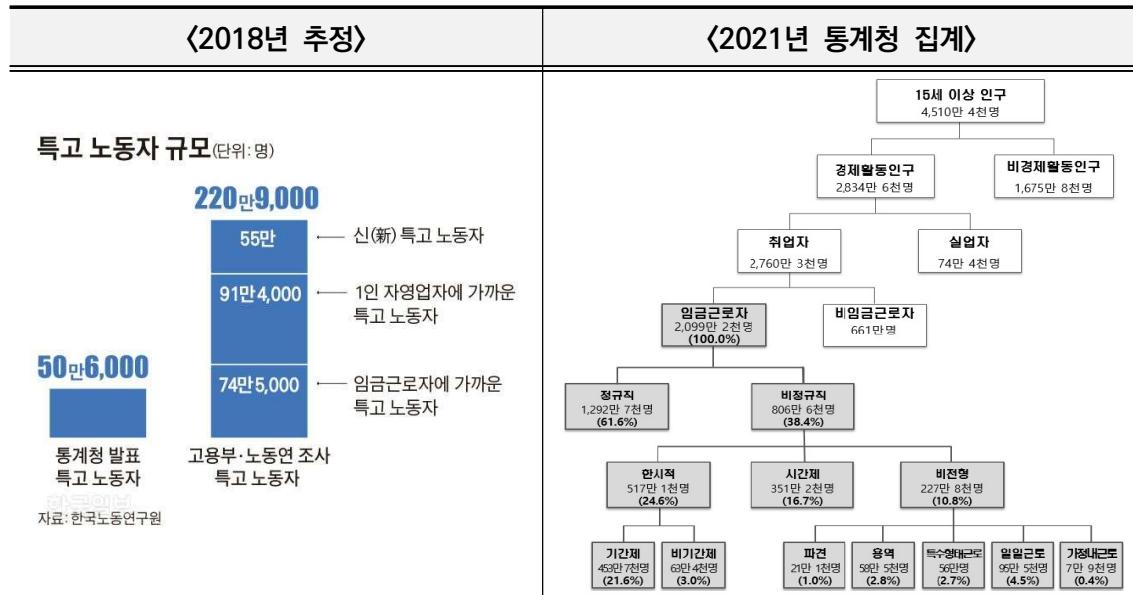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그 경제적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 이는 그동안 국가 사회보장정책제도의 일환인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자영업자 위치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적 위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인구조사나 가구조사는 임금 근로자 측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집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비임금 근로자 측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를 약 115만 명으로 추산하고, 2020년경에는 약 12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2015년 작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약 8.6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산된다고도 보고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국가승인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가 2021년 8월 56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7%로 발표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통계청 승인조사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비전형 근로자에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임금 근로자 661만명에 포함된 자영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다. 보완책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자영업자로 생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포함하기 위해, <표 I-2>와 같이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새로운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약 220만명으로 추정(정홍준, 장희은, 2018)한 사례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해석범위에 따라 직종별 지정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보고서마다 정확도를 확인하고 검증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³⁾.

3) 국가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9개 직종(2017년 기준)에 대해 약 48만명의 종사자 수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최은숙 외, 2018).

〈표 I-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數)의 추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에 대한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험한 작업형태와 함께 산업재해가 늘어나면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종사자 수의 추정도 어려운 상태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확한 산업재해통계도 보고되거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 위험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최은숙 외(2018)는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업무상 사고의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 응답 현황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종수 외(2020)에서는 〈표 I-3〉과 같이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위험요인을 안전사고, 건강장해, 심리적 유해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면접조사 도 동시 수행하여 주요위험요인을 직종별로 도출하였다.

〈표 I-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형태 및 위험요인

직종	설문조사			면접조사
	안전사고	건강장애	심리	
건설기계 운전원 (령 제67조제2호)	넘어짐· 미끄러짐	소음 및 분진	고용불안	협착·절단, 충돌, 추락, 전복, 교통사고, 분진 등 보건위생
학습지교사 (령 제67조제3호)	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장시간 객방문 및 옥외활동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부상), 질병(위장병, 방광염), 우울증(영업스트레스, 고객응대, 직장갑질)
골프장 경기보조원 (령 제67조제4호)	비래	혹서기 및 혹한기 작업	감정노동	장시간 야외노출, 부상, 타구사고, 열악한 휴게시설, 낙뢰, 유독물질(농약/약품) 노출, 혹서기·혹한기 경기진행, 감정노동, 성희롱
대리운전기사 (령 제67조제9호)	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감염성 바이러스	불공정 계약관계 (갑질)	교통사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도보이동과 불편한 자세, 직장내 괴롭힘, 감정노동
택배기사 (령 제67조제5호)				안전사고(손끼임,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혹서기·혹한기 작업, 감정노동, 교통사고
퀵서비스기사 (령 제67조제6호)	넘어짐· 미끄러짐	자동차 배기ガ스 및 미세먼지		교통사고, 자동차 배기ガ스 및 미세먼지, 혹서기·혹한기 작업, 심리적 요인(손님 독촉 전화)

전윤구 외(2021) 역시 2021년 기준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안전 조치 실태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관점에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계약체결과정이나 경제적 전속성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조치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0% 가까이 숙지여부를 잘 모르고 있으며, 23%는 잘 숙지하고 있으며, 27%는 숙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직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에서 준수나 숙지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였고, 사업장이 있는 택배기사(물류센터),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준수나 숙지여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점에서 장소나 위험성에 따라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현장 작동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지현 외(2020)에서는 건설기계 특고종사자 보호방안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체에 소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적종속성, 경제적 의존성, 근로자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노무계약 형태 및 유형, 안전보건조치 사항, 재해발생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5)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측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범위, 규모, 경제적 전속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은 경제적 전속성에 따른 보험가입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제적 전속성만으로 안전조치를 선별하거나 차등을 두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관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의무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논의는 최근 법 시행이 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유일하게, 전윤구 외(2021)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가 고용계약 관계도 중요하지만, 위험작업 영역에서는 계약과 관계없이 그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는 그 영역의 지배자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국외 사례에서도 비교분석하여, 독일과 영국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과 관계없이 지배적 사업장 위주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례로, <표 I-4>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계약관계가 보다 중시되는 국가도 있지만, 유럽권의 인식을 강조하여 국내 역시 안전조치의 이행책임주체를 작업장소 측면에서 고려하는 개정방안을 제언하였다(전윤구 외,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사업자 간의 관계로 보아 근로자적 위치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독일·영국·일본은 근로자적 해석을 일부 지니고 있다. 이 중 일본은 아웃소싱으로 인한 계약노동으로 보아 도급관리의 효과로 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책임을 부과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설기계직접운전자와 같이 사업장을 공유하는 일부 직종에만 해당된다 볼 수 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은 지배적 장소에서는 모든 취업자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사업이나 사업주로 정의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는 직종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국외 사례

국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준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용어 : 유사근로자(단체협약법에서 규정) 원칙적으로는 자영업자로 추정 노동법 상의 전형적인 종속근로자와 비교해서 고용관계에 있어 인격적인 종속성은 없다는 점에서 <u>전형적 근로자는 아니나,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자영업자로 볼 수도 없음에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취업자에 대한 사용자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를 통해 그 반사적 결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로서 취업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용어 : 사용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조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용어 :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사업자-독립계약자 간의 관계는 연방노동법 적용범위 제외 법적 지위 논의가 국내와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노동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안전조치 적용범위 제외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정의도 없음 단 주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함 캘리포니아 주는 일부 대상에 포함하고 중개업체에게 산업안전 기준과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용어 : 위탁형 취업자 대체로 업무위탁 또는 도급 등 <u>근로계약 이외의 노무제공계약</u> 하에서 <u>보수를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로 개인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u> 구체적인 직종의 유형들을 확정하고 있음 경제적 전속성이 높은 계약이 아닌 아웃소싱에 의한 계약노동으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관계에서 지시 혹은 명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 제외 노동안전위생법 상 도급관리로 간접적인 보호효과를 보고 있음 제3자 계약의 경우는 보호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강함

전윤구 외(2021)를 재구성

4) 추후 다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로, 사업장 작업에 특화된 일부 고위험 직종(건설기계직접운전자, 화물차주 등)의 작업장소인 건설현장이나 공장, 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독일과 같이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를 장소에서 작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 내지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 연구차별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사회의 특수한 직종 또는 업종 형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거나 변화함에 따라 노동정책 및 환경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 정의에서부터 고용환경, 그리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종별 주요위험요인 조사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문헌분석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전윤구 외(2021)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과 보호내용 연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령 해석과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기준마련,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차별점을 지닌다.

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실태조사 차별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유형별 고려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유형에 따른 실태조사가 명확치 않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건설현장 원청 또는 도급사, 그리고 중개/알선업체 등 다양함에도 유형별 실태조사나 점검항목 차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직종별로 이해관계자 분석을 수행하여 안전 조치 이행의무주체를 유형화 내지 구체화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해,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②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따른 효과적인 안전조치 관리감독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변화되는 특징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방법 역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확인한다. 즉,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업장소가 일반 가정 등 동일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온라인/모바일 위주의 매뉴얼 지급이나 업무학

인 등의 안전조치 방법을 의무화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업주에게 지시한다. 반면, 사업장이 존재하는 직종의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불분명하고 불가능한 안전조치가 아닌 직종 특징에 적합한 안전조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③ 직종별 직무비교를 통한 안전조치 기준 및 점검표 개선

직종별 직무분석과 비교를 통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이나 차별화해야 할 안전조치 기준을 발굴하여 점검표를 개선한다.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72조는 일괄적이고 구체적 기준조치로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관리에 준용하면 효과적인 일반적 사항이나 건설기계의 분류 고민 없이 일괄적인 구체적 기준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철강재 화물차주의 경우, 철강재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임에도 상하역 등의 차별적인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위주의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조치(제38조) 및 보건조치(제39조)를 따르거나,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경우는 제5장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이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제63조)에 준용하도록 안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 전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철강재의 경우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점검 유의사항을 차별화하는 점검표를 마련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차 주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직종별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령 고찰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령 고찰

1.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령 고찰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은 제77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부터 제시한 사항처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고찰해야 할 사항(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II장 2절에서 상세히 고찰한다)은 아래와 같다.

1)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77조제1항)와 관련한 고찰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에 대한 고찰

이 조항은 계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계약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최대한 배

제하기 위한 항목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즉, 도급, 파견, 하청 등 어떤 계약형태와도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약의 형식과는 별개로 대부분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계약의 단계이다. 하청의 하청을 주는 등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불분명해지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법령에서도 계약의 형식 외에도 계약의 단계 상 직접 책임소재를 맺을 당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형태나 업무형태, 장소 등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근로자와 유사하게”에 대한 고찰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보다 범위가 더 넓은 상황(또는 노무가 근로보다 범위가 더 넓은 상황)에서, 굳이 더 협소한 범위인 “근로자와 유사하게”라는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 때문에 유사한지 명확하지 않다. 단서로 제공한 “유사”하다는 조건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만 하면 사업이나 사업장이 아니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가정까지도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고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적으로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조치나 안전인증, 안전검사, 유해위험물질, 석면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기술기준(수치 위주)과 관리기준(체크리

스트 활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표 II-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따라, 규칙에 포함된 사항들을 직종별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규칙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위해 다시 규정함에 따라 중복규제 혹은 차등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근로직원이 같이 사무실에 있는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보험설계사에게 동일하게 규제하면 될 사항을 굳이 제672조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규제로 보일 수 있다. 특히, 건설기계직업운전자의 경우, 현장에서는 일용직근로자 등 건설 근로자와 동일하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따로 규정하여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일부 도급-수급 관계와 같이 규제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작업모 등의 착용이나 장갑의 사용 금지 등 직접적인 조치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충돌 가능성의 존재한다. 또한, 건설기계의 종류가 27종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규제조치하고 있는 문제점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참고할만한 규칙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이를 고용노동부령 수준에서 재조합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와 불균형적인 규제사항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논리라면, 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규칙은 없고,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추가될 때마다 규칙을 추가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에, 법의 범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개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제38조와 제39조의 법 조항을 적용하면서, “사업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하여 법적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표 II-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직종별 안전조치

조항	종사업명	해당 안전보건규칙	내용
제1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1호 · 제3호 · 제7 호 · 제8호 및 제10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제79조	휴게시설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무실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제667조	전도의 방지 작업장의 청결 분진의 흘날림 방지
		제41조제1항	작업장, 통로, 보호구,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 재료 및 구조 등, 비계 조립·해체 및 점검 등
		제3조	탑승의 제한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운전 시작 전 조치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작업모 등의 착용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제한속도의 지정 등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9절 양중기 제10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제1관(총칙), 제2관(지게차), 제3관(구내운반차), 제4관(고소작업대), 제5관(화물자동차)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2편제1장제12절(건설기계) 등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2편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5장(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2편제7장(벌목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8장(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1절, 제2절, 및 제4절
제3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4호	골프장캐디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79조	휴게시설
		제79조의2	세척시설 등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의자의 비치
			수면장소 등의 설치
			구급용구
		제86조제7항	탑승의 제한(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제172조	접촉의 방지
		제316조	꽃음접속기의 설치 · 사용 시 준수사항
		영 제41조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및 영 제41조에 필요한 조치
		해당조항 없음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제4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5호	택배기사	제3조	전도의 방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의2	분진의 흘날림 방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작업장
			통로의 조명
			통로의 설치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계단의 강도
			계단의 폭
			계단참의 높이
			천장의 높이
			계단의 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제38조제1항제2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제89조	운전 시작 전 조치
	제98조	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전도 등의 방지 접촉의 방지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총칙)	화물적재 시의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컨베이어)	컨베이어 이탈 등의 방지 비상정지장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트롤리 컨베이어 통행의 제한 등
	제385조	중량물 취급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화물취급 작업 등)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용 전 점검 등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하적단의 간격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화물의 적재
	제657조부터 제666조까지	제3편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해당사항 없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제5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6호	퀵서비스	제32조제1항제10호 보호구의 지급 등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 지시 제86조제11항 탑승의 제한 탑승 제한 지시 해당사항 없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의 정상작동여부

제6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9호	대리운전 기사	해당사항 없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제7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11 호	방문점검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의 관리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중량의 표시 등 작업자세 등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제8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12 호	가전제품설 치 수리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이동식크레인)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전기 기계 · 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의 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락의 방지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탑승의 제한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설계기준 준수 안전밸브의 조정 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전기 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전기 기계 · 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 · 기구의 적정설치 등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과전류 차단장치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꽃음접속기의 설치 · 사용 시 준수사항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	제3편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해당사항 없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제9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13 호	화물차주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총칭)	전도 등의 방지 접촉의 방지 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8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227조 (위험물 등의 취급 등)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79조 (화학설비 · 압력용기 등)	(폭발 및 화재로 인한) 대피 등
		제297조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중량의 표시 등 작업자세 등
		해당사항 없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제10항 법 제77조제1항 영 제67조제14 호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79조	휴게시설 정의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무실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건물 개 · 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3편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고찰

현행 제7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따르고 있다.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 상의 의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나 직종의 정의나 범위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달종사자와 현실 분포나 범위 상 구별하기 모호하며, 화물차주인 경우, 철강재를 운송한다고 나오지만 철강재의 범위가 없고 위험물질 역시 다른 법령이 취급량을 두는 반면, 이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만으로 두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상의 정의나 범주가 다른 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고려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서는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방과후학교담당강사, 관광통역안내사('22.7월 시행), 어린이통학버스기사('22.7월 시행) 등이 포함되었으며, <표 II-2>를 보면 화물차주 역시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를 안전운임 위주로 적용하는 등 범위를 한정('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없음)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마트로의 식자재 운반 등), 택배 지·간선기사(물류센터로 집하하는 택배원),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화물차주 관계를 더 강화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의도 상 피고용인의 직종 중에서도 위험한 직종 또는 업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법」보다 범위가 좁은 것에는 동의하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가 서로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2〉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p>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1.19〉</p> <p>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p> <p>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벳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p>	<p>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 12. 30., 2015. 4. 14., 2016. 3. 22., 2018. 12. 11., 2020. 1. 7., 2021. 1. 12., 2021. 6. 8., 2022. 3. 15.〉</p> <p>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1.24> 다. 삭제 <2015.4.14>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p> <p>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p>	<p>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p> <p>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p> <p>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p> <p>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p>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 · 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p>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p> <p>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p> <p>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p> <p>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p> <p>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p> <p>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p> <p>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p>	<p>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p> <p>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p> <p>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징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p>
------------------------	--	--

	<p>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p> <p>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 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p> <p>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p> <p>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p> <p>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p>
--	---

(5) “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한 고찰

주로 하나의 사업 역시 이것이 “업종”을 의미하는지, “사업자(사업주가 아닌 법인 사업자 등의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사업장(특정 현장 또는 대리점)”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는 주로 하나의 사업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특별히 규정한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시행령 제67조도 한국표준직업분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으며, 사업은 한 종류이면서 사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안전 및 보건조치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하기도 어렵다⁵⁾. 이런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의 책임자는 물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지정하기 어렵다.

(6)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에 대한 고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직종별로 노무 제공 주기나 시기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등록을 기업에 했음에도, 적게는 1주, 많게는 1년 가까이도 업무를 하지 않거나 1년에 2~3주 정도만 일을 하여 근로일수를 채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사실 상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법령상 “상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자칫 “상시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상시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오해할 경우의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조치는 물론 재해율 산정에 있다.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하게 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면 그 재해율은 과대계상될 수 있다. 이는 모수의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소의 이동이나 시기적

5) 이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납입 지불 사업주 주체를 선정하기에도 어려움을 가져온다. 현재,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은 사업자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적별로 분할납부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가입 사업주가 실적과 관계없이 모두 납부하고 있다.

으로 상시적 근무가 아님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유사업종이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공사 공종 및 공정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가 이동을 하게 되어 상시 근로자 수 추정이 어렵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상시 근로자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의 추정에 대해서 인구별 집계보다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출 인건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는 건설업 형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기준 이상의 급여를 기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상시 근로자로 대체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적합한 재해율은 기업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및 감독의 근거로 작동 할 것이다.

(7)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고찰

이 조항문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특히, 주기사-보조기사로 이루어지는 가전제품설치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관계로 해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경우 주기사는 사업주로 고려되어 안전조치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는 다르게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끼리 같은 업무단위(배달, 설치 및 수리 등)에 대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여부도 타인 사용여부로 봐야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2인 1조의 경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고용인 또는 사업주로 인식되는 것 역시 업무와 계약 특성 상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많은 경우, 보조자를 이용한 2인 1조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도 위탁형 취업자를 정의하면서 “주로 개인이 종사하는”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처럼, 국내 법령 역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안전보건교육(제77조제2항)과 관련한 고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로 규정되어, 교육시간은 [별표4], 교육내용은 [별표5]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표 II-3>과 같이 시행규칙 [별표4]를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과 특별교육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최초”的 정의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的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을 바꾸기 용이하고, 일부 업무를 쉬면서 노무를 재개하는 등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자주 사업장을 변경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1회성을 교육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의 차등과 “최초”라는 정의 없이 단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다. 추후 후술하겠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모호한 용어이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를 예로 들면, 중개/알선업체 와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 작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가 있다고 할 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계약업체인가? 건설현장업체인가? 단순히 관계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만으로 처리하면 안전보건교육의 이행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는 점에서도 교육이행주체,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록 및 보관 등을 노무제공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 II-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시행규칙 제95조제1항)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⁶⁾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고에는 예외 사항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만 타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체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역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이 법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라 명칭함)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자에 한하지만, 특수

6) 특별교육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히 서비스업 분야는 생소한 용어이다. [별표5]에 특별교육은 제1호제라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외에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어,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서 특별교육이 필요한 상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형태근로종사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차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건설기계조종사는 대부분 건설기계직접운전자라는 점에서 교육이수에 있어 그 교육시간과 내용을 대체하는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일부는 규격 제한(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굴착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다 면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표 II-4〉는 시행규칙 [별표5]의 교육내용이며, 직종의 구분 없이 교육자가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서는 직종별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일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놨음에도 교육내용에는 직종별 차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 간에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내용 역시 근로자 정기교육(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제가목)과 채용 시 교육(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제다목)을 혼합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의 직무특성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다. 또한, 직종에 따라 사업장 유무가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기존의 안전보건교육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불특정 사업장인 아파트, 건물 등 다양한 장소를 순회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종의 특징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시행규칙 제95조제1항)

교육과정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고찰

1) 산업안전보건법

서론에서도 주지했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서, 이 법령만으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者”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的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에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사업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서 노무를 제공받는 일반 소비자 역시 사업주라는 의미이며,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기본 정의에 어긋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서도 역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본다는 규정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내리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보다 큰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 제77조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주”로 명시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일반 소비자를 명확히 제외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 관련 법령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제1호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규정하며, 예외 조항으로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 등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최종 소비자로 고려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의 고객과도 대응되는 용어로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안전조치를 수행해

야 할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 중에서 “최종소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주체에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자는 제외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주 여부를 따져 가입 주체를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결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이 고용관계성에 의지한 경제적 전속성에만 의존한 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배적 사업장, 즉 장소를 근거로 중대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장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으로서 모든 작업 대상 사업장 위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전윤구 외(2021)에서도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의무 부담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부터 그 이행주체 의무를 검토하고 위험 영역 관리자라는 용어로 안전보건조치의무 부과의 정당성 근거에 따라 고용 관계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전윤구 외(2021)에서 제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험성 위주의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 독일과 영

국과 같이 고용계약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장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법 제77조제2항 안전보건교육의 수행 주체 구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중개자와 현장 사업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표 II-5>와 같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해석문제를 풀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명확히 정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표 II-5>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해석 문제

사업형태	계약형태	상황	문제점
B2B 구조	3단계 계약형태	건설기계직접운전자 A씨는 B 건설기계대여업체에 지입계약을 맺고, C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1)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B인가? C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2)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해야하는가?
	4단계 계약형태	화물차주 A씨는 B 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C 공장에서 물건을싣고, D 공장까지 운송하여 하역하였다.	1)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B인가? C인가? 아니면 D인가? 2)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해야하는가?
B2C 구조	4단계 계약형태	소비자 A씨는 B업체에게 신발을 주문하였다. B업체는 C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D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기사 E씨가 B업체의 신발을 수령하여, C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 이동시키고, F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기사 G씨가 소비자 A씨에게 전달하였다.	1)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가? 2)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해야하는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내야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者”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 제3항에서는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를 의미하여, 앞서 문제로 언급했던 일반 소비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사업이나 사업주로 규정했을 때보다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법은 2023년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로 전환되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 전속성이 삭제되고,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하여 시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호~6호〉 생략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고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해당 사업주와 노무수령자로 구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노무제공계약” 조항문구를 넣어 계약과 대가지급의 관계성을 명시하였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가 기준 없이도 노무를 제공만 받으면 모두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는 해석이어서, 사업 외적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려는 의도보다는 명확하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법」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가령,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라고 두 개로 분류하고서는, 마지막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라고 명시하여 사업이 아닌 노무수령자는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곧 시행될 골프장 캐디의 경우, 앞서 언급한 상황에 대해 일정한 대가는 골프 사용자가 치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골프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내야한다는 해석을 지닐지도 모른다. 계약은 해당 사업주와 하나, 일정한 대가는 골프 사용자에게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노무제공계약은 골프장과 체결하고, 대가는 골프장 이용 고객에게 받을 수 있도록 회피할 수도 있지만, 법령만으로는 자칫 대가를 지불하는 노무수령자인 이용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대가를 받는 자를 한정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 분석 및 사례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분석 및 사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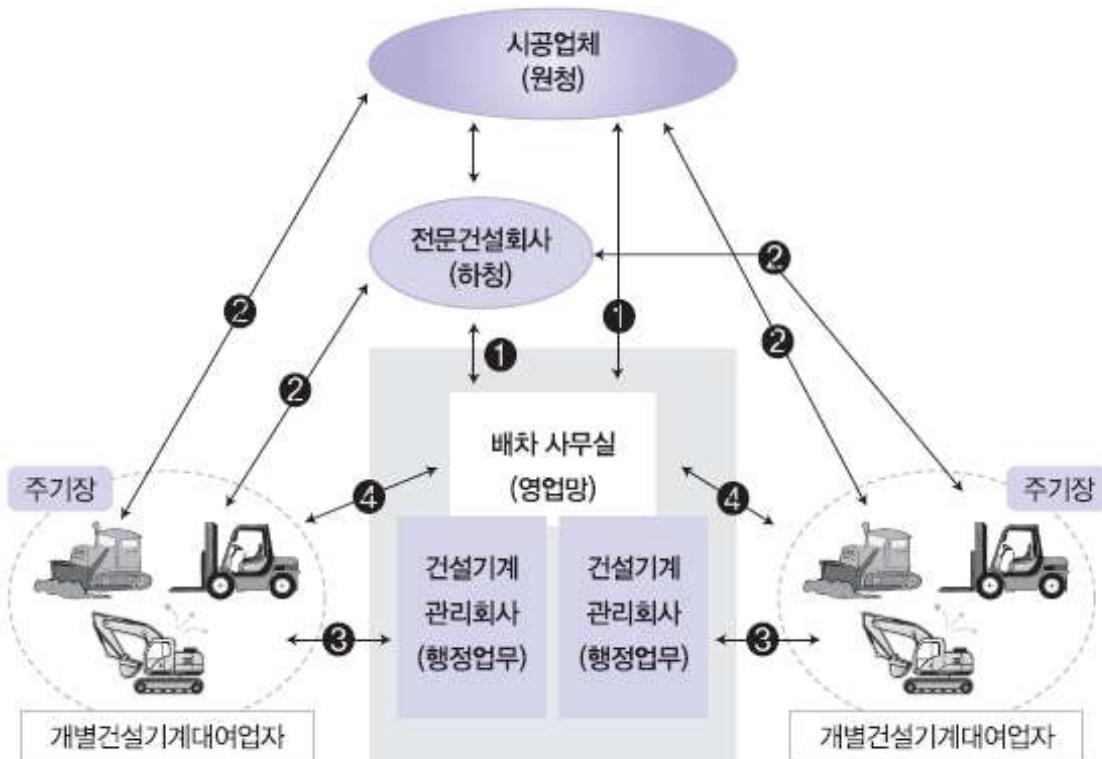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령 제67조제2호)

(1) 직무정의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소유자와 운전자를 분리하여 고려하고 있다. 즉, 건설기계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할 수도 있으며, 임대만 하고 운전자는 따로 구하는 형태가 존재한다. 전자는 건설업의 건설장비운영업에 포함되며, 후자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으로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건설기계소유자와 운전자는 현장 업체(건설 및 제조)와 건설기계사업자로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체(일반, 개별)⁷⁾, 건설기계관리회사⁸⁾, 배차업체(사무실)⁹⁾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그림 III-1]과 같이 조성된다(김대식, 2009).

- ① 건설업체와 배차업체(사무실, 영업망)와의 관계
- ② 건설업체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와의 관계
- ③ 건설기계관리회사(법인형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와의 관계
- ④ 배차업체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와의 관계

- 7)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59조의 [별표14]에서 건설기계대수, 사무실, 사무설비, 주기장 소유로 규정되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는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수입금의 관리 및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사무설 및 통신수단, 주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는 4대 이하의 건설기계와 사무실, 주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한다.
- 8) 건설기계 운영과 관련된 주기장 대여 및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받는 회사로서, 업계 내에서는 지입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법적으로는 법인형태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를 의미한다.
- 9) 배차사무실은 건설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주는 하나의 중개업자로서, 건설기계사업과는 무관한 서비스업으로 고려하면 되나, 배차업체 등으로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 관계가 진행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역시 배치관리를 위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차업무가 가능하다.



[그림 III-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관계도(김대식, 2009)

위의 네 가지 유형은 주기장 등의 건설기계 관리의 효율성과 건설업체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그만큼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기계의 소유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표 III-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¹⁰⁾. 여기서 비정규직은 도급기사부터 개인형 용차기사까지로 볼 수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정하는데는 일부 고려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급기사의 경우는 직접운전자이지만 자차 운전자는 아니며, 일용직으로 고용된 도급기사의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할 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관계는 업체와 중개업체, 그리고 해당 건설기계직접운전자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 정지현 외(2020)의 pp.28-38 참고

〈표 III-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유형

구분	직영기사	도급기사	불하기사	지입기사	조합형 용차기사	개인형 용차기사
정의	건설회사 자체 소유 건설기계를 조종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운영	건설회사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금을 분할 납부	본인 소유 건설기계를 지입하여 운영	개별건설기 계대여업자끼리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본인 소유 건설기계를 업체 또는 배차사무실과 전속계약하여 운영
소속 및 관계	건설업체 제조업체	건설업체 대여업체	건설업체 제조업체	대여업체 배차업체	대여업체 배차업체	건설업체 제조업체 배차업체
기계 소유	업체소유	업체소유	기사소유	기사소유	기사소유	기사소유
사업 형태	고용	노무만 제공	할부금납부	영업권임대	법인(조합)	개인사업자
고용 형태	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 도급기사가 일용직 계약으로 노무만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자)				

* 정지현 외(2020)를 수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建設機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증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밸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으로 총 27종이 건설기계에 해당된다. 〈표 III-2〉는 우리나라 시도별 용도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가 건설기계가 264,651대, 영업용 건설기계가 263,679대, 관용 건설기계가 3,910대로 총 532,240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건설기계 시도별 용도별 등록현황

구분	자가용	영업용	관용	계
총계	264,651	263,679	3,910	532,240
서울	9,270	37,987	193	47,450
부산	7,184	11,239	60	18,483
대구	5,447	8,232	66	13,745
인천	9,388	11,494	78	20,960
광주	4,417	8,188	51	12,656
대전	2,836	5,033	68	7,937
울산	6,066	5,419	18	11,503
세종	1,502	1,087	18	2,607
경기	57,372	47,949	477	105,798
강원	11,971	16,012	599	28,582
충북	16,871	15,600	278	32,749
충남	24,165	17,886	386	42,437
전북	22,013	13,503	423	35,939
전남	25,794	18,102	343	44,239
경북	29,715	21,437	423	51,575
경남	26,412	20,174	328	46,914
제주	4,228	4,337	101	8,666

건설기계 종류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굴착기(164,701대), 지게차(207,721대), 덤프트럭(55,876대)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26,111)이 타 건설기계에 비해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3〉 건설기계 기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구분	자가용	영업용	관용	계
불도저	388	2,996	43	3,427
굴착기	58,434	104,781	1,486	164,701
로더	21,972	7,100	576	29,648
지게차	166,961	39,503	1,257	207,721
스크레이퍼	0	7	0	7
덤프트럭	7,966	47,491	419	55,876
기중기	759	9,886	12	10,657
모터그레이더	25	549	11	585
롤러	870	6,349	55	7,274
노상안정기	1	0	0	1
콘크리트뱃팅플랜트	29	43	0	72
콘크리트피니셔	25	105	0	130
콘크리트살포기	2	0	0	2
콘크리트믹서트럭	3,539	22,572	0	26,111
콘크리트펌프	125	6,126	1	6,25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0	1	0	1
아스팔트피니셔	141	904	2	1,047
아스팔트살포기	36	50	1	87
골재살포기	0	1	0	1
쇄석기	194	176	0	370
공기압축기	688	3,601	0	4,289
천공기	2,167	3,928	0	6,095
향타 및 향발기	79	1,063	0	1,142
자갈채취기	10	7	0	17
준설선	54	87	0	142
특수건설기계	76	555	46	677
타워크레인	110	5,798	0	5,908
총계	264,651	263,679	3,910	532,240

특히, 가장 많은 등록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타 업종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등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7종의 건설기계 대부분은 해당 현장 내로 이동(설치포함)시켜서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과 같이 몇몇 건설기계의 경우 현장 내에서 건설장비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재료를 제공 받아 해당 현장에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형태의 건설기계들도 있다. 즉, 건설기계의 경우 현장 내에서 기계 자체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와 재료를 제공 받아 운반한 후 현장에 제공하는 형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직무 분석 및 위험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2) 직무 분석

27종의 건설기계는 <표 III-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업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태 및 쓰임새는 모두 다르게 활용되고 있으며, 27개의 건설기계 중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과 같이 해당 현장 내로 이동(설치포함)시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과 같이 현장 내에서 건설장비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재료를 제공 받아 해당 현장에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형태의 건설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불도저, 굴착기 등과 같이 현장 내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작업 전 해당 기계 점검, 운행 및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는 필요한 원자재(골재, 시멘트 등)를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서 이동 후 해당 현장(원정)에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완료하게 된다.

〈표 III-4〉 건설기계 기종별 명칭 및 형태

건설기계명	범위	
	설명	사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건설기계명	범위	사진
	설명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팅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명	범위	
	설명	사진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명	범위	
	설명	사진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뽕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명	범위	
	설명	사진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딥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p>〈도로보수트럭〉</p>  <p>〈노면파쇄기〉</p>  <p>〈노면측정장비〉</p>  <p>〈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p>

건설기계명	범위	
	설명	사진
27. 타워크레인	<p>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p>	 <p>〈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p>  <p>〈터널용 고소작업차〉</p>  <p>〈수목이식기〉</p>  <p>〈트럭지게차〉</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개의 건설기계는 사용 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세부 직무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관련된 자는 콘크리트를 레미콘 업체에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제공 받아 건설현장까지 이동하여 타설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전자는 운행 전·중·후에는 다음 <표 III-5>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III-5> 콘크리트 믹서트럭 작업분석

공정명	작업명	작업 내용	사용 도구/설비
준비작업	차량 점검	① 원동기의 상태 및 각종 오일 등을 점검 ② 주제동장치 및 주차 제동장치 작동 유무 상태 확인 ③ 조향장치의 유격상태 확인 ④ 점등장치의 작동 상태 확인 ⑤ 주행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 ⑥ 후사경·후진 경고장치 또는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⑦ 각종 작업장치의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테스트 해머, 조명장치 및 전기기구, 고임대 등
	작업 준비	① 작업 전 원동기의 시동을 켜고 충분한 워밍업 ② 드럼 조정 레버를 중립, 혼합에 두고 드럼을 저속회전	드럼, 호퍼, 맨홀 등
운반작업	상차	① 콘크리트를 공급업체로 부터 호퍼를 통해 콘크리트를 드럼 투입 ② 투입과 동시에 드럼을 저속에서 적정 속도로 회전 ③ 투입량을 확인	'작업 중' 표지판, 고임목
	운전	① 콘크리트 투입 완료 후 드럼을 회전하면서 납품처로 운반 ② 양질의 콘크리트를 제공(90분 이내)하기 위한 교통상황 확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하차	① 납품처에 도착 후 정해진 위치에 정차 ② 차량바퀴에 고임목 설치 ③ 배출 전 드럼 내의 생 콘크리트를 충분히 혼합한 후 타설	'작업 중' 표지판, 고임목
정리작업	작업 후 청소 및 정리	① 콘크리트 투입구(호퍼) 물청소 ② 드럼 내부 세척 및 부착되어 응고된 콘크리트 제거. ③ 물탱크, 물펌프, 물호스 내부에 잔류하는 물을 완전히 제거	폐콘크리트 및 폐수 수거용 장치

2) 골프장 캐디(령 제67조제4호)

(1) 직무정의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골프장 캐디는 법적으로 정의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계운전자나 택배기사, 화물차주와 같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사업자 외에 골프장 사업주가 일반 가입자와 같이 특수한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정의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의 직무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 중분류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소분류 432 여가 서비스종사자 / 세분류 4329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 세세분류 43292 골프장 캐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대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골프장 캐디는 서비스의 접점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골프장의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타국과는 달리 국내는 캐디 동반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당연한 골프문화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형 조건이 불리하여 이용 가능한 골프장의 수가 많지 않고, 기후의 영향으로 이용 가능한 날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서 기인한다. 또한, 지대가 높아서 골프장의 조성비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골프장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회전율을 높여야만 하여, 이를 위해 캐디 동반을 의무화하여 7-10분 간격으로 팀을 회전시키는 기형적인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국내 골프는 여가 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가격 민감도가 낮으므로, 고객은 큰 거부감이 없이 캐디

의무동반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캐디라는 직업집단의 보상구조는 대단히 특이하다. 보통 서비스직 종사자 의 경우 조직에 고용되어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의 대가를 팁(tip)으로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팁은 서비스의 품질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성격을 지니는데 비하여, 캐디피는 ‘tip’이 아닌 ‘fee’라서 고객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장영주 외 2018), 골프장 소유주가 아닌 골프 이용객인 소비자와 대가를 거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1년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골프장업의 수는 회원제 157 곳과 대중제 357곳을 합쳐 총 514곳이며 경기도가 154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61곳, 경북이 50곳의 순서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따라 하루 내장객 수(팀)가 정해지며 내장객의 수(팀) 만큼 캐디의 수가 필요하다. 2020년의 골프장 규모는 <표 III-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 2020년 골프장 수

지역	총계		회원제		대중제	
	사업장수	홀수	사업장수	홀수	사업장수	홀수
전국	514	9,837	157	3,573	357	6,264
서울	1	27	-	-	1	27
부산	10	180	6	135	4	45
대구	2	27	1	18	1	9
인천	11	260	2	36	9	224
광주	3	45	-	-	3	45
대전	3	36	1	18	2	18
울산	4	81	2	54	2	27
세종	3	72	1	27	2	45
경기	154	3,093	69	1,620	85	1,473
강원	61	1,112	14	324	47	788
충북	37	756	5	117	32	639
충남	25	432	5	90	20	342
전북	27	473	3	63	24	410
전남	40	780	6	135	34	645
경북	50	918	12	297	38	621
경남	41	828	13	324	28	504
제주	42	717	17	315	25	40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1년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표 III-7〉의 근로복지공단 2022년 4/4분기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골프장 수 444곳과 골프장 캐디 수 27,504명을 기준으로 2017년 골프장 수 454곳과 골프장 캐디 수 28,437명으로 2020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7〉 년도별 캐디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골프장 캐디 수 (명)	27,504	28,437	28,256	29,975	31,928
사업장 수 (개소)	444	454	464	486	493

※ 출처 : 근로복지공단(2020년 4/4분기 통계현황)

(2) 직무분석

골프장 캐디의 표준 작업과정은 [그림 III-2]와 같다. 경기 전 준비작업에서는 골프카트의 이상여부 및 충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경기 보조를 위한 준비물을 체크한다. 또 해당 고객의 명단을 확인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된 골프채를 카트로 상차한 후 골프채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한다.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확인한 후 카트에 고객을 태우고 경기 진행을 위하여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을 한다. 본인 소개 및 준비운동을 하고 경기 진행을 위한 지형 및 코스 안내를 하여 거리 및 공략법을 조언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별 골프채 종류에 따른 거리를 확인하고 거리에 맞는 골프채를 전달한다. 또한, 고객별 볼의 낙하지점을 확인하여 남은거리 및 홀 이탈여부를 고객에게 알려준다. 그린위에서는 볼의 낙하로 인한 피치마크를 정리하여 주고 퍼팅라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조언한다. 매홀 홀아웃 하고나면 스코어를 정리하여 스마트패드 및 기록지에 기록한다. 또한, 경기중 해저드 주변 또는 숲속, 카트 이동 시 급커브 구간, 플레이어의 볼 진행 방향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18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매홀 반복하여 공략법 외 경기 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정리작업은 경기를 마친 후 골프채를 정리하며 분실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고 최종 스코어 정리를 하여 기록을 마무리한다. 카트에 남아있는 고객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고객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리된 골프백을 고객차량으로 상차한 후 고객에게 캐디피를 받고 카

트고로 돌아온다. 카트고로 돌아와서 카트를 청소하고 주차 및 충전을 한다. 필요 시 배토작업 및 코스 정리업무를 하기도 한다.



[그림 III-2] 골프장 캐디 작업분석

3) 택배기사(령 제67조제5호)

(1) 직무정의

택배는 일반적으로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밖의 장소에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공정거래 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을 말한다.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표 III-8>과 같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택배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일관운송책임 하에 주로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고객의 문전 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로, 대형/대량화물의 ‘터미널에서 터미널(Terminal to Terminal)’ 화물 수송형태와 달리 소형/소량화물의 문전에서 문전(Door to Door) 형태의 최종 목적지(last mile)까지의 화물 수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표 III-8〉 택배의 유형

종류	개념
일반택배	•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
편의점 택배	• 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맡기면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
지하철 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KTX 택배	• KTX 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서비스 • 전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STATION-TO-STATION)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
국제 택배	•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택배기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의인데, 택배기사는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따라가야만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기사를 살펴볼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가목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운송 사업을 허가받아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6조에 택배서비스전용 이외로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택배기사도 화물 차주의 하나로서 개인소유의 차량을 소유하여 개인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를 이용하는 횟수를 계산해 보면 33여 회 가량이다. 이는 택배가 국민 누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통계청 운수업 조사(2019년 기준) 결과 택배기업은 22개 업체¹¹⁾이며 관련 종사자 수는 45,306명 수준이며, 매년 종사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출액은 연간 6조 2,555억 수준이다. 또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86.3%,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93.7%,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98.0%,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86.0%로 조사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근로기준법」이 재정비화 되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2) 직무분석

택배기사 직무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III-3]과 같이 택배운송사업의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접수는 화물 발송을 위해 택배사의 정보시스템 상에 화물정보를 접수하는 단계이며 화물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데, 최근 온라인 구매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의 상품구매 이후에 판매자가 승인을 하면 전자적 형태의 발송의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화는 접수된 화물은 택배기사가 담당 지역을 순회하며 집화를 실시하는데 주로 배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업체, 또는 제조사 등 대량 발송처가 각 택배사의 물류센터 또는 인근 지역에 입주하여 택배기사의 순회 방문 없이 각 소화물에 발송용 송장만을 부착하여 패렛트 단위로 집하되거나 택배사의 컨베이어와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전달되는 형태도 있다.

서브 물류센터(또는 대리점) 상/하차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브 물류센터(또는 대리점)에 집화된 화물을 허브 물류센터로 보내기 위해 화물을 일시 적재 및 보관하는 창고의 기본 기능이 있으며, 허브 물류센터에서 지역별 서브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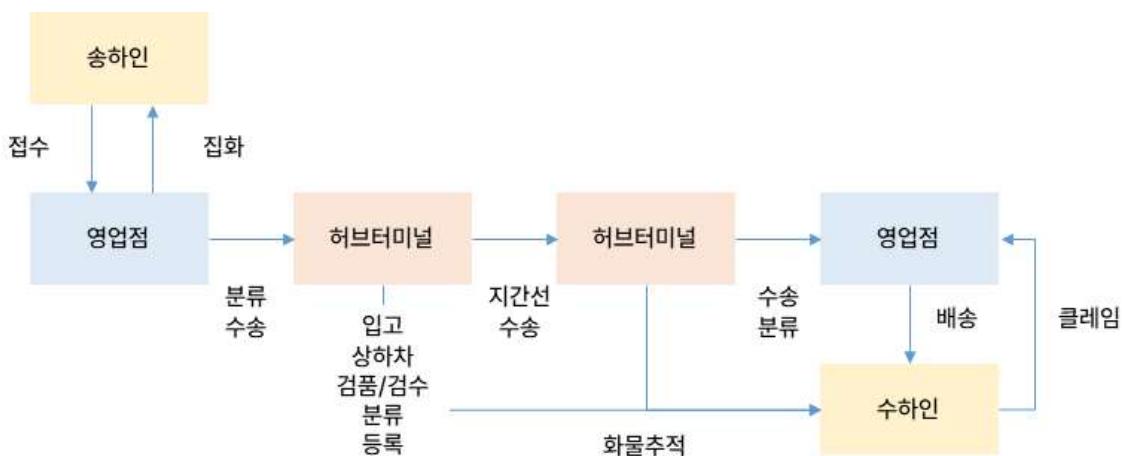
11)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2021.12. 기준 20개(CJ, SLX, 건영,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이다.

류센터로 보낸 화물을 소규모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간선 운송(상/하행)은 대형 차량을 이용하여 허브 물류센터와 지역별 서브 물류센터(혹은 대리점) 사이를 이어주는 육상운송을 뜻하며, 운송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허브 물류센터(상/하차및 화물 분류작업)는 중앙 집중화된 허브 물류센터의 경우 각 지역에서 간선차량을 통해 운송된 화물을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화물을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배송은 일반적으로 배송은 지역별 서브 물류센터(혹은 대리점)에서 화물을 수취하여 최종 목적지(문전)까지 운송하는 업무(last mile)를 뜻하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 집화도 이루어진다.

이 업무흐름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택배업과 허브터미널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관리하는 형태이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집화, 배송 등을 위탁받은 자영업자(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대리점)로 볼 수 있다. 이 때,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9조에 따라 영업점이 택배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행하는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관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업무위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3] 택배(기사)운송 업무흐름도

이와 같은 업무흐름에 따라, <표 III-9>는 일반적인 택배기사 작업분석을 정리하였다. 분류작업에서는 수취된 물품의 배송지역별 분류와 컨베이어, 롤테이너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포장작업은 소형 물품에 대한 포장 랩 작업, 운반구 적재 작업, 비닐로프를 이용한 묶음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차량 적재는 인력 또는 대차를 이용한 물품의 차량 적재함 적재를 수행한다. 물품 정리는 지역별, 크기별로 화물운반 차량의 적재함을 정리하고, 수집된 화물을 배달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을 하게 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달 차량에서 물품을 하차하여 배달지로 운반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차를 이용하거나,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이용한 인력 운반하여 배송 물품의 최종 인도를 하면 확인 작업으로 물품 수령 확인 날인을 받고, 다음 목적지 전달 물품 확인 및 정리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차량정비를 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표 III-9> 택배기사 작업분석

작업순서	작업내용
(1) 분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취된 물품의 배송지역별 분류 • 컨베이어, 롤테이너를 이용한 운반
(2) 포장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물품에 대한 포장 랩 작업 • 운반구 적재 작업 • 비닐로프를 이용한 묶음 작업
(3) 차량 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또는 대차를 이용한 물품의 차량 적재함 적재
(4) 물품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크기별로 화물운반 차량의 적재함 정리
(5) 차량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화물을 배달차량(소형트럭, 오토바이)을 이용하여 도로 운행
(6) 물품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차량에서 물품을 하차하여 운반
(7) 운반/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를 이용한 운반 •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이용한 인력 운반 • 배송 물품의 최종 인도
(8) 확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수령 확인 날인 • 다음 목적지 전달 물품 확인 및 정리 작업
(9) 차량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예방정비

4) 퀵서비스(령 제67조제6호)

(1) 직무정의

퀵서비스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¹²⁾. 퀵서비스업은 이륜택배 또는 오토바이 택배라고도 주로 불리며 도시와 인근 지역의 소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직무로는 오토바이 외에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퀵서비스 운전자의 차량운행여건(월평균)을 <표 III-10>과 같이 살펴보면, 월평균 운행일수는 21.3일, 월평균 화물적재건수는 340.8건 수준이다. 퀵서비스 운전자의 월평균 총 운행거리는 2,140km이고, 월평균 적재 운행거리는 1,585km(70.1%)이며, 월평균 공차 운행거리는 555km(29.9%)이다. 퀵서비스 운전자의 월평균 운행시간은 평균 123.7시간, 월평균 운행외 시간은 69.5시간 수준이다. 퀵서비스와 배달종사자의 차이라고 본다면, 퀵서비스는 지역간 이동이 많아 운행거리가 길고, 그만큼 콜비가 높은 특징이 있다.

<표 III-10> 퀵서비스 업무환경

년도	월평균운행일수 (일)	월평균화물적재건수(건)	월평균총운행거리(Km)	월평균적재운행거리(Km)	월평균공차운행거리(Km)	월평균운행시간(시간)	월평균운행외시간(시간)
2016	22.4	333.4	2,498.7	1,515.7	983.0	116.1	92.8
2017	22.6	331.7	2,669.3	2,021.6	647.7	135.9	73.1
2018	22.3	354.3	2,744.1	1,904.3	839.8	125.3	91.3
2019	22.1	346.0	2,364.8	1,647.5	717.3	110.9	107.5
2020	22.0	333.3	2,321.0	1,414.3	906.7	133.6	80.8
2021	21.3	340.8	2,139.9	1,585.5	554.5	123.7	69.5

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위주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업무형태에 퀵서비스가 해당되나, 이륜자동차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택배기사와 적용방향이 다르다.

〈표 III-11〉의 보험가입 형태를 보면 쿼서비스 운전 대부분(99.3%)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대부분 100% 가입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15.4%, 산재보험은 7.2%만 가입되어 있다.

〈표 III-11〉 쿼서비스 보험가입률

년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2016	13.2%	1.7%	99.8%	4.9%
2017	10.8%	0.0%	100.0%	5.6%
2018	19.4%	0.7%	99.0%	5.2%
2019	16.3%	1.0%	99.3%	13.4%
2020	18.6%	0.0%	100.0%	5.2%
2021	15.4%	0.3%	100.0%	7.2%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쿼서비스는 경제적 전속성 단서를 포함하여, 주로 하나의 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로 하나의 쿼서비스 사업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의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같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적용 대상으로 전속기사는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주로 그 업체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고, 비전속기사는 여러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여러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속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다. 실제로는, 쿼서비스 기사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쿼서비스 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약하고 있으며, 업무 자체는 계약한 쿼서비스 회사 외의 프로그램 업무요청(콜)을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즉, 소속여부와 등록여부에 따른 업무우선순위를 주된 사업자에 먼저 배정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전속성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서, 한 업체에만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요청은 계약한 퀵서비스 회사가 아닌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 구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I.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2) 직무분석

퀵서비스의 일반적 운영절차는 <표 III-12>와 같이 포장작업, 물품적재, 오토바이 운전, 물품하차, 운반/배달, 확인작업으로 진행된다. 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로 발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키게 만든, 바퀴가 두 개 달린 원동기로, 분류는 이륜차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쪽에 배달용 함을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III-12〉 퀵서비스 작업분석

작업순서	작업내용	
포장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물품에 대한 포장 랩 작업 • 운반구 적재 작업 • 비닐로프를 이용한 묶음 작업 	
물품 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오토바이에 적재 	
오토바이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화물을 배달차량(오토바이)을 이용하여 도로 운행 	
물품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에 도착하여 배달 물품 하차 	
운반/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 등을 이용한 인력 운반 • 배송 물품의 최종 인도 	
확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수령 확인 날인 • 다음 목적지 전달 물품 확인 및 정리 작업 	

5) 대리운전기사(령 제67조제9호)

(1) 직무정의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 주는 서비스로 음주 운전 단속시행으로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1981년 경찰정의 음주측정기 도입으로 음주운전단속이 시행되면서 주류음식 업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취객(고객)의 자가용 자동차를 집까지 대신 운전해주는 시스템에서 연유되었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무전기로 연결 해주는 방식의 운영에서 90년대 중반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주문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폰을 활용해 몇몇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등장)하면서 대리운전업체가 각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시장의 구조는 이용자(고객),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 및 프로그램 앱(APP)사로 구성되어 진다. 대리운전업체는 콜센터로 이용자(고객)의 주문(전화번호, 위치 등)을 직접 접수하는 업체를 말하며, 프로그램 앱(App) 사(社)는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이용자 인근의 대리운전기사 또는 다수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업체이다.

대리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1항)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대리운전원은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자”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표III-13>과 같다.

〈표 III-13〉 대리운전사업의 유형

형태	내용
개인 연합	지역 기반으로 무전기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하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운전자 위주로 활동하면서 업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지역 대리	주류 음식업종과의 계약을 통해 대리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사업주가 지불하는 운영 방식
법인 대리	대기업 등의 법인, 대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리 운전을 제공하기 위해 외주 방식으로 운영
탁송 대리	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 운송이 대상. 그 운영 범위가 다른 대리운전 형태에 비해 광범위함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관계는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콜센터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벌금을 부담한다. 이처럼 대리운전업체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수도권 등 광역시

수도권 등 광역시의 대리운전 프로세스는 이용자(고객)는 대리업체로 전화를 걸면 위치정보를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업체에 이용자 정보입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는 프로그램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자는 프로그램업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콜 정보를 이용하면서 정보제공을 받고 있다.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은 고용계약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이용료, 콜수수료, 보험가입수수료 지급을 수행하고 이용자(고객)에게 출동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여 요금을 받는 프로세스로 구축되어 있다.

②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 등 광역시의 대리운전 프로세스와 차이는 앱을

이용한 프로그램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직접 대리운전업체에 콜을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에게 고용/계약/콜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업체에게 콜수수료, 보험가입수수료, 합차비 등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다. 대리운전자는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콜을 하면 위치정보를 받아 대리운전에게 보내주고 대리운전자는 바로 이용자(고객)에게 출동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요금을 받는다. 그리고 대리운전자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리운전자 복귀차량으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대리운전기사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경제적 전속성 단서를 포함하여,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는 고용 노동부고시 제2017-21호의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같이 적용된다. 소속여부와 등록여부에 따른 업무우선순위를 주된 사업자에 먼저 배정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전속성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II.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2) 직무분석

이용자가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프로그램 앱 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리 운전업체가 주문정보(콜 정보)를 입력하여, 동일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해당 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 일부에서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앱(App)을 이용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 콜(Call) 정보를 제공(구 방식인 TRS무선기 등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주문을 받은 업체와 실제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같은 프로그램 앱(App)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만으로는 이용자의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연합 간 회의를 거쳐 콜 정보의 제공방법, 수수료, 벌금 등에 대한 대리운전시장의 규칙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합시스템 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소속업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피해보상, 과태료·벌칙금 등이 처리되어 진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를 이용하여 가까운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콜(Call)을 접수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이용해 이용자(고객)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며,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이용자(고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받은 후 서비스 종료된다. 대리운전기사는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의 일부(20~30%)를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납부하며, 대리운전종료 후 대중교통(도보 포함)이나 택시, (불법)대리운전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최근에 이용자(고객)의 위치까지의 이동이나 복귀 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대리운전기사 외 1명이 복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함께 이동 후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콜(Call) 수수료와 보험가입 수수료 등을 업체에 선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며,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 앱(App)을 다운 받아 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프로그램 앱 사에 지불하고 있는 형태이다.

6) 방문판매원(령 제67조제10호)

(1) 직무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¹³⁾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코드로는 판매종사자에 포함되는 5321에 속하는 직종이다. 방문판매는 생활용품 위주로 가정이나 직장 방문을 통한 영업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이나 판매 등으로 많은 부분 시장규모가 감소하였다. 과거에 모르는 집을 방문하는 경우는 보안절차 등으로 인해 거의 행해지지 않으며, 대부분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으로 방문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문판매 상품으로는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자동차, 건강식품까지 다양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방문판매업체의 2020년도 매출액 상위기준을 살펴보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리만코리아, 코웨이, 웅진씽크빅 순서로 화장품이 방문판매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법령에서도 언급했듯이 직접 방문판매와 후원 방문판매 형태의 방문판매원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체의 대리점과 영업계약을 맺고, 수수료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지닌다.

(2) 직무분석

방문판매원은 판매할 제품의 견본이나 카탈로그를 운반하면서, 가정 또는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판매를 촉진한다. 담당구역의 고객을 방문하여 견본이

13)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기사와 달리 구체적인 고시나 지침은 없다.

나 카탈로그를 보여주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물품 인도조건 등을 협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물품 인도를 제품판매처가 직접 운송하거나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에 따라 고객과의 우호관계 성립을 위해 물품을 직접 인도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직무 순서는 <표 III-14>와 같이 같이 사무실에 필요한 제품 견본이나 카탈로그를 상차(가방이든 차량이든)하고 중간지까지 이동하여 견본 및 카탈로그를 하차 및 보관(보관함이 없는 경우 업무 생략)하여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방문출입과 물품소개, 퇴실의 절차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쿼서비스 사례에 대해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기 보다는 주변 도보 이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표 III-14> 방문판매원 작업분석

작업순서	작업내용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대리점으로부터 견본 및 카탈로그 상차 • 가방 또는 자전거, 차량에 상차 (물품거래인도의 경우는 상차량 많음)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차량 이동 • 지역 위주 방문판매가 대부분으로 도보나 자전거 이동 잦음
중간하차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이나 물품이 많을 경우, 중간 보관처에 일부 보관 • 보관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관할 곳이 없고 비용지불이 어려운 경우는 생략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목적지로의 이동
방문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처 방문
물품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소개 (물품거래인도의 경우, 인도 후 다른 상품 소개)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처 퇴실

7)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령 제67조제11호)

(1) 직무정의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이하 방문점검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라 단순노무종사자 중 기타서비스 단순 노무직으로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세세분류 코드 99992)에 포함되며, 대여 제품업체에만 해당한다. 즉, 도시가스 등 방문점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 제품마다 다르지만, 가정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객이 대여계약을 맺고 있는 제품의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대여제품으로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침대 매트리스 등이 있으며, SK매직,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이 대표적인 방문점검업체에 해당한다. 방문점검원도 방문판매원과 유사하게 제품판매업체의 대리점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을 맺고 수수료는 본사가 지급하는 구조를 지니며, 가정이나 기업, 기관 등 외부 시설을 순회하며 필요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고장에 대한 수리나 보수는 방문점검원이 아닌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의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로 볼 수 있다.

(2) 직무분석

방문점검원은 <표 III-15>처럼 대여 제품의 청소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하고, 고객 방문일정에 따라 가정 및 사무실을 방문한다. 대부분은 지역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많으며, 정수기 또는 공기청정기 등은 이미 설치된 제품으로 간단한 청소 및 부품교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표 III-15〉 방문점검원 작업분석

작업순서	작업내용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 제품 대리점으로부터 필요한 물품(필터 등)을 상차하고, 관련 도구를 챙긴다.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차량 이동 • 지역 위주 방문판매가 대부분으로 도보나 자전거 이동 잦으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음
방문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처 방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된 대여제품의 청소, 부품교환 등 간단한 작업 수행 (설치나 이전 등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이 방문하여 수행)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처 퇴실

8)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령 제67조제12호)

(1) 직무정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의 설치 및 수리원에 해당 하며, 사무용과 차별되는 가전제품 위주의 설치 및 수리원(코드 7612)에 포함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하고, 시운전 및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설치 업무와 사용 중 고장 또는 오작동되는 경우에 수리 및 교체를 수행하는 수리업무 직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가구나 다른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수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일반적으로 제품판매업체가 아닌 제품판매의 물류 및 설치 담당 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을 안전조치 대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1인으로 단독 설치¹⁴⁾ 및 수리¹⁵⁾가 가능한 소형가전만¹⁶⁾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소형가전과 대형가전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고, 심지어 설치를 요하는 소형가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사례를 보면, 인덕션이나 식기세척기 등의 내장이 필요한 경우 설치기사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보인다. 다만, 에어컨이라도 실외기가 있고 에어컨만 교체하는 경우 1인이 단독설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때, 이를 상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소형가전의 경우, 소형 냉장고와 같이 비교적 중량물을 배송하여 설치 및 시운전하는 경우, 특별한 도구의 사용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 봐야할 지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¹⁷⁾가 필요하다.

(2) 직무분석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직무분석 역시 설치 가전제품의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며, 표준화하기 어렵다. 작업순서로는 설치 가전제품의 상차, 이동 및 운송, 하차 및 운반, 설치(수리) 및 시운전, 정리 및 퇴실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의 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나 이동 및 운송 수칙, 운반 수칙,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기계·전기·재료·구조물의 이해 등 직무에 대한 대표적인 작업은 <표 III-16>과 같이 정리된다.

14) 대형가전의 경우 2인 기사(주기사-보조기사)가 불가피하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보다, 고용주-근로자의 관계로 정의하여 보조기사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15) 설치에 비해 수리는 1인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설치기사와 수리기사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을 경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

16) 대형가전을 1인으로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말한, 2인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편의상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었을 뿐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윤구 외(2021)에서는 비교적 큰 대형가전임에도 1인으로 설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작업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17) 물론,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이 인덕션,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모든 물품을 다룰 수도 있다.

〈표 III-16〉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작업분석

작업순서	작업내용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할 가전제품을 화물차에 상차 (소형가전이라도 중량물일 가능성이 높고, 한 개의 가전만 상차하는 것은 아님) 가전제품 벨트 고정 및 체결
이동 및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 중 주의(대부분 차량 이동) 가전제품 벨트 고정 및 체결 확인
하차 및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설치할 가전제품 하차 적합한 주차공간 확보 대차이용 또는 직접운반 가정 또는 사무실 운반(시설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입구 확보 가정 또는 사무실 손상방지(바닥, 벽지, 문 손상 등)
설치(수리) 및 시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위치 확인 및 진단 가정 내 적합한 작업환경 확보 전선, 정격전력, 벽, 배관, 난간 등 기계, 전기, 재료, 구조물 등에 대한 이해와 설치 방법 결정 시설 관련 문제확인 및 해결(설치장소 시설관리팀과의 협조) 적합한 작업도구 활용 가전제품 운전 및 작동 확인
정리 및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쓰레기 또는 폐기물 정리정돈 문제 시 상담처 확보

9) 화물차주(령 제67조제13호)

(1) 직무정의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량을 위탁받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위·수탁차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의 화물차주는 사업주적인 성격을 우선시하여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 중 지입차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1.19.〉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계약하는 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물량 확보를 위해 대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로 볼 수 있다. 화물차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 2021년도 연간 화물운송시장에서 지입차주는 68.2%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입차주는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량의 특성은 적재함(톤)수별로 구분이 되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의 유형은 일반형과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일반형, 덤프형, 밴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형 속에는 각 적재톤수별로 1톤 이하부터 20톤까지 등록되어있다. 특수형태는 덤프이면서 항만에서 유류, 곡물, 석탄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I-17〉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총 503,967대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물 카고형이 242,488대로 50.1%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7〉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단위 : 대)

구분	2019.12	2020.12	2021.12
화물자동차 합계	416,412	425,252	438,331
◦화물 일반형	249,565	250,670	254,132
- 화물 픽업형	1,905	1,789	1,644
- 화물 카고형	247,660	248,881	252,488
•1톤 이하	71,164	72,682	77,105
•5톤 미만	89,920	88,661	86,575
•5톤 이상	86,576	87,538	88,808
◦화물 덤프형	2,083	2,056	2,024
- 1톤 이하	218	213	209
- 5톤 미만	1,139	1,037	963
- 5톤 이상	726	806	852
◦화물 밴형	9,973	8,887	8,358
- 1톤 이하	9,496	8,427	7,916
- 5톤 미만	343	345	339
- 5톤 이상	134	115	103
◦화물특수용도형	154,791	163,639	173,817
- 유조차	3,081	3,154	3,133
- 탱크로리	2,249	2,206	2,224
- 피견인차	55,788	57,497	58,819
•적재함형	1,573	1,517	1,472
•저상형	3,202	3,278	3,248
•평판형	9,971	9,671	9,403
•콘테이너샤시	27,169	29,305	31,160
•기타	13,873	13,726	13,536
- 기타	73,049	78,417	85,055
특수자동차 합계	62,554	63,918	65,636
◦구난차	7,169	7,281	7,236
◦견인차	34,860	35,285	35,321
- 5톤 이하	388	342	284
- 10톤 미만	296	289	272
- 10톤 이상	34,176	34,654	34,765
◦특수작업형	20,525	21,352	23,079
영업용 화물자동차 합계	478,966	489,170	503,967

※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https://stat.molit.go.kr>)

다음으로 〈표 III-18〉은 화물운송업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업의 기업체 수(-0.0%)는 감소, 종사자 수(9.1%), 매출액(8.1%)는 증가하였다. 화물운송업 기업체 수는 363,349개, 종사자 수는 636,869명, 매출액은 85,7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화물차주가 포함된 육상화물운송업 중 도로화물은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등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따라 규제되고 있다.

〈표 III-18〉 화물운송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명, 십억원, %)

업종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화물 운송업	363,484	363,349	-0.0	583,777	636,869	9.1	79,291	85,711	8.1
육상화물 등1)	362,606	362,546	-0.0	553,310	611,677	10.5	44,532	51,657	16.0
해상·항공 화물 등2)	878	803	-8.5	30,467	25,192	-17.3	34,759	34,054	-2.0

1) 육상화물 등 : 철도화물, 도로화물, 소화물전문, 파이프라인운송

2) 해상·항공화물 등 : 외항화물, 내항화물 및 기타해상화물, 항공화물

※ 출처 : 통계청(<https://kosis.kr>)

(2) 직무분석

화물운송업 표준 작업공정 흐름은 〈표 III-19〉와 같다. 준비작업에서는 작업 전 차량 점검과 작업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 운반작업에서 차량 상차작업이란 화물을 차량 위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하며, 하차작업은 운반구(차량) 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작업장의 적재 장소에 내려놓는 작업을 의미한다. 운전작업은 화물의 종류, 수량 및 행선지 등이 기록된 운송기록장을 확인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적재된 화물의 적재 높이, 무게 등을 고려하여 행선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이다. 정리작업에서는 작업 시

발생된 부산물 및 작업장소 등의 청소 및 정돈을 한다.

〈표 III-19〉 화물운송업 작업분석

공정명	작업명	작업 내용	사용 도구/설비
준비작업	차량점검	작업 전 차량 점검 등	랜턴 등 수공구, 화물차량
	작업준비	차량 예열 및 시동, 차량에 있는 물품 정리, 화물차 측면 및 후면 등 문 개방	랜턴 등 수공구, 화물차량
운반작업	상차	납품할 제품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 제품 화물차량에 적재작업, 상차 완료 후 적재함 잠금, 적재된 물품을 로프 등을 이용하여 체결·고정 후 덮개작업	지게차, 호이스트, 크레인, 리프트, 덮개, 결속로프
	운전	적재된 제품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처로 운반	화물차량
	하차	고정로프 해체 및 덮개 제거, 측면 및 후면의 문 개방, 화물차량에서 제품 하차, 하차한 제품을 납품처로 운반하는 작업	지게차, 호이스트, 크레인, 리프트, 덮개, 결속로프
정리작업	적재함 청소 및 정리	작업 시 발생된 부산물 및 작업장소 정리정돈	빗자루 등 청소용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사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니면서, 기업 또는 소비자로부터 노무 요청을 받는 근로자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직종별 직무정의와 분석은 작업환경과 업무구조에 대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각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사례를 살펴봐야만 한다. 따라서, 각 직종의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하기 위해, <표 III-20>과 같이 직종별 노무제공대상, 작업장소, 작업내용 및 절차를 포함한 직무사례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표 III-20> 직종별 직무사례 시나리오

직종	직무사례 시나리오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건설회사 A가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한 발주를 하는 과정이다. B 레미콘업체는 공고를 보고 입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설회사 A의 콘크리트를 납품 수주를 받게 되었다. B 레미콘업체는 건설회사 A와 계약한 100대 분량의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30대 이외에 70대를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입차주들과 계약하였다. 지입차주들은 B 레미콘업체와 콘크리트 운송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지입차주들은 계약한 양의 콘크리트를 A업체에서 제공받아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싣고 건설업체 A의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뒤 필요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골프장 캐디	고객 A씨는 골프장 및 골프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한다. 예약한 날짜에 맞추어 골프장에 도착한 고객 A씨는 프론트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락카 번호를 받은 후 환복하고 예약시간 전 스타트 지점에서 담당 캐디와 만나게 된다. 노무를 제공하는 골프장 캐디는 예약 시간 1시간 전 출근하여 골프 카트를 점검하고 경기보조를 위한 준비물(룰, 타올 등)을 체크한다. 그리고 담당해야 할 고객 명단 확인 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된 골프채를 카트로 상차한다. 그 다음 골프채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스타트 지점에서 대기하다 고객과 만난다. 고객 확인 후 카트에 고객을 태우고 티잉 그라운드로 이동하여 본인 소개 및 준비운동을 한다. 티샷 전 지형 및 코스를 안내하고 거리와 공략법을 조언한다. 경기를

직종	직무사례 시나리오
	<p>진행하는 동안 고객별로 골프채 종류에 따라 거리를 확인하고 거리에 맞는 골프채를 전달한다. 또 고객별 볼의 낙하지점을 확인하여 남은 거리 및 홀 이탈여부(OB, 해저드)를 알려준다. 그런 위에서는 볼의 낙하로 인한 피치마크를 정리하여 주고 그린 위 볼 마크 후 볼을 닦아주며 퍼팅라인을 확인하여 고객에게 알려준다. 매홀 스코어를 정리하여 스마트 패드 및 기록지에 기록한다. 또한, 경기 중 해저드 주변 또는 숲속, 카트 이동 시 급커브 구간, 플레이어의 볼 진행 방향 등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경기를 마친 후 골프채를 정리하며 분실 및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고 최종 스코어 정리를 하여 기록을 마무리 한다. 카트에 남아있는 고객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고객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리된 골프백을 고객차량으로 상차한 후 고객에게 캐디피를 받고 카트고로 돌아온다. 카트고로 돌아와서 카트를 주차하고 청소 및 충전을 한다. 담당 고객과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바로 퇴근을 해도 되지만 특별한 경우 코스 청소 및 배토작업을 할 때도 있다.</p>
택배기사	<p>택배기사 H군은 집에서 오전 5시에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하고 6시 정도에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인 군포 물류센터 6시 40분 정도에 도착한다. 7시부터는 하차분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집화업무를 수행하고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면서 업체에 도착한 뒤 상품을 차에 실어야 한다. 보통 업체에서는 상품 발송을 오후 5시~8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집화를 위해 시간을 맞춰 가야 한다. 업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움직여야 한다.</p> <p>택배기사 근무시간 하루 일과는 하차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서브터미널에서 아침 7시 정도에 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한 고객의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다. 현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비실이나 고객님 호실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오늘은 짐이 많아서 현관문을 계속 몸으로 막으면서 안으로 물건을 옮기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문 열기 버튼을 눌러서 계속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야기 때문에 계속 몸에 부딪히게 된다. 해당 고객님 호실로 가서 “택배 왔습니다.” 하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렇게 고객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엘리베이터문,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수십 번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10시~11시 사이에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된다. 시간적으로도 11시와 12시 사이에 배송 시작, 5시 ~8시 사이에 픽업과 배송 픽업 전까지 5시간 안에 배송이 끝나면 최적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다. 배송이 끝나고 픽업도 끝나면 9시 전까지 배송완료 및 미배송 사유를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고, 오류가 나게 되어 업무가 복잡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미수령 사유 등을 직접 문자나 전화로 받거나 택배업체 또는 소매업체로부터의 전달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때, 고객과의 오해 등 고객응대와 관련한 문제사항을 업체에 전달하기도 한다.</p>

직종	직무사례 시나리오
퀵서비스 기사	<p>모 컨설팅 회사에 일하는 K군은 상품 샘플을 거래처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른 퀵서비스업체에 연락해서 퀵서비스 기사님을 요청하였다. 퀵서비스 L군은 스마트폰 퀵서비스 000앱에 근처 운송 정보가 올렸다. 콜을 받은 후 고객님 위치로 10분 뒤에 도착하였다. 퀵서비스 기사 L군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다. “네 이 박스에 담아있는 물건을 양재동 M건물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깨지는 물건인가요?”를 물어 확인하였다. “네 빨리 배달을 해주셔야 하지만 안에 있는 물건이 깨지는 물건이라서 조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에 포장은 알맞게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라 말한 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짐칸에 잘 싣고 주소지로 출발을 하였다. 중간중간 도로 상태에 따라서 안전주의 운행을 해야만 했다. 물건의 안전성을 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건을 내려 들고 목적지를 찾았는데 건물을 5층 건물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던 건물이었다. 그래서 직접 들고 5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사무실 앞까지 도착하였다. 손님에게 물건을 전달을 하고, 서명을 받은 후 송장을 챙겨서 퀵서비스 000앱에 운송완료를 입력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퀵서비스 기사 L군은 하루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보통 10~15회 정도를 해야만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게 된다.</p>
대리운전기사	<p>이용자(고객) K씨는 오랜만에 회식을 하여 직장 건대입구역에서 평소에 즐겨 부르는 대리업체로 전화를 걸었다. 위치정보와 목적지를 말하고 가격을 물었다. 고객은 20,000원을 원하였다.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해주기를 원했다. 이 정보를 받고 대리운전자는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콜을 받았다. 현재 대리운전자는 OO입구역 근처에서 콜을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대리운전자는 밤 11시쯤이어서 OO동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막차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근처에서 콜을 받고자 한다.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근처에 있다고 전화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고객이랑 통화가 되었다. K씨는 손님과 함께 차로 이동하고 차 키를 받아서 뒷자리에 태웠다.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하였다. “손님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가는 길 방법을 OO로로 갈까요? 아니면 OO간선도로를 타고 갈까요?”라 물었지만 선호도가 없어 평소 이용하던 OO간선도로를 타고 달렸다. 차가 막히질 않아 2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손님에게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요금은 20,000원입니다.”라 말하였다. 요금을 받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 인사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5분 정도 걸어 나오니 큰 도로가 나왔다. 역까지는 3분 정도 더 걸어야 하고 바로 신호등 건너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일단 버스정류장에서 다음 콜을 기다린다.</p>
방문판매원	<p>방문판매원 A씨는 대리점에 들러 카탈로그와 화장품 주력 모델의 샘플 또는 신제품 샘플을 몇 개 가방에 챙긴 뒤 고객 방문준비를 한다. 고객으로는 친구나 가족, 전 직장동료, 다른 방문판매원의 소개 등으로 확보해 둔 고객 명단을 가지고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한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유롭게 들를 수도 있다. 가정</p>

직종	직무사례 시나리오
	<p>또는 직장의 건물로 들어서서 방문을 한 뒤에는 제품 소개와 함께 직접 화장품 시현을 하거나 다른 화장품을 소개한다. 저번에 구매를 해준 화장품은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직접 들고 온 뒤, 또 다른 상품에 대해 추천하기도 한다. 가정 외에 단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미용실이나 회사 접견실 등)에서 만나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한다. 방문판매원 A씨는 구매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대리점에 들러 반납한 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p>
방문점검원	<p>방문점검원 A씨는 얼마 전에 받은 고객명단에 맞춰 본인의 일정을 잡아 점검을 돌아다닌다. 먼저 지부(영업점, 대리점)에 들러 필요한 부품(정수기필터, 공기청정기필터, 비데부품 등)을 가방에 넣고, 청소도구를 챙긴다. 이번 주 영업을 위해 필요한 프로모션이나 계절별 주의사항(여름에 얼음정수기 청결관리 등)이 있으면 숙지하고 오늘 일정을 나선다. 휴대폰 앱을 통해 가까운 순서로 부품이 든 가방과 청소도구를 자차 또는 오토바이로 이동한다. 며칠 전 미리 방문안내를 드린 가정에 방문하여 부재 여부를 판단하고 부재 시 전화로 재예약을 한다. 가정에 도착하여 휴대폰 앱으로 고객계정과 제품을 확인하고 점검을 수행한다. 정수기에 연결된 세면대 밸브를 잠그고 물을 빼내고 청소작업 및 필터교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벽 위에 달린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나 의자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후 고객과의 확인을 통해 업무가 끝난다. 이후 다음 방문장소로 이동하게 된다.</p>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p>가전제품 설치원 A씨는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을 설치하기 위해 본인 화물차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였다. 지점 관리자를 통해 휴대폰 앱으로 운송 물량을 확인한 뒤, 직접 들어 운반하거나 대차를 사용하여 화물차에 상차한 뒤 고객처로 출발한다. 고객과의 방문약속 후 화물차를 주차한 뒤, 물건을 다시 직접 운반하거나 대차를 이용하여 고객처까지 방문하게 된다. 고객이 설치할 장소를 확인한 뒤, 싱크대의 배관 위치나 전선의 위치, 소비전력을 확인한 뒤 식기세척기나 인덕션을 설치하게 된다. 인덕션이나 식기세척기 설치 시 필요한 경우 전용선공사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적정설치를 한 뒤 시운전으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한 뒤 박스나 비닐 등을 폐기처리하고 퇴실한다.</p>
화물차주	<p>화주 A는 H-Beam을 현장에 납품하기 위해 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하고 출하 계획을 통보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차주를 수배하여 배차하며, 이때 화물 위·수탁증(배차증)을 발행하고 차주에게 운임을 통상 현금으로 선불한다. 화물차주는 H-beam 제조업체로 이동하여 상차하여, 차량점검과 화물결착 등을 확인한 후 H-beam을 주문한 착지로 수송한다. 장거리 이동과정에 있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15분씩 휴식을 취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이송한다. 최종목적지 도착 후 정해진 인도장소로</p>

직종	직무사례 시나리오
	<p>이동한 뒤, 화물차에서 내려 하역 과정을 기다린다. 화물의 수송 후에 운송사업자(차주)는 착지에서 수송화물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인수증을 교부받아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제출한다(착불임은 착지화주, 후불임은 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수령한다).</p>

IV.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IV.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1. 실태조사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9개의 직종에 대해 관련 협회,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제안서에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묶어 180개 업소를 조사하는 형태였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업소로 동일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이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이해관계자 형태를 더 세분화하였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역시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독립적인 표본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전속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직종에 대해서는 면담 수를 축소하고 다른 직종의 종사자 면담 수를 증가하였다. 관계자들의 대표성을 띠는 협회와 조합 등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는 작업 역시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IV-1>과 같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관계자 83명, 노무를 제공하는 자 관계자 128명으로, 총 211명의 관계자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법적·관리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대표 협회 및 조합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영하지 못했거나 다루기 어려운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면담하였다. 대부분 대표 협회 및 조합의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현장 종사자들도 유사하게 답변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 사항 인지도, ② 작업 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문제점, ③ 현장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이행 주체 및 여부의 세 가지 측면을 집중하였다. 현장 종사자에게서 문제가 되었던 실제 특이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하여 정리하였다.

〈표 IV-1〉 실태조사 대상 및 수

직종	노무를 제공받는 자 관계자	면담 수(명)	노무를 제공하는 자 관계자	면담 수(명)
건설기계직접 운전자	• 건설업체	8	• 노동조합	2
	• 협력업체	5	• 굴착기 기사	6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체 사업주(법인)	3	• 지게차 기사	10
			•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	5
	소계	16	소계	23
골프장 캐디	• 골프장 협회	2	• 골프장 캐디	25
	• 골프장 관리자	6		
	소계	8	소계	25
	• 물류협회	1	• 노동자지원센터	2
택배기사	• 택배업체 물류센터 관계자	12		
	• 영업점주	6	• 택배기사	18
	소계	19	소계	20
	• 사업자협회	3	• 노동자지원센터	2
퀵서비스 기사	• 퀵서비스업체	2	• 퀵서비스 기사	3
	소계	5	소계	5
	• 대리운전연합회	1	• 노동자지원센터	2
대리운전 기사	• 대리운전업체	2	• 대리운전 기사	8
	소계	3	소계	10
	• 판매협회	2	• 노동조합	3
방문판매원	• 제품판매업체	1	• 방문판매원	7
	• 영업점주	5		
	소계	8	소계	7

직종	노무를 제공받는 자 관계자	면담 수(명)	노무를 제공하는 자 관계자	면담 수(명)
방문점검원	• 제품판매업주	5	• 노동조합	3
	• 영업점주	3	• 방문점검원	15
	소계	8	소계	1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제품판매업주	1	• 노동조합	3
	• 영업점주	3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6
	소계	4	소계	9
화물차주	• 운송사업자	2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	4
	• 항만회사	2		
	• 철강재제조회사	4	• 철강재 화물차주	2
	• 철장재사용업체	8		
	• 위험물질제조회사	2	• 위험물질 화물차주	2
	• 위험물질사용업체	2		
	소계	20	소계	8
총계		83		128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자 의견수렴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건설기계직접운전자 특수형태근로종사직과 관련하여 건설현장과 중개/알선 업체인 중기업체, 그리고 건설기계직접운전자와 안전조치 이행주체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표 IV-2>와 같이 정리하였다. 건설현장은 1군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또는 안전관리자와 인터뷰하였고,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설기계대여업체(지입회사)도 같이 조사하였다. 우선,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현장 정규 근로자, 중기업체 정규 근로자도 현장에 있으며, 작업공정에 따른 인원부족이나 결원 시 고용하는 형태가 있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설기계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동시에 대부분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였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중개업체와 연결되어 계약을 맺고 있다. 건설업체(협력업체 포함)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으나, 물량이나 연속성 차원에서 대부분 대여업체에 지입 또는 배차업체에 중개/알선을 통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¹⁸⁾¹⁹⁾.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는 중개업체(배차업체)가 건설업체에 인건비를 받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입기사는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중개만 한 뒤 급여는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안전조치는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위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작업 전 설비점검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입출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신호수를 배치하고 적정위치까지 안내, 작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장, 특히 원청에서는 건

18) 정지현 외(2020)에 따르면, 지입기사 형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급기사, 개인형 용차기사가 주도적인 고용 체결형태이나, 지입기사 역시 대여업체 외에 배차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알선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9) 배차업체는 알선료로 20~30만원 정도를,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수수료는 5만원 정도이다.

설기계 작업자들이 정규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를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에 있는 작업자는 모두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안전조치를 수준 높게 수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는, 면허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전보건 교육 수료여부 역시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 원청 또는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있다²⁰⁾. 문제는 법적으로도, 최초 노무제공 시에 대한 “최초”가 사업장과 신규계약을 맺을 때마다를 의미하는지, 면허취득을 한 최초를 의미하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한 번만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만약, 매번 노무를 제공하는 최초 사업장으로 규정 해석이 될 경우, 공기에 따라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¹⁾. 안전보건교육 기관 역시 이 최초노무제공을 위해 건설 기계별로 1~2시간의 교육을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 언급하고 있다. 현재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1년 단위의 건설기계별 인터넷 교육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최초”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일회성으로 끝내거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처럼 1~2년마다의 정기보수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지자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알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보였다.

20) 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안전교육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21) 건설기계 유형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용직 형태의 특별 업무 처리를 위한 건설기계직접운전자도 많으며, 하루에 1~2시간 정도 작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초 노무제공 시마다 2시간 교육을 듣는다거나 혹은 간헐적 1시간을 듣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일용직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도 해석이 요구된다.

〈표 IV-2〉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건설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직접운전자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체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사업주(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 굴착기 기사 • 지게차 기사 •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없음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설비 위주 체크리스트 사용 •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외부 입출입 차량은 신호수 등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없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 체크리스트 활용 중에 있으나 대부분 해당됨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계약 및 업무 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교육 실시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계약 및 업무 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교육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는 건설기계운전작업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고, 확인 작업 자체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 현장 작업자 모두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을 대부분 이수하고, 협력업체 계약 시 원청에서 이수확인 여부를 감독하고 있음 • 원청 현장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직접 명령 권한이 없어, 대부분 설비 점검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형태임 • 건설기계대여업체에서 적격자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중복점검을 통해 법령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은 자체가 공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은 특별히 개별공지가 없음 		

2) 골프장캐디

골프장 캐디는 <표 IV-3>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였다. 골프장 사업주에 캐디업무를 요청받고 계약하여 골프장 사용자인 골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때, 수익은 골프장 사용자로부터 받으나, 전반적인 이용설비나 카트 등은 골프장에서 관리하게 된다. 캐디는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교육을 이수 받아 정식캐디로 인정받고 골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골프장 사업주와 골프장 사용자가 모두 될 수 있으나, 골프장 사용자는 캐디에게 골프 이용에 대해 오히려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이므로 캐디에 대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골프장 사업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²²⁾.

골프장 사업주는 정기적 시설 및 조경 관리와 카트 관리, 고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캐디 역시 업무를 보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고객안전확보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주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카트 도로 상태나 야생동물(뱀, 고라니 등) 출현, 골프공의 날라옴, 해저드 진입금지 등 고객안전을 위해 시설관리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카트의 사용법이나 안전조치 등도 카트에 붙여서 체크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프장 시설관리팀과 캐디의 소통작업 자체가 캐디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골프장 캐디의 안전조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지배적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주라 볼 수 있으며, 캐디와 소비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공유하는 관계로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골프장 사용자의 폭언이라든가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골프장 내에서 지침 등을 규정하여 문제 발생 시 골프장 사업자나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중재 또는 경찰신고 등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다.

캐디의 안전보건교육은 골프장협회나 캐디협회가 골프장에 공문을 보내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것이

22) 「고용보험법」상에서는 경제적 “대가” 지급이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경제적 대가가 비용을 직접 거래하는 자들로 한정하면, 이는 골프장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되어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해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 중인 무료 인터넷 교육을 골프장 사업자 측에서 집체교육하거나 골프장 캐디가 직접 이수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표 IV-3〉 골프장캐디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골프장 소유주	골프장 캐디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협회 • 골프장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디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사업자 및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사업자 및 관리자 • 캐디(고객 안전)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시설 관리 • 카트 사용 체크리스트 제공 • 카트 유지보수(캐디 전용 카트 제도, 피드백 수용) • 캐디 속도제한 및 조속계 포함 • 캐디 및 골퍼를 통한 의견수렴 • 고객 안전에 준하여 캐디 안전 확보 • 고객갑질,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업무 지침 존재하며, 필요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후 업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안전교육을 캐디교육 때 이수받고, 본인 안전과 고객 안전을 캐디수행 시 병행 • 카트에 문제 발생 시 시설과 또는 운영과에 알림 • 현장 위험점을 무전기 등으로 서로 주고 받고, 골프장 관리자에게도 보고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 체크리스트 활용 중에 있으나 대부분 해당됨 • 제38조 규정 취지는 알겠으나 모호함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협회 • 골프장 관리자(본부장, 경기운영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없이 수행 • 골프장협회 공문 또는 골프장 관리자 지시로 교육이수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에서 회원사(골프장)로 공문 • 집체로 인터넷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교육(개인)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노무제공 시와 같이 법적 용어는 인지하지 못하나, 외부 안전교육과 관련한 공문이 자주 수신되어 이수의무는 서로 인지하고 있음 •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법정으로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고 공유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음 • 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인터넷 교육으로 무료로 진행 중. 간혹 사업주 주도로 집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최근에는 캐디학보를 위해 숙박, 유니폼 지급 등 골프장 측에서 복지성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 • 고객 응대에 대한 지침으로, 운영 중 음성녹음 등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도 있음 • 캐디 업무 외에 작업(배토작업)을 지시하거나 고객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어 작업 상 업무위험이 증가하거나 적극적 고객응대 어려움 	

3) 택배기사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허브물류센터를 관리하는 택배업체 또는 대리점주/집배점주 등 서브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있으며, 소비자 역시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볼 수 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물류센터, 서브물류센터, 도로, 소비자 장소로서, 이 장소에서의 안전한 작업과 이동을 관리해야 한다.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주요 택배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노동자 의견을 위해서는 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택배사의 택배기사를 <표 IV-4>와 같이 인터뷰하였다.

우선, 택배업체는 물류센터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배적 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고용계약형태를 맺은 작업자라도 모두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컨베이어의 설비안전과 작업 전 스트레칭이나 대차 제공 등 중량물취급과 균골격계 질환 위주의 관리감독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2021년 정부와 택배노사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분류(sort; 소트) 작업 역시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업체 책임이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분류작업 시장소의 협소함, 업무의 시급성으로 일부 택배기사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허브물류센터의 안전조치에 비교하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영업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거쳐 가는 지역일 뿐 머무는 지역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안전조치 인식도 적었다. 영업점은 개인사업자임에도 택배업체가 원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 노동구조에 있어서도 책임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영업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²³⁾ 소화물을 집화, 운송하는 형태로서,

23) 고용계약 구조가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실적별로 임금을 받는 형태(택배업체가 수수료를 계산하여 영업점에 납입), 고정급여로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태도 있음

직고용자는 영업점이라는 점에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의무조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재해가 허브물류센터나 소비자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범위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계약업체와 현장업체의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사업자 유형마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택배기사도 사업장 외에서 경사로 주차, 도로점거, 과속운전 등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택배업체에서는 앱을 활용하여 관리조치를 이행하거나 물량조정 등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나 노사관계에서 보다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역시 택배업체의 허브물류센터나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작업 전 간단한 안전수칙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집체교육과 인터넷 교육 형태로도 수행하고 있다. 최초 시 교육에 대해서는 택배회사마다 물류센터 운영방식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 시 교육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르면 영업점이 택배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점이 시정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 감독, 시정조치 요구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택배업체)가 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시행은 영업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점의 규모나 행태 상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인적, 물적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 택배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택배업체	영업점	택배기사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협회 • 택배업체 현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점/영업점/대리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지원센터 • 택배회사 직원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지원 필요로 함 • 영업점주가 해야한다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없음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안전, 중량물취급, 근골격계부담업무 위주로 관리감독 및 체크리스트 사용 • 레이아웃 조정 등 격리구조에 신경 • 고객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지원 필요로 함 • 설비안전, 중량물취급,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등 안전조치 수행 • 고객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없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시 활용하고 있음 • 택배업체마다 주요 배송품목이 달라, 소화물이 아닌 대형 가구나 의약품 배달 중심의 택배업을 위한 조치 필요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지원 필요로 함 • 영업점주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라고 생각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센터에서 작업 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 지원 필요로 함 • 인터넷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교육 • 인터넷 교육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체마다 영업점의 역할과 사업장 형태가 달라 일괄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영업점주는 개인 사업자로서 택배업체와 원하청 관계가 아니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접 고용계약 함에도, 안전관리의무는 택배업체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 • 택배업체마다 상황은 다르며, 직접 고용계약한 영업점에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택배기사 안전조치 및 교육을 모두 수행하기도 함 • 도로 임시주차, 경사로 주차 등 위험사항에 대해 교육하나 실제 현장에서 준수하는지 확인할 방법 없어 현실성 부족 • 월급여 확보 및 불안전한 장소로의 배송 등 시간 부족으로 인해 안전조치 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음 • 택배기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안전조치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우수 택배기사에게 물량 배정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4) 퀵서비스기사

우선, 직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로 고객에게 고객으로 물건을 장거리 또는 전담배송하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없고, 고용계약 역시 프로그램 계약을 맺는 형태로서 주된 사업장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며, 전속성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직에 비해 적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전속성과 관계없이 실적별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방법도 비교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퀵서비스 기사도 퀵서비스 업체에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업체에 등록하고 콜을 받는 n:n 요청 구조가 많아, 주된 사업장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의 퀵서비스 기사인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퀵서비스업체와 프로그램 사가 결합된 경우는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나,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퀵서비스 업체의 오더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사업자협회는 안전보건교육원을 자체 설립하여 교육자료를 만들고 직접 강사를 섭외해 대부분 교육하나, 일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 중인 퀵서비스 배달원 교육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활성화를 위해 사업자협회의는 업체가입 조건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업체와 서로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보호구 착용 및 개선, 인증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실제 퀵서비스는 기사와 사업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혼다하여 실제 안전운전 외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 역시 퀵서비스 기사 소유로 사업주는 매뉴얼이나 알림 이외에는 작업도구나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 산업재해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을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할만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표 IV-5〉와 같이 의견수렴을 정리하였다.

〈표 IV-5〉 퀵서비스 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퀵서비스 업체	퀵서비스 기사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협회 • 퀵서비스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협의체 없음 • 노동자지원센터 • 퀵서비스 기사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대리로 사업자협회가 안전조치 수행 * 주된 사업자 보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퀵서비스 기사 개인으로 생각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외 특별한 조치 없음 • 퀵서비스 기사 보호구 안전인증 추진 •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대한 지침이 있으며, 추후 콜에 대해 고객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 취하고 있음 * 채팅, 녹음 등 자료 확인 • 도로나 기상상황에 대한 알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의 안전조치 안내 사항 확인 • 안전운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시 활용하고 있음 • 보호구 착용이 산업용이고 도로교통 용도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보호구 인증을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대리로 사용자 단체(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안전교육 수행 • 협회에 안전보건교육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단체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 오프라인 교육 • 필요시 온라인 교육(안전보건공단)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퀵서비스 기사 등록은 퀵서비스 업체에서 적격자격 기준(운전면허증, 안전보건교육 이수) 평가에 따라 수행하며, 여러 업체에 다중등록이 가능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콜을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다중등록하지 않고 한 업체와만 계약 • 자기사, 공유기사 개념이 있으나 주된 사업자를 지정할 만큼은 아님 • 프로그램 사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가입비를 받고, 퀵서비스 업체와 기사가 퀵 비용을 공유하는 구조 • 개인적으로 안전운전 등을 고민하고, 날씨 등에 유념하고 있음 • 고객 갑질, 폭언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법적으로 필요 •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퀵서비스 기사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보호구(헬멧, 가슴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인증을 원하고 있음 • 공제회 필요성을 언급함 	

5)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역시 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전속성이 없다. 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는 프로그램사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자지원센터 방문 결과 고객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등의 소지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사업주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폭언·폭행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로 고객의 현장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보다는 운전자와의 고용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²⁴⁾. 안전조치에 있어 앱을 이용해 안전운전이나 고객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하기에 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안전보건교육 역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대리운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대다수의 대리운전기사는 일반인들 대상이며, 지역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표 IV-6>과 같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물론 당연히 사업주가 관여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나 그런 기대가 많이 없는 형태로 보인다.

〈표 IV-6〉 대리운전기사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대리운전 업체	대리운전 기사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운전연합회 • 대리운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지원센터 • 대리운전기사 • 지역업체 전속 대리운전기사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속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알지 못함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속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알지 못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을 확인하고 있으며, 고객응대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있음 • 고객과의 폭력이나 폭언 등은 마찰 시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있음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대리운전업체로 알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리운전업체 기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로 알고 있음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교육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알지 못함 • 인터넷 교육 여부를 알고는 있으나 교육을 들은 경우가 많이 없음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운전 기사 등록은 대리운전업체에서 적격자격 기준(운전면허증, 대리운전보험 가입) 평가에 따라 수행하며, 여러 업체에 다중등록이 가능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콜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중등록하지 않음 * 퀵서비스와 달리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확인하지 않음 •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사업주가 아니라 고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루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존재함 • 지역업체의 경우, 전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전속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며, 대부분 프로그램 사를 같이 운영하기도 함 •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적인 안전운전과 차량 기능 숙지 여부를 주요사항으로 판단 • 외부적으로 고객의 주취폭행 및 폭언 등에 걱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사항 마련을 요구함 • 안전보건교육 의무 수행 여부를 아는 대리운전기사는 거의 없음 • 공제회 필요성을 언급함 	

6)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조사를 위해 <표 IV-7>과 같이 판매협회와 노동조합을 방문한 결과, 방문판매원은 화장품 판매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이나 건강식품 등도 해당되었다. 화장품 방문판매로만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인 화장품 대리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 형태로 방문판매원을 고용하고, 본사에 등록한 뒤 수수료 지급을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이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안전조치나 안전보건교육 위주로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방문판매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감독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직무교육을 수행할 때 이동 시 안전수칙이나 고객응대 시 문제 사항을 신고 내지 보고하는 지침은 판매협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직접 인터넷으로 고객이 찾아보고 구매하거나 전화를 통한 판매촉진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커지고 있어, 방문판매 규모는 지인 위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인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고객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과 관련한 문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얘기하였다. 다만,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 방문판매원은 방문점검원을 겸업하면서 수행하는 경우로,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전보건교육 역시 대부분 인터넷 수강을 취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의 제품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교육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고려하고 있다. 화장품 판매에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품을 개인사업하는 화장품 사업주에게 공급할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안전조치나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 설계사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도 사실상 방문판매의 형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방문판매원만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표 IV-7〉 방문판매원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제품판매업주/대리점주	방문판매원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협회 • 제품판매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등은 공식협의체 없음 • 가전제품은 노동조합 • 화장품 방문판매원 • 가전제품 방문판매원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대리점(제품판매 대리점주) • 대리점주(화장품판매 대리점주)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는 판매업주(방문판매원 아님) 안전교육 시 활용하고 있음 •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제정됨으로서 혼란 발생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제품판매업주), 대리점주(화장품판매업체)로 알고 있으나 대리점주는 교육 이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모르고 있으나, 협회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공지 중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방문판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지인 위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소일거리 형태로 업무수행 • 모바일 교육의 필요성 •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위임기관에서 대리점주 중심으로 홍보 필요 • 안전보건교육 컨텐츠 부재, 교육이수강좌 증가 요구 • 정수기 등 판매업체는 대리점이 대부분 직영이라 본사와 직영이 협조하여 안전조치 수행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과 업무가 유사함에도 안전보건교육이 방문판매원에만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검토 요청

7) 방문점검원

방문점검원은 최근 노동조합 결성으로 정수기 회사 위주의 기업연합노동조합이 형성되었으며,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본사와 대리점이 직영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전속성 관계가 명확하며²⁵⁾, 본사가 안전조치 이행 책임자라는 인식을 본사와 대리점, 방문점검원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표 IV-8〉과 같이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기획과 대응은 본사에서 수행하지만,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실제 수행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하는 대리점에서 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휴게시설의 설치와 안전모 등 보호구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구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고객응대와 관련한 부분 역시 지침 마련과 교육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다. 업체 측에서는 방문판매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고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교육대상이 아니어서 고객응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방문점검원의 의견으로는 많은 부분 개선되고 본사나 대리점이 안전조치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관리 차원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었다²⁶⁾. 특히, 고객 방문 시 반려견에 대한 위협이나 상해가 많고, 무리한 작업지시²⁷⁾와 갑질, 성희롱 등 고객과의 마찰이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나 고객회원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²⁸⁾. 방문점검원은 대부분 40-50대 여성이어서 특히 성희롱이나 위협 등을 많이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작업중지권

- 25) 실태조사한 기업들은 그렇지만, 직영대리점이 아닌 형태의 업종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사업모형일 뿐이지 직종별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26) 자비부담(교통비, 식비 등)과 관련한 일정 및 업무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많았으나 이는 노동환경 문제로 제외하였다.
- 27) 벽 위에 붙어있는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나 청소되지 않은 집에서의 업무를 요구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 28) 앞서도 언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사업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역시 해당된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해석과 지침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침을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다른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업체에서 준비하여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IV-8〉 방문점검원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제품판매업주/대리점주	방문점검원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판매업주 • 제품대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방문점검원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대리점(정수기 분야는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 대리점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지급 및 비치 • 고객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서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시 활용하고 있음 • 보호구도 영업점에 구매하여 비치하였으나 실제 활용도는 낮음 • 천장 높이의 작업 시 필요한 사다리나 다른 보호구를 방문점검원이 소유하기 어려워 현장에 따라 어려움이 존재함 •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제정됨으로서 혼란 발생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투입 전 직무교육(1~2개월) 시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안전관리팀 주체 집체교육 • 인터넷 교육 병행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기 등 판매업체는 대리점이 대부분 직영이라 본사와 직영이 협조하여 안전조치 수행 • 고객의 갑질이나 성희롱, 무리한 작업지시 등으로 인한 업체의 대응방안 마련과 고객 처벌 요구 • 고객 응대나 작업중지 등에 대해 고객과의 신뢰도나 불만 등으로 브랜드 하락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조치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이전의 방문점검원 교육이 필요하며, 정기적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소비자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책임조치를 지는 방법 요구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관련한 타법으로 규제 검토

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1인 기사 설치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형가전설치만이 해당되고 있다. 대형가전의 경우, 주기사-부기사 형태로 주기사가 부기사를 고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²⁹⁾. 현재, 정수기, 연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을 설치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을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설치물류(제품의 배송과 설치를 동시에 해주는 물류로 가구, 가전제품 등)와 관련한 기업들에서 소형가전 위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별도로 개인가게를 운영하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까지 해주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³⁰⁾. 이를 제외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표 IV-9>와 같다.

먼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기계와 전기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2~3개월 직무교육을 거치고 있다. 계약은 지점과 맺고 있으며, 설치할 제품 역시 지점에서 수령하고 운송하게 된다. 지점에서 수행하는 안전조치는 보호구 지급 정도가 전부이며, 설치 제품을 자차(보통 화물차)로 이동할 때 지급되는 수단은 거의 없는 위험한 실정이다. 이는 물품을 수령하는 지점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이다. 단독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품의 무게 기준도 현재 없으며, 50kg 이상의 제품도 상하역 장비나 취급자세 등 안전조치 없이 혼자 실어 나르는 행태가 노동조합을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는 5kg 이상에 조치를 요하는 등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위배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1인이 혼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가전은 사실

29)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 업무를 요청하는 회사가 두 명 이상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주기사 형태로 고용하여 협력하게 하는 경우는 두 명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1인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과 계약하고 업무를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대형의 경우 2개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에 대한 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0) 빌리미대리점이라고 언급한다.

상 취급하지 않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화물차나 이동식 크레인 등 자산 혹은 대여 물품에 대해 간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도 중량물 취급, 무리한 설치 요구, 전기사용, 고객응대 등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적합하지 않은 장소(싱크대 위, 벽 기둥, 좁은 방문 등)에 제품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무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가 존재하게 된다. 앞서 방문점검원처럼 반려견에 대한 위협이나 고객의 갑질도 존재하지만, 무리한 작업을 거절하거나 반려견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경우 기분이 나빠져 고객센터에 항의할 경우 할당량이 적어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도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³¹⁾ 따라서 방문점검원과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역시 적합한 거부 기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작업중지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직무교육 수행 시 마지막에 직접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적정 자격을 지닌 경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은 기계나 전기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여 직무교육 중에도 안전교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행에 있어 무리가 없으나 특별히 이력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초 노무제공 시 역시 한 번만 받으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측에서 많았다³²⁾. 사업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인터넷 교육과 이수증 발급에 따른 이력관리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고려하고 있다.

31) 방문점검원에 비해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대부분 남성이라 성희롱이나 위협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3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업무를 요청하는 기업의 업종이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 상이한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표 IV-9〉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제품판매업주/대리점주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형가전 설치회사 제품판매점 창고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형가전 설치 관련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점주 창고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및 판매점주 개인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시 안전사항 매뉴얼 대차 등 운반장치 비치 보호구 지급 및 비치 고객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시 도구 점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하고 있으나, 현장 다양성으로 효과적이지 않음 대부분 소비자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준들이라 판매업주에게 준수확인에 한계가 있으며, 종종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이동식 크레인이나 전기기계 등은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게 맡겨두고 있으며, 해당 제품사항의 유의점만 직무교육하고 있음 소형가전 위주로 이동식 크레인 규칙은 신경 쓸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배송을 위해 지게차 사용이 간혹 있음 창고의 적재에 있어, 택배회사보다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음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점주 및 대리점주(창고관리주체)라고 고려하나 현실적으로는 교육 공지만 하고 있음 특정제품 설치 및 수리 직무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같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이라 말하기는 어려움
안전교육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교육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기 등 소형가전회사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과 정규 근로 계약 체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가 아님 소형가전은 대부분 정규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형가전에 많지만, 2인 기사(주기사-부기사) 형태라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로 인식함 50kg 이상 제품과 같이 소형제품이 아님에도 소형처럼 제품을 상하차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물품분류 및 상차 작업까지 수행하여 설치 및 수리원의 직무범위 모호함 지게차 자격증 확인 없이 상하차 시 지게차 사용 허가 제품유형이 다양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어려움 고객의 무리한 설치 요구 등에 대한 어려움 최근 설치물류 형태의 작업이 많아지고 있어 관리가 더 필요함

9) 화물차주

화물운송 관계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종류가 많아 먼저 화물운송 주선(가맹)사업자 측면의 물류협회와 화주/주문자 수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수출입컨테이너, 철강재, 시멘트, 위험물질을 제조하고, 운송을 요청하는 기업 위주로 <표 IV-10>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였다.

안전조치 대상에 있어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현장과 물건을 받는 현장 측면에서 화물차주의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³³⁾,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기업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조치 이행 사항을 문의하였다. 기본적으로 화물차의 운송과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 관련 [별표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기준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으나 그 기준에 대한 정확한 체크리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언급된 화물차주의 안전조치 역시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는 항만관리자와 운송사업자가 수출입 컨테이너의 적재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컨테이너의 선정과 적재에 있어서 화물차주가 직접하는 경우의 문제점이 있었다. 컨테이너를 받는 사업장 역시 대기업은 화물 차주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역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물품 검수만 할 뿐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신고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철강회사는 철강제조 공정에 출하 및 적재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조치에 유념하고 있으며 상하역 장비 역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다. 철강재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적재 방법 역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음으로 물품을 수령받는 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선재 철강재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다니지 않는 정해진 구역에 화물차 인도, 상하역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도구 사용, 관리감독자 배치, 물품수령인도 등 「산

33) 화물차주는 도로 상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아닌 운전자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주요 관점은 사업장 내의 사고성 재해에 초점을 맞추므로, 현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업안전보건법」의 상하역 기준에 준하여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 회사의 경우는 철강재의 상하역이 정해진 구역이 근로자가 이동하는 구역과 맞닿아있는 경우가 잦아 신호수 배치와 양중기 사용 등에 있어 안전조치에 더욱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구의 지급은 이행주체가 명확치 않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도 현재 명확치 않다. 반면, 화물차주의 역할로 소유(지입)차량의 점검이나 보수 시 대형 화물차 위에 올라가는 고소작업이나 작업도구 사용이 빈번하여 잦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물질 운송업체의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 기술 기준」 등 해당 법령에 따라 기업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컨테이너, 철강제, 시멘트와 비교하여 화물차 운송기준이 명확히 운영되고 있었다.

〈표 IV-10〉 화물차주 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화주/주문자	운송사업자	화물차주(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자)
방문단체 또는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기업 • 철강제조-사용기업 • 위험물질 제조-사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협회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회사 • 철강제조/사용회사 • 화학제품제조/사용 회사
안전조치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 현장 사업장	• 현장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현장 안전관리감독 • 화물 특징에 맞춰 상하역 기준 준수 • 상하역 위치 인도 • 사업장 안내사항 (도로, 보안 수칙 등) 화물차주에게 사전 전달 	• 특별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확인 • 물품 체결사항 확인 • 안전운전 • 사업장 안내사항 숙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체적 체크리스트 활용 	•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교육 이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주 또는 수령자는 확인 위주 • 운송사업자라 생각하며, 계약 시 확인조건으로 명시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 화주/주문자
안전교육 이행 방법	• 교육하지 않음	• 인터넷 교육	• 인터넷 교육
추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주는 상하역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점과 익숙치 않은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발주자나 공급자는 현장의 장소적 위험에 대해 정보제공에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함 • 대기업 현장 등은 장소적으로도 여유 있으며, 도로나 창고 등 안전조치 사항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됨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수량 검수만 할 뿐, 수령이나 발송 시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경쓰지 못하고 있음 • 위험물질 관련하여서는 법적 사항이 강하며, 운전 시 안전주행에 신경을 쓰고 있음 • 차량 점검이나 보수 시 대형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는 고소현장 위험성이 존재함 		

3. 전문가 의견수렴

1) 전문가 회의 개요

전문가 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정성과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공유도 수행하였다. 전문가 회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된 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한 산업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 1차 전문가 회의는 앞서 관계자 의견수렴에서 문제가 된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의와 작업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책임소재 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2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실무에서 책임소재를 규정하고,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의견수렴 하였다.

2) 의견수렴 내용

1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의견 수렴 기관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연합회와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노사 및 학계의 의견을 <표 IV-11>과 같이 수렴하였다. 대표 전문가 회의 의제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부터 범위까지 유사하게 참조하는 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현장 위험성과 산업재해율은 경험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특별한 위험성 조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노사 및 학계의 의견으로는 산재보상과 안전조치는 별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가입 대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위

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선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노무관계에 다양한 사업자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하 관계에 주목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안전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학계에서는 안전조치의 의무대상이 존재하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무를 수령하는 자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가 노동계가 제시한 것처럼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사업 관계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구별은 어려우며, 퀵서비스 업체처럼 서로 공유하는 사업 모형에 있어서, 만약 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안했다. 즉, 외부 소속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장만 책임소재가 있는지에 대해, 서로 간의 업무 상 관계 범위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조치와 현장조치의 구분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 이행 주체를 구별하려는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며, 노무계약에 따른 업무범위에 따라 책임소재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학계에서는 계약이든 노무제공 순간이든 최종 노무수령자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소재는 노무를 제공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진에서는 단계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이든 노무제공이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소재를 다 하는 방향을 고려하였다. 다만, 관계 구조 파악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전예방이나 안전보건교육 등 최종 노무수령 전 책임을 구분할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IV-11〉 노사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주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산재보상과 안전조치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정의를 동일하게 할 의무사항은 없다고 보임 • 직종의 위험성에 따라 경중을 나누고, 안전조치 대상을 집중할 필요는 있어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전속성이 없어지는 현재, 안전조치 역시 특별히 보험과 관계없이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안전조치 이행을 수행할 직종이 있는 만큼 위험성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검토 필요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비용을 내는 주체를 예방조치하는 것은 필요하나, 직종 성격상 근로자 성격을 파악하고 예방조치 이행주체가 필요한 경우를 선행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이나 사업장에 따라 원칙적으로만 수행되는 게 아니며, 실제 상하관계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사업장이 있다 보니 법적으로 일괄화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 맞춘 감독 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여럿이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재해발생 시 책임주체가 실질적인 계약 외의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노무 제공을 공유하여 수령하는 모든 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제공자는 노무수령자와 업무제공 체결 관계(대가 계약 체결과는 다름)로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제공받는 공간의 사업자는 모두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봐야함 • n차 관계에 주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본인이 업무수행을 하는 마지막 노무수령관계를 맺는 자가 안전조치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방조치와 현장조치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적으로 현장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안전조치 동향 상 당연한 조치로 보임 • 안전보건교육 주체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노무수령자들의 유형 분류가 필요해보이며, 역할의 경증 파악이 요구되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노무수령자가 모든 안전조치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 • 예방조치와 현장조치는 그 후의 논의로 해야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가지 직종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기보다는, 한 직종씩 케이스를 실태조사로 다양하게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됨 		

2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정부와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실제 이행조치 시행 상의 문제와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조치의 이행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 아닌지를 검토하고, 책임상의 주요 주체 역시 확인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현재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라는 조항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의 관계를 형성한 직접적 관계자에게 책임의 주요 주체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가 자칫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책임주체를 설정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있을까에 대해, 공공기관과 학계 전문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의 형태와도 유사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사자의 정의에 있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동법 제2조제7호의 사항에 따라 직접적 노무에 대한 계약이 없어도 현장에서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목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서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에서, 수급인이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결국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관리자는 장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임에도, 현장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약 당사자가 외부에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통제를 못할 경우 안전조치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제3호에서도 명시된 바이다. 따라서, 작업 장소를 책임지는 자에게 안전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는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안전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였다. 특히, 건설기계직접운전자(지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도로 상의 안전이라든가 개인 소유의 건설기계,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책임을 질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작업현장에서는 명령이나 지휘 등 사용관계가 발생하여 근로자적 성격이 드러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외의 업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고려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별, 공간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파악에 따라 안전조치의 책임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현장의 관리자가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지는 방향으로 연구를 논의한다.

V. 직무위험분석 및 안전조치 개선사항

V. 직무위험분석 및 안전조치 개선사항

본 장에서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감독방안 제시를 위해, 직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별 위험의 재검토와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여, 현재 안전조치 사항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대한 개선사항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험요인 분석과 현재 안전조치 사항을 매트릭스로 비교하여 현재 누락되거나 규제 필요가 적은 위험요인 항목을 제시한다.

1. 직무위험분석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건설기계의 경우 제27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세부지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³⁴⁾.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는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외부장소로의 출입이 발생하며, 중량의 레미콘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등 도로교통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의 작업과 관련된 사고성 재해는 주로 충돌, 전도·전복 및 추락이 많이 발생되며, 준비작업과 운반작업으로 구분하여 <표 V-1>과 같다.

34)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위험요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2절에서 수행할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매트릭스 접근법까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 V-1〉 건설기계직점운전자(콘크리트믹서트럭) 위험요인

공정명	작업명	위험요인
준비작업	차량 점검 /작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믹서트럭 일일점검표 미비치 및 미작성 • 각종 오일 등의 미점검 • 주제동장치 및 주차 제동장치 작동 유무 상태 미확인 • 조향장치의 유격상태 미확인 및 점등장치의 작동 상태 미확인 • 주행장치의 이상 유무 미확인. • 후사경·후진 경고장치 또는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미실시 • 믹서드럼의 조작레버의 작용 유무, 배송장치(슈트)의 체결 상태, 폐수수거통의 체결 및 누수 상태 및 청소용 물탱크의 체결 및 누수 상태 등의 확인 미실시 • 엔진의 충분한 워밍업 미실시
	상차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상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콘크리트 투입 시 투입량 점검 및 결속 상태 미확인 • 작업 개시 전 간단한 준비운동(스트레칭) 미실시
운반작업	운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전이나 운전 중 음주 •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 운전 시 주의 부족 • 교통법규의 위반 • 굴곡이 심하고 비포장된 도로를 주행 시 15km/h 이내 운전 미실시 • 야간, 빗길, 안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 미실시 •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 또는 후진 경고 미실시 •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 미실시
	하차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콘크리트로 인한 피부 화상이나 안구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하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콘크리트 투입구 물청소 시 콘크리트 드럼 오름 계단의 미끄럼 예방조치 미실시 • 드럼 내부 작업 시 엔진 시동기를 뽑지 않음 • 잘 보이는 곳에 '드럼 내부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설치

2) 골프장 캐디

캐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요인은 경기 전, 경기 진행과정, 경기 후 마무리 과정에서 <표 V-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V-2> 골프장 캐디 위험요인

작업명	세부작업명	위험요인
경기 전 준비작업	카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트 사용에 따른 충전설비에서의 분리 시 감전 위험 • 타이어 파손 및 마모, 공기압 불량에 따른 전도 위험 •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제동장치 고장에 따른 부딪힘 및 전도 위험 • 등화장치 불량에 따른 시야 미확보로 부딪힘 위험 • 후진 시 경고음 고장에 따른 부딪힘 위험
	카트로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베이어 밸트로 이송된 골프백 이동 시 신체일부의 끼임 위험 • 카트 장착물 및 골프백 고정불량으로 인한 부딪힘 위험
경기진행	카트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 시 운전미숙, 과속에 의한 부딪힘 및 전도 위험 • 자동주행 시 오작동 및 오조작에 의한 부딪힘 위험 • 주행 도로의 관리불량(도로 상태 등)에 따른 전도 위험 • 주행 도로의 지형(급커브, 급경사 등)에 따른 전도 위험
	경기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스윙 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골프채에 맞음 • 동반플레이어 또는 앞팀 뒷팀에서 날아온 공에 맞음 •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이며 비정형화된 장소의 이동에 따른 허벅지/다리의 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비정형 지형에서의 이동으로 인한 미끄러짐 • 날씨의 영향에 의한 낙뢰사고 • 숲 및 나무가 많은 야외작업에서의 해충 및 유해동물에 의한 사고 • 위험구역(헤저드, 낙석구간, 절벽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익사 및 깔림, 미끄러짐, 추락 위험 • 혹서기의 열사병 및 혹한기의 저체온증 발생 위험 • 고객에 의한 폭언 및 성희롱에 의한 피해 •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경기 후 마무리	카트에서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미숙, 과속에 의한 부딪힘 및 전도 위험 • 카트에서 골프백을 하차하여 고객의 차량으로 이동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카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트 충전 시 전기기계 설비의 감전 위험 • 축전지(황산액) 관련 취급 부주의에 따른 위험

3)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화물과 운반기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객과 최접점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화물집화 및 배공 과정에서 넘어짐, 부딪힘 등의 재해예방은 물론,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감정노동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성을 듣는 등 마찰이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과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여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야간작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형 간선차량과 지게차 등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명절 등 특수기에 늘어난 물동량으로 장시간 과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배송 물량 분담과 정기적인 휴식시간 등을 부여하여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물동량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이 투입되며 작업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재해발생, 상/하차 및 바코드 인식과 같은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세부 작업별 위험요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V-3>과 같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미준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시야가 가려져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박스 운반 도중 출입문에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고, 트럭에 박스를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허리통증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령지나 배송지 역시 아파트나 주택, 관공서 등 위치가 계속 변경되고 주차장소의 어려움이나 출입보안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표 V-3〉 택배기사 재해 사례

위험요인	교통사고	넘어짐	부딪힘
사례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미준수	택배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시야가 가려 미끄러짐	박스 운반 도중 출입문에 부딪힘
위험요인	떨어짐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사례			
	트럭에 박스를 내리던 중 떨어짐	무거운 박스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통증을 느낌

택배기사의 작업순서인 분류, 포장, 차량 적재 및 물품정리, 차량운전, 물품 하자, 운반/배달, 확인작업은 물론, 소유 또는 대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 기적 검사에 따른 위험요인까지 〈표 V-4〉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V-4〉 택배기사 위험요인

작업순서	위험요인
(1) 분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작업장 바닥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 벨트컨베이어 작업 중 끼임 • 롤테이너 이동 중 끼임, 물품의 낙하로 인한 요통 • 랙에 물품 적재 시 사다리에서 떨어짐 • 중량물 사이에 손가락 끼임 • 배달 물품 중 돌출된 날카로운 내용물에 찔림 • 반복적인 분류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2) 포장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기 포장 중이던 물품 낙하 • 포장 로프에 손이 끼임 위험 • 커터칼에 베임 •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배송지역별 소단위 운반용구 운반 중 요통
(3) 차량 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차 중 차량 유동으로 부딪힘 • 지게차에 부딪힘, 끼임 • 적재함 작업 도중 미끄러짐, 떨어짐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무너짐 • 비좁은 적재함 내부에서 돌출된 차량 구조물에 부딪힘 •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4) 물품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차된 적재물 붕괴에 의한 부딪힘 • 적재물 정리 작업 중 미끄러짐 • 정리후 하차 작업 중 떨어짐 • 편중 적재에 의한 중량물 무너짐 • 적재 중 돌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찔림 • 적재물 운반 중 대차 등에 발등 끼임 • 화물 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로프가 끊어져 넘어짐
(5) 차량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집힘 • 운전 중 통화, DMB 시청에 의한 교통사고 • 출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자세 불량으로 허리 다침
(6) 물품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 중 차량 유동으로 부딪힘 • 적재함 작업 도중 미끄러짐, 떨어짐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무너짐 • 적재함 내 돌출된 차량 구조물 부딪힘 •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 오토바이 머플러 접촉에 의한 화상 • 중량물 반복 하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작업순서	위험요인
(7) 운반/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회전문 등에 끼임 투명유리 재질 문에 부딪힘 급격히 개방되는 문에 부딪힘 계단에서 배송 박스를 들고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짐 노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베임 중량물의 무리한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8) 확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 물품 전달 과정 중 겪는 폭언, 폭행 물품 확인을 위한 적재함 문 개방 시 떨어짐 다음 배송 물품 정리 중 무너짐 좁은 적재함 정리 작업 중 미끄러짐 적재함 하차 중 무리한 동작에 의한 골절 등 재해 위험 적재함 문에 의한 끼임
(9) 차량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정비 불량으로 교통사고 차량 시동 상태 점검 중 끼임 타이어 교체 중 사고 위험

4) 퀵서비스 기사

오토바이의 운행특성은 보호막이 없고, 커브 길에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우며, 눈이나 비가 올 때 노면이 미끄러워 더욱 위험하다. 이륜자동차의 차체가 작아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륜자동차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급조작은 타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노면의 미끄러움, 겨울에는 결빙 구간으로 인한 위험 등 <표 V-5>와 같다.

〈표 V-5〉 퀵서비스 기사 위험요인

작업순서	위험요인
포장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로프에 손이 끼임 •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물품 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차된 적재물의 낙하 • 오토바이 머플러 접촉에 의한 화상 •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오토바이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 • 타이어의 평크에 의한 오토바이 전복 •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자세 불안으로 허리 다침
물품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 오토바이 머플러 접촉에 의한 화상 • 중량물 반복 하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운반/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회전문 등에 끼임 • 투명유리 재질 문에 부딪힘 • 급격히 개방되는 문에 부딪힘 • 계단에서 배송 박스를 들고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짐 • 노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베임 • 중량물의 무리한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확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 물품 전달 중 폭언, 폭행 위험 • 물품 확인을 위한 배달함 개방 시 끼임

5) 대리운전기사

현재까지 전체 대리운전기사의 공식적인 산업재해현황은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도로교통공단의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경찰DB)에 따르면, 〈표 V-6〉과 같이 '18년 사망자는 3,781명, 부상자는 323,037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교통사고 중 운전자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시 법규위반 유형은 1)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8,438명), 2) 중앙선 침범(964명), 3) 신호위반(963명), 4) 과속(637명), 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471명), 6) 안전거리 미확보(214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운전은 자동차 교통사망사고 5대 재해원인으로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법규 신고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운전 중 무방비할 수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표 V-6〉 대리운전기사 위험요인

형태	내용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휴대전화 조작,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미끄러짐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과 추월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신호위반 신호무시	좌회전 또는 직진신호 종료상태(황색 신호)에서 급히 주행 중 신호를 받고 급히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
과속운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법정속도를 초과한 과속운전 중 전면의 차량과 충돌
안전거리 미확보	앞 차량 급정지 시 뒤따르던 대리운전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미끄러져 충돌
고객의 폭언·폭행	고객 성향에 따른 폭언 및 폭행을 통한 운전 위험

6)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의 업무상 위험요인은 이동이나 배달 시 넘어짐이나 교통사고, 균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이며, 고객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비대면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제약이 있었지만, 대면이 기본인 방문판매로써 사람 간의 감염병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분석에 따른 위험요인은 〈표 V-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V-7〉 방문판매원 위험요인

작업순서	위험요인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대리점의 공기질 저하 또는 휴게시설 부족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판매대리점의 물건 적재 부실 • 상차 용도의 도구(대차 등) 부족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계단의 단차 또는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 차량 교통사고
중간하차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하차 시 물건에 대한 맞음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계단의 단차 또는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 차량 교통사고
방문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물품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가정의 동물의 위협 및 상해, 더위 등으로 인한 위험 •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 •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에 따른 위험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7) 방문점검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표 V-8〉과 같이 작업순서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험요인은 방문점검원의 이동과정과 대여 제품의 특징과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동과정에 있어서 도보나 차량이동에 따라 넘어짐이나 교통사고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여 제품 역시 정수기와 같은 경우 화상의 위험과 수도관 파손 및 파열에 따른 손해가 있을 수 있으며, 비데의 경우 욕실 바닥 미끄러움으로 인한 상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매트리스 등 중량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대여 제품마다 안전조치방법을 달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표 V-8〉 방문점검원 위험요인

작업순서	위험요인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 제품 대리점의 공기질 저하 또는 휴게시설 부족
상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 제품 대리점의 물건 적재 부실 • 상차 용도의 도구(대차 등) 부족 • 점검 도구의 파손 또는 불량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계단의 단차 또는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 차량 교통사고
방문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 설치된 제품으로부터의 위험 • 화상, 전기 감전 등 제품 특징과 전기전원으로부터의 위험 • 제품의 베임, 물기로 인한 넘어짐 등 위험 • 고객 가정의 동물의 위협과 상해, 더위 등으로 인한 위험 • 높이 설치된 대여제품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 시 사다리나 의자 사용에 대한 추락 위험 •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 •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에 따른 위험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방문점검원과 달리 기능직종에 속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표 V-9〉와 같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먼저, 기계적·전기적 위험과 작업도구에 대한 위험도 지니며,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작업이 많이 몰리고 있어, 업무에 대한 위험도가 크다. 무엇보다 설치할 가전제품의 종류와 가정 및 시설의 구조와 노후화 정도 등 설치장소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진다. 설치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매번 변화하며, 설치할 장소의 정보 또한 명확치 않은 점도 전문지식과 경험의 없는 한 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1인

이 들기 어려운 제품을 무리하게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추락이나 절단, 베임 등 자상 재해가 많음에도, 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요함에도, 설치 작업 시 불편함을 가져와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 장갑 정도는 착용하지만, 고소작업을 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단순히 설치만이 아닌 운송, 운반은 물론 동물로부터의 위협 및 상해, 고객자산의 손상방지와 응대 등 물리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표 V-9〉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위험요인

작업순서	위험요인
상차(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량물 취급 및 단독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지게차 사용 시 주의 중량물 고정 및 체결 불안전한 작업자세
이동 및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위험 가전제품 적재 및 탈락 위험
하차 및 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량물 취급 및 단독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1인이 운반하기 어려운 중량물 무게 주차공간 미확보 및 경사길 주차에 따른 위험 운반설비 미사용 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장갑 등) 미착용 가정 또는 사무실 진입 시 문 또는 엘리베이터에서의 부딪힘 또는 끼임 위험 가전제품에 맞거나 끼임 위험
설치(수리) 및 시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전한 설치장소(고소, 난간 등)에 따른 위험 온도, 습도 등 작업장소의 적합지 않은 작업환경 전기 사용 또는 증압에 대한 감전(활선작업 여부 등) 고소작업 시 사다리나 의자 등 사용에 따른 추락위험 작업도구 사용에 따른 베임 등 개인보호구 미사용 및 작업수칙 위반 등 고객 가정의 동물의 위협과 상해, 더위 등으로 인한 위험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에 따른 위험
정리 및 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로 인한 상해

9) 화물차주

일반 화물운송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는 떨어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넘어짐 등이 있으며, 세부 작업별 위험요인은 <표 V-10>과 같다³⁵⁾.

<표 V-10> 화물차주 위험요인

공정명	작업명	위험요인
준비작업	차량 점검 /작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정비일지 미비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미비 • 고장차량 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 유·무 확인 미실시 • 차량 내부 및 외부 손상 관리 미실시 • 타이어 교체시기 부적절 및 공기압 상태 확인 미실시 • 차량 등화장치 관리 및 전조등 조도, 반사각 등 확인 미실시 • 차량 제동상태 및 주차브레이크, 조향장치, 각종 계기장치 등 작동상태 확인 미실시 • 화물 상·하차 시 사용하는 와이어 및 섬유로프 등의 점검 확인 미실시 • 연료장치 및 각종 오일류 점검 미실시
운반작업	상차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차량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상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중량물 취급 시 적절한 운반 기계·용구 등 미사용 및 안전수칙 미숙지 •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화물 적재하중 점검 및 결속 상태 미확인 • 화물 상차 작업 개시 전 간단한 준비운동(스트레칭) 미실시
	운전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운전 시 주의 부족 및 교통법규의 위반 • 화물의 굴러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 야간, 빛길, 안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 미실시 •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 또는 후진 경고 미실시 •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 미실시
	하차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차량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하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중량물 취급 시 적절한 운반 기계· 용구 등을 미사용 •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수칙 미숙지 •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화물 하차 작업 개시 전 간단한 준비운동(스트레칭) 미실시 • 화물 하차 시 고소에서 떨어짐 및 미끄러짐 주의 부족

35)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적재형 화물차주를 대표적으로 고려하였다.

2. 안전조치 개선사항

1) 직종별 안전조치 적정성 점토

안전조치 적정성은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으로 측약)을 정리하고 [그림 V-1]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위험요인 중심으로 규칙이 해당(행 방향)하지 않으면 추가 검토 필요 규칙 사항, 규칙 중심으로 위험요인이 해당(열 방향)하지 않으면 삭제 검토 필요 규칙 사항으로 9개 직종의 안전조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규칙 1	규칙 2	
위험요인 1			추가 검토가 필요한 위험요인
위험요인 2	●		
		삭제 검토가 필요한 규칙	

[그림 V-1]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한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경우, 건설기계 27종마다 모두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표 V-11>과 같이 앞서 분석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위험요인 분석에 더해, 현행 기준 점검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항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규칙 제4조의 2는 보건조치에 가까워 고려하지 않았으나, 각종 오일 등의 점검은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V-11〉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요인	제3조	제4조	제5- 62조	제67- 71조	제86- 99조	제132 - 190조	제196 - 221조	제328 - 393조	제405 - 413조	제417 - 419조	추가 조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일일점검표 미비치 및 미작성			● [38조]								
각종 오일 등의 미점검											제92조
주제동장치 및 주차 제동장치 작동 유무 상태 미확인					● [89조]						
조향장치의 유격상태 미확인 및 점등장치의 작동 상태 미확인					● [89조]						
주행장치의 이상 유무 미확인					● [89조]						
후사경·후진 경고장치 또는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미실시					● [86조]						
믹서드럼의 조작레버의 작용 유무, 배송장치(슈트)의 체결 상태, 폐수수거통의 체결 및 누수 상태 및 청소용 물탱크의 체결 및 누수 상태 등의 확인 미실시		●	● [5조]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32조]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상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22조]					● [412조]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39조]					● [412조]			
콘크리트 투입 시 투입량 점검 및 결속 상태 미확인					● [89조]	● [133조]	● [203조]				
굴곡이 심하고 비포장된 도로를 주행 시 15km/h 이내 운전 미실시·야간, 빛길, 인개길 등에서 차량 운전 시 감속 주행 미실시					● [98조]			● [37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지 또는 후진 경고 미실시			● [40조]			● [171조]		● [344조]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 [201조] ● [204조]				
생콘크리트로 인한 피부 화상이나 안구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34조]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하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20조]								
콘크리트 투입구 물청소 시 콘크리트 드럼 오름 계단의 미끄럼 예방조치 미실시			● [24조] ● [46조]	●				● [335조]			
드럼 내부 작업 시 엔진 시동키를 뽑지 않음					● [99조]						
잘 보이는 곳에 '드럼 내부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설치						● [172조]					
개정검토의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장소에 한정한 문제로 검토 필요		

(2)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역시 대부분의 안전조치 사항은 위험요인에 맞춰 규정되어 있었다. 먼저, 규칙 제79조, 제80조부터 제82조는 보건조치에 가까워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았다. 골프장 캐디는 넘어짐과 물체에 맞음 재해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규칙 역시 <표 V-12>와 같이 두 재해와 관련이 높았다. 다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의 추가도 요구된다.

두 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캐디백(골프백)과 관련한 중량물 처리에 있어 안전조치 기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캐디백을 컨베이어 벨트에 이동 시 끼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규칙 제191조부터 제195조에 대해 골프장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며, 카트에싣고 이동 시 결착 등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와 규칙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 작업 시 조명과 관련한 제7조(채광 및 조명)도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다. 물체에 맞음과 관련해서는 골프공 맞음이 많아 보호구 착용(인증기준이 없으므로 규칙 제31조)도 일부 고려해야 하며,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균골격계 부담증후 및 질환 관련 조항으로도 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를 추가하여 캐디가 수행하는 캐디백 및 골프 클럽의 운반,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야 한다.

〈표 V-12〉 골프장 캐디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86조 제7항	제 89조	제 171조	제 172조	제 316조	추가 조항
카트 사용에 따른 충전설비에서의 분리 시 감전 위험					●		
타이어 파손 및 마모, 공기압 불량에 따른 전도 위험		●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제동장치 고장에 따른 부딪힘 및 전도 위험		●					
등화장치 불량에 따른 시야 미확보로 부딪힘 위험		●					제7조
후진 시 경고음 고장에 따른 부딪힘 위험		●		●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된 골프백 이동 시 신체일부의 끼임 위험							제191조부터 제195조
카트 장착물 및 골프백 고정불량으로 인한 부딪힘 위험					●		제173조
주행 시 운전미숙, 과속에 의한 부딪힘 및 전도 위험				●	●		
자동주행 시 오작동 및 오조작에 의한 부딪힘 위험	●				●		
주행 도로의 관리불량(도로 상태 등)에 따른 전도 위험	●			●			제3조
주행 도로의 지형(굽커브, 급경사 등)에 따른 전도 위험	●			●			
고객의 스윙 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골프채에 맞음							제31조
동반플레이어 또는 앞팀 뒷팀에서 날아온 공에 맞음							제31조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이며 비정형화된 장소의 이동에 따른 허벅지/ 다리의 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제657조부터 제662조
비정형 지형에서의 이동으로 인한 미끄러짐							제386조
날씨의 영향에 의한 낙뢰사고							필요
개정검토의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택배 물류센터와 같이 현장 사업장에서 택배를 싣는 작업을 하고, 사업장이 아닌 공공도로나 일반 가정, 건물로 소화물을 배송하게 된다. 택배기사는 넘어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무리한 동작, 떨어짐, 끼임 순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나며, 관련 위험요인을 <표 V-13>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삭제 검토와 관련하여, 규칙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385조는 위험요인과 관계가 없는 규칙으로 드러났다.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크레인 등이나 지게차를 탈 작업이 없으며, 중량물 하역업무 역시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으나 실제 업무상 필요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규칙 제3조, 제5조부터 제22조, 제26조부터 제30조를 고려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택배기사는 이미 분류된 소화물을 롤테이너에 싣고 자차까지 이동하여 싣는 작업만을 수행하며 그 동선 역시 짧아, 전도(규칙 제3조)와 관련한 재해 위험이 낮다고 도출되었다. 또한, 규칙 제5조부터 제22조, 제26조부터 제30조는 물류센터 건물의 설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택배사업자나 택배기사 모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적재물 붕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레이아웃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달라, 설계부터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표 V-13〉 택배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 조	제 4 조	제5- 22조	제26- 30 조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 86 조	제 89 조	제 98 조	제 99 조	제171- 178조	제191- 195조	제 385 조	제 387- 393조	제 657- 666조	제 672 조제4 항2호	추가 조항
상차 중 차량 유동으로 부딪힘										●						
지게차에 부딪힘, 끼임			●							●						
적재함 작업 도중 미끄러짐, 떨어짐	●	●	●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무너짐										●	●					
비좁은 적재함 내부에서 돌출된 차량 구조물에 부딪힘			●							●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						
중량물 반복 상(하)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상차된 적재물 붕괴에 의한 부딪힘													●		제19 0조	
적재물 정리 작업 중 미끄러짐	●		●	●									●			
정리후 하차 작업 중 떨어짐			●	●								●				
편중 적재에 의한 중량물 무너짐										●		●				
적재 중 돌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찔림												●				

적재물 운반 중 대차 등에 발등 끼임											●				
화물 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로프가 끊어져 넘어짐											●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자세불량으로 허리다침												●			
하차 중 차량 유동으로 부딪힘									●						
적재함 문 개폐 시 손가락 끼임								●							
계단에서 배송 박스를 들고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	●								●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짐	●		●	●											
중량물의 무리한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			
물품 확인을 위한 적재함 문 개방 시 떨어짐												●			
차량 정비 불량으로 교통사고													●		
차량 시동 상태 점검 중 끼임													●		
개정검토의견					구체적이지 않음	삭제검토	삭제검토	삭제검토	삭제검토			삭제검토			

(4)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대부분 밖에서 이동하는 만큼, 교통사고, 넘어짐, 무리한 동작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호구에 해당하는 규칙만 적용 가능하며, 일부 탑승의 제한에 <표 V-14>와 같이 포함된다. 그러나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로 인증기준이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보호구 착용 유도가 더 필요하다.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는 가슴보호대나 무릎보호대 등의 인증 규격 관련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등 보호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추가 규칙으로 퀵서비스 기사 역시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 제663조부터 제664조를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업무 및 질환 관련 규칙 제662조와 제666조의 추가도 고려할 수 있다.

<표 V-14> 퀵서비스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제10호	제86조 제11항	추가조항
포장 로프에 손이 끼임	●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	●		제31조
타이어의 평크에 의한 오토바이 전복	●	●	제31조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	●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자세 불안으로 허리 다침	●		
상차된 적재물의 떨어짐	●		제663조부터 제666조
건물의 회전문 등에 끼임	●		
투명유리 재질 문에 부딪힘	●		
급격히 개방되는 문에 부딪힘	●		
계단에서 배송 박스를 들고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거나 헛디뎌 넘어짐	●		제663조부터 제666조
바닥 턱에 걸리거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짐	●		
노출된 날카로운 물품에 베임	●		
물품 확인을 위한 배달함 개방 시 끼임	●		
반복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제662조
중량물의 무리한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제662조 제666조
개정검토의견	없음	없음	

(5)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규칙 상에서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 제공 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가 대부분 외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위험요인 역시 대부분의 교통안전과 유사하여 규칙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 역시 퀵서비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보호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표 V-15>와 같이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표 V-15> 대리운전 기사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조항
폭염, 한파 및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피해		필요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제3조, 제32조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전복		제32조
야간 등 취약시간에 대한 운전 어려움		제32조
전조등, 바퀴,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운전 사고 발생		제32조
장기간 운전에 따른 출음운전 사고		제664조
장시간 운전에 따른 자세 불안으로 허리 다침		제666조

(6)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의 최근 직무 방식은 보통 대리점은 카탈로그나 샘플 수령을 위해 단시간 방문 후, 장기간 동안 본인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사고 역시 넘어짐이나 업무 현장이 대부분 공공도로나 가정, 건물 등으로 사업장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하는지 사업주가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현재 규칙도 <표 V-16>과 같이 대부분 보건조치 사항이며,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호구나 중량물 취급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컴퓨터단말작업을 방문판매원이 하는 일은 거의 없어 삭제검토가 필요하다.

〈표 V-16〉 방문판매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647조	제648조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67조	추가조항
방문판매대리점의 공기질 저하 또는 휴게시설 부족	●	●	●	●	●	●	●	●		
방문판매대리점의 물건 적재 부실										제665조
상차 용도의 도구(대차 등) 부족										제665조
도로, 계단의 단차 또는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제31조 제32조
불안전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제662조 제666조
하차 시 물건에 대한 맞음										제32조
개정검토의견									삭제 검토	

(7) 방문점검원

방문점검원은 대여 제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수시적인 점검을 수행하며, 안전조치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는 넘어짐, 무리한 동작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맞춰 보호구 지급 및 준비와 중량물 취급으로 규칙이 <표 V-17>처럼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방문점검원이 보호구를 챙겨 현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간단한 장갑 정도를 챙겨가는 정도여서 실제 규칙 준수에 따른 위험성 감소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방문점검원의 위험요인은 직무범위 상 “점검”의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많아 작업 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사용하는 점검도구의 이용, 잘못 설치된 제품으로부터의 위험, 전기전원으로부터의 위험,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 등 대여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작업을 하는 현장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장소라 규칙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 위주로 방문점검원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방문점검원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조항으로는 점검도구 사용 시 정비를 위한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와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V-17〉 방문점검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63조	제664조	제665조	제666조	추가조항
대여 제품 대리점의 공기질 저하 또는 휴게시설 부족								제647조부터 제653조
대여 제품 대리점의 물건 적재 부실				●	●	●	●	
상차 용도의 도구(대차 등) 부족				●	●	●	●	
점검 도구의 파손 또는 불량								제91조
도로, 계단의 단차 또는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	●	●					필요
잘못 설치된 제품으로부터의 위험	●	●	●					필요
화상, 전기감전 등 제품 특징과 전기전원으로부터의 위험	●	●	●					제317조 제323조
제품의 베임, 물기로 인한 넘어짐 등 위험	●	●	●					필요
높이 설치된 대여제품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 시 사다리나 의자 사용에 대한 추락 위험	●	●	●					제317조 1항제2호
개정검토의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산업재해통계 상 아직 많은 재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무리한 동작, 떨어짐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 역시 <표 V-18>과 같이 중량물 취급 및 전자제품 설치(특히, 고소작업)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도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칙 기준 사항은 없으나, 문제는 관련 규칙이 적용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소비자 장소이기 때문에 규칙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실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특히, 제38조 관련해서 사업주가 소비자 장소인 건물이나 아파트 도면이나 전기배선도 등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 삭제 검토가 요구된다. 실태조사 인터뷰에서도 현장의 안전조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나, 관련된 규칙 기준이 소비자 장소에서 모두 요구되는 만큼의 작업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보다 시급한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에서 가전제품을 처음 상차하는 과정으로, 택배업에 비해 현장의 시스템이 열악하여, 물품 분류나 상차를 직접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직무별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직무를 분류된 물품을 배송하는 것부터 명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우선 현재 상차와 적재까지를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역할로 본다면, 규칙 제171조부터 제178조로 화물 적재 사항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V-18〉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요인	제 31 - 33 조	제 38 조 제1 항 제5 호	제 42 조	제 44 조	제 86 조	제 95 조	제 96 조	제 147 - 150 조	제 173 조	제 177 조	제 186 조	제 233 조	제 301 -30 5 조	제 313 조	제 316 조	제 317 조	제 319 조	제 323 조	제 656 - 666 조	추가조항
중량물 취급 및 단독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																		●		
지게차 사용 시 주의																			제174조 제178조	
중량물 고정 및 체결																		●		
불안전한 작업자세																		●		
가전제품 적재 및 탈락 위험										●	●							●	제190조	
1인이 운반하기 어려운 중량물 무게									●	●								●		
주차공간 미확보 및 경사길 주차에 따른 위험																			필요	
운반설비 미사용 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장갑 등) 미착용	●		●					●												

가정 또는 사무실 진입 시 문 또는 엘리베이터에서의 부딪힘 또는 끼임 위험	●								●																
가전제품에 맞거나 끼임 위험	●																						●		
불안전한 설치장소(고소, 난간 등)에 따른 위험				●					●			●													
온도, 습도 등 작업장소의 적합지 않은 작업환경																								필요	
전기 사용 또는 증압에 대한 감전(활선작업 여부 등)																●	●	●	●	●	●	●			
고소작업 시 사다리나 의자 등 사용에 따른 추락위험	●				●																				
작업도구 사용에 따른 베임 등	●					●	●									●									
개인보호구 미사용 및 작업수칙 위반 등	●																								
폐기물로 인한 상해	●																								
개정검토의견	없음	삭제 검토	없음																						

(9) 화물차주

화물차주는 떨어짐과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주요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화물차주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주차 후 차량점검 중 컨테이너나 탱크로리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 위에 올라갔다가 안전장치 부재로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표 V-9>와 같이 현재 떨어짐과 관련한 화물차주의 규칙 기준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와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³⁶⁾. 또한, 사업장 내에서 차량 정비 중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도 차량 점검 시 안전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화물차의 사업장 내 원활한 이동을 위해 규칙 제40조(신호)에 관한 사항과 하역운반기계로 화물차의 물건을 중간에서부터 빼내지 않도록 규칙 제190조도 화물차주 안전을 위해 검토할 사항이다.

36) 화물차주의 떨어짐은 고유업무인 배송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주의 직무범위 결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장 관계자가 상하차 과정을 화물차주에게 맡기거나 컨테이너 선정 및 적재, 체결 등 직종 및 계약과는 다른 업무 과정을 지시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표 V-19〉 화물차주의 안전조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요인	제 32 조	제 33 조	제 38 조	제 171 조	제 172 조	제 173 조	제 177 조	제 178 조	제 187 조	제 188 조	제 189 조	제 227 조	제 279 조	제 297 조	제 298 조	제 663 조	제 664 조	제 665 조	제 666 조	추가 조항
화물 상·하차 시 사용하는 와이어 및 섬유로프 등의 점검 확인 미실시									●	●	●									
연료장치 및 각종 오일류 점검 미실시																				제91조 제92조
화물 차량의 주·정차 시 차량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 미실시				●	●															제40조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상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제40조
중량물 취급 시 적절한 운반 기계·용구 등 미사용 및 안전수칙 미숙지									●	●						●	●	●		
작업 감시인의 미지정 및 미배치				●																
화물 적재하중 점검 및 결속 상태 미확인 * 가스, 액체의 경우					●		●	●				●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주입과정 점검 및 안전상태 미확인																				
화물의 굴러떨어짐 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													제190조
후진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 또는 후진 경고 미실시					●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 미실시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하차 시 노동자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미설치						●														
화물 하차 시 고소에서 떨어짐 및 미끄러짐 주의 부족																				제42조 제44조
개정검토의견	없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공통 안전조치 기준 검토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매트릭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공통 안전조치 사항을 <표 V-20>과 같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① 추락 관련

먼저 추락 관련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떨어짐 관련 재해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빈번한 재해이다. 특히, 떨어짐과 관련한 사고성 사망은 13명으로 기록되어 중대성 측면에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 89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타났다(2012~2021년 기준). 따라서, 직종별로 떨어짐 사고가 많은 건설기계직접운전자, 택배기사, 화물차주에게도 다른 직종에서 규정한 추락의 방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된 제42조(추락의 방지)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포함하여, 각 직종이 고소작업을 할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문점검 원도 천장 높이(1미터 이상)에 달린 대여 제품(예. 공기청정기)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 추락 방지 사항의 정보제공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직종에서 추락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밖에 없으며, 이에 맞춰 떨어짐 재해가 많은 직종에 대해 추락 위험과 관련한 규정을 공통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화물 관련

화물을 운반하는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이나 운반과 관련한 적재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1조부터 제178조)에 대해 동일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는 고객 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재 사항을 우선 동일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택배기사에 맞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량물 관련 조치 역시 공통으로 필요하다. 골프장 캐디 역시 캐디백을 카트에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 물일 가능성이 높아 규정이 필요하다. 퀵서비스 기사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인도받은 제품이 5킬로그램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부터 제666조를 두 직종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퀵서비스에 있어 현재 법령은 이륜자동차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 퀵서비스 직종에서는 차량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규정 중에 화물을 중간에서 빼내어 화물에 맞거나 끼이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화물차에서 중간 절강재를 빼내어 재해가 나거나 택배화물의 중간 물건을 빼내다 무너져 재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포함이 필요하다. 화물차주는 상하역을 위해 사업장 내 신호에 따라 적정 위치에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40조(신호)의 검토도 요구된다.

③ 차량 관련

차량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4항제2호에서는 택배업에 대해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5항 제3호에서는 퀵서비스업에 대해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조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해야만 특수형태근로직이 가능한 직종으로는 건설기계³⁷⁾, 골프장캐디³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모두 해당한다. 세 개의 직종에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퀵서비스 기

37) 엄밀히, 자동차관리법 대상은 아니나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므로 차량으로 정의한다.

38) 카트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나, 인증사항을 만족하지 못해 외부에서는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골프장에서는 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확인이 요구된다.

사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도 같이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관련 점검은 현장 작업 상의 사용형태가 발생하는 작업장소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이와 같은 “확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객대응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형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고객대응 관련

고객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9개의 모든 직종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서 보여지는 고객의 폭언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로 정리된다. 확인해보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라고 규정되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관련 교육의 실시가 제외되어 있으며,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는 관련 교육의 실시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의 실시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별표5]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응대와 관련한 교육의 실시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2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려된다. 또한, 골프장캐디는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으나, 다른 유사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모든 소비자 대상의 직종에서 고객과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또는 고객의 동물상해 및 위협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직종별로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골프장캐디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건설기계직접운전자

- 해당조항 없음

* 소비자 장소에서의 위협 요인인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동물상해 및 위협 등을 고객대응지침에 마련

〈표 V-20〉 공통 안전조치 검토 사항

	떨어짐 관련	화물 관련	차량 관련	고객대응 관련
건설기계작업 운전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업무에 이용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에 대한 정보제공	
골프장 캐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부터 제666조		
택배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에 대한 정보제공	
퀵서비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제663조부터 제666조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방문점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부터 제178조, 제190조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에 대한 정보제공	
화물차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71조부터 제178조, 제190조		

3) 직무정의 재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으로 정의하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직종 정의나 법령 조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범위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택배기사의 경우 직종으로만 정의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류작업까지 의무작업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의 경우 202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은 택배회사의 책임이고, 택배기사들의 업무는 집화와 배송만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19년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을 공시하여, 화물운송 계약 내용과 다른 관계없는 업무(상하차 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를 회피하도록 시도하였다.

현재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방식이나 효율성 개선 등과도 관계가 있으나, 계약 상 존재해도 할 수 없는 업무이거나 계약 상 없는 업무에 대해 사회적 관습이나 위계관계 때문에 수행함은 적절치 않다. 특히,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직무정의를 명확히 하여, 초기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지침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에 분석한 위험요인과 실태조사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표 V-21>과 같이 직종별 직무정의를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먼저,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공정에 맞춰 작업하기 때문에 별다른 직무 정의에 이견은 없으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강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골프장 캐디는 잔디 배토 작업과 같은 골프장 보수작업에 대해, 캐디 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직종 특성으로 인해 사업장의 문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배토작업은 위험성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이더라도, 직무 외적으로 골프장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짐, 균골격계 질환 등 위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고객 만족 평가에 따른 별차성 관리 역시 직무에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

하였다.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 갑질에 따른 일반 심부름이 가끔 있다고 하였다. 방문점검원은 단순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제품의 해체 및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나 작업현장이 불안전한 경우 이를 먼저 청소하거나 해결하는 업무 부담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도 적재 작업이 직종 상 주업무가 아님에도 창고에 비치된 고객 제품을 상차하고, 지게차 운전을 직접 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기용량 증가 등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부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소수의견도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 컨테이너의 선별 및 적재는 업무가 아님에도, 선사가 컨테이너를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어 화물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컨테이너의 경우, 기업에서는 자사 물품들이 운송 중 고장이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품질이 좋지 않은 컨테이너를 가져올 경우 화물운송을 거절하는 만큼 선별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화물차주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적재 역시 지게차 운전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 직무 이외의 업무를 적지 않게 수행 중에 있었다.

특히, 현재 규정 상에서, 방문점검원과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점검이나 적재, 설치 과정에 있어,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적인 위험성이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시 및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무정의 재검토는 위험요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칙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는 컨베이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이 적재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주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는 작업 시 해당사항에 현장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 중 위험성과 작업환경 위험성을 구별하여, 규칙에 대한 준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표 V-21〉 직무정의 검토 사항

직종명	직무 이외의 부가 업무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의 자체 수강
골프장 캐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 배토 작업과 같은 골프장 보수작업 • 고객만족 평가에 따른 벌칙성 관리(포상 위주로 관리 필요)
택배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없음
퀵서비스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심부름
대리운전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심부름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없음
방문점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제품의 해체 및 이동 • 비일상 작업현장에서의 정리 및 청소(e.g. 물 많은 바닥에서의 업무에 따른 청소 등 선조치) • 일반 심부름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에서의 가전제품 적재 작업(상차 작업, 지게차 운전 등) • 가전제품 적재 무게 기준 • 가전제품 설치 허가(전기용량 등) • 고객만족 평가에 따른 벌칙성 관리(포상 위주로 관리 필요)
화물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선별 및 적재 작업 • 화물 상하차 작업

4) 사전 및 현장안전조치 책임 기준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조치와 안전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규칙들은 작업현장이 다양함에도 직접적인 안전조치인지 간접적인 정보제공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조항에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

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이 있으나 이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직접 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사용관계가 아닌 작업현장인 일반 도로나 소비자 장소에서 발생하는 작업이다. 즉, 확인과 관련한 정보제공이나 지시는 가능하나, 택배기사 자차(지입) 점검 책임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용관계 현장 외의 안전조치는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안전보건교육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로 대체하고, 실제 안전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사업주와 사용관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지니는 직종은 소비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공도로 상으로 이동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이다. 따라서, 이 직종들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과 함께 앞서 분석한 현장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의 사용관계를 포함하는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는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전조치와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구별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지정된 규칙은 위험요인 분석 결과, 사용관계가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보호구 관련 이외의 조항들은 모두 소비자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사업자와 사용관계가 없는 현장이다. 따라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VI. 안전조치 이행주체 분석 및 감독방안

VI. 안전조치 이행주체 분석 및 감독방안

앞서, 실태조사와 위험요인 분석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사전예방조치의 책임 소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역할 및 책임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목적에 규정된 “책임의 소재”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탐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장 안전조치와 사전예방조치에 대한 법정 기준 상의 이행주체를 제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에서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간의 적합한 안전조치 역할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안전조치 이행주체 확인

1) 이해관계자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안전조치 이행주체인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해관계자를 먼저 구성할 필요가 있다. “者”로 명시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과연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표 VI-1>은 노무를 제공받고, 제공하는 과정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하였다. 노무를 구매하는 자(대가 지불), 노무를 중개하는 자,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직접 수령)로 정의하였다. 노무를 중개하는 자는 노무를 구매하는 자에게는 노무를 제공해주는 자이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중간 형태의 이해관계자이다. 플랫폼 사업 형태로 자주 나타나는 노무를 중개하는 자는 이해관계에서 보통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로 건설기계,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업(운송주

선사업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따라서, 보험가입 외에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관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교육 사항에 대해서 노무를 구매하는 자, 계약하는 자, 제공받는 자 간의 모든 관계를 살펴보아 적절한 역할과 책임의 소재를 부여해야 한다.

〈표 VI-1〉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노무 주체 확인

노무를 구매하는 자 (대가 지불)	노무를 계약(고용, 중개, 알선)하는 자 (간접제공)	노무를 제공받는 자 (직접수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사례
사업주	-	사업주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사업주	(동일, 다른) 사업주	(동일) 사업주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사업주	(동일, 다른) 사업주	(동일, 다른) 사업주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서비스
소비자	사업주	소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소비자	-	소비자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퀵서비스 화물차주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부터 살펴보면, 사업주가 노무를 구매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다.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구매하는 당사자인 동일 건설업체와 계약하거나 알선업체와 같은 다른 사업주의 중개를 거쳐 노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는 노무를 구매한 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사업주이기 때문에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누가 보더라도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다.

세 번째 관계는 노무를 구매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모두 사업주이지만, 구매자와 수령자가 서로 다른 사업주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주가 기업 A로부터 기업 B(구매자)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기업 A에서 상차하고 기업 B로 운송하여 하차한다. 이 경우, 기업 A와 기업 B 모두 화물차 주에게 노무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화물은 상하차와 운송 과정이 모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양 쪽 사업장 모두 안전 및 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 노무가 생겨난 원인 자체는 기업 B가 구매함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B는 기업 A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조립회사가 엔진회사(1차 벤더)에게 물품을 주문·수령할 경우, 자동차조립회사 측에서 물품수령장소, 현장위험요인, 보안사항 등의 정보를 엔진회사에 미리 제공하고, 엔진회사는 화물운송용역 주체인 화물차주에게 물품을 배송할 현장에 대한 안전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네 번째 관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표적인 관계이며, 노무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는 소비자이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중개하는 업무는 사업주가 책임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노무를 중개하는자가 명확한 사업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현장을 특정하지 못하는 가상기업(virtual company) 형태를 지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가상조직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져, 현장의 안전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자에 있어서, 소비자는 노무를 중개하는 자와 계약을 맺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무를 중개하는 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무를 중개하는 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중개자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소비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의 안전 및 보건조치(특히, 고객응대 관련)도 앞장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관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업무를 주거나 굴착기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집 앞 굴착 업무를 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앞서 불명확한 첫 번째 사례로서, 현실적으로 이 계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영업자 위치의 사업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2) 사업형태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노무의 형태는 기업(business)과 소비자(customer) 간 거래 중심의 B2C와 기업(business)과 기업(business) 간 거래 중심의 B2B로 구분할 수 있다. 용어 관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B”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소비자까지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도에 있어서, 사업주를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 또는 고객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심으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그 유형(계약, 중개, 직접 사용 등)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비자(고객)에 대한 법령 조치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역시 소비자(고객)에게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등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문제 발생 시 치료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 VI-2〉를 살펴보면, B2C에 있어서도, 계약업체와 작업현장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소유주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볼 수 있는 작업구조이다. 지배적 장소는 골프장이라는 점에서 캐디가 비록 골프를 치러 오는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소유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다. 택배기사의 경우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로 운송하는 경우³⁹⁾

와 소비자 장소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화물차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택배 지간선 기사와 일반 택배기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택배기사는 B2B와 B2C 형태를 가지고 있다. B2B 택배 형태는 당연히 기업체가 책임을지고, B2C는 기업이 운송 과정과 소비자 수령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정보제공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 B2C 서비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아 서비스(중개, 알선 등)를 제공하는 계약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작업현장	
	범위	사례	범위	사례
골프장캐디	골프장	골프장 소유주	캐디를 직접 고용하는 골프장	골프장 소유주
택배기사	택배업체 (택배서비스 사업자)	CJ 대한통운, 대신택배, 한진택배, 쿠팡 CLS 등	택배업체 또는 기업 물류창고	물류창고 기업 창고
		소비자 장소	-	-
퀵서비스	퀵서비스업체 (프로그램사)	인성데이터, 매쉬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등	소비자 장소	-
대리운전기사	대리업체 (프로그램사)	카카오모빌리티 등		
방문판매원	물품 영업 및 판매 업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웅진씽크빅 등	소비자 장소	-
방문점검원	물품 영업 및 판매 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등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물품 영업 및 판매업체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등		
	설치수리 전문업체	삼성전자 로지텍, LX판토스 등		

39) 택배 지간선 기사로서 「고용보험법」에서는 화물차주로 분류하고 있다.

<표 VI-3>의 B2B는 오히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고려하기 수월하다. 이 경우는 작업현장의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현장 위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사업장이 하나인 반면, 화물차주는 1:1, n:n 계약 관계로 사업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상하차 작업 및 현장, 운송과정 등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주는 법령 상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발주업체현장과 공급업체현장 차원에서 화물차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차별화해야 한다.

<표 VI-3> B2B 서비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아 서비스(중개, 알선 등)를 제공하는 계약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작업현장	
	범위	사례	범위	사례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직접 계약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중개(배차)업체	법인형 건설기계 관리(지입)회사 중기업체	건설기계직접 운전자를 고용하는 건설현장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화물차주	발주자, 화주, 운송회사(운송주 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등	송수신 기업	상하차 현장 (기업, 창고 등)

<표 VI-4>는 화물차주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히 사업자들을 사용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자로서 발주업체 현장(구매인, 수령인)과 공급업체 현장(생산인·유통인)에서는 현장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발주업체 현장은 화물이

수령 시, 공장·공사현장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업체 현장은 화물들을 화물차에싣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수출입 컨테이너나 철강재의 모양,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상하역 업무가 화물차의 모양에 따라서도 다르게 결정되는 상황으로 각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에 준하는 형태로 화물차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표 VI-4〉 화물차주의 노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발주업체현장(화물주문 및 수령자)		공급업체현장(화물공급자)	
	범위	사례	범위	사례
화물 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 컨테이너 형태로 화물을 받거나 싣는 사업장	소유 제조 및 건설 현장	수출입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탑재하고 운송하는 사업장
	시멘트	시멘트(분말, 석회 등)를 주문하여 받는 사업장		시멘트를 직접 만들어 운송하는 사업장
	철강재	철강재(H빔, 강판(강관, 선재(코일), 후판 등)를 주문하여 받는 사업장		만들어진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업장(중간유통)
	위험물질	위험물질을 주문하여 받는 사업장		철강재를 직접 만들어 운송하는 사업장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업장(중간유통)
				위험물질을 직접 만들어 운송하는 사업장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장(중간유통)

3) 장소 형태 중심의 안전조치 이행주체

노무 형태 고찰의 마지막 기준은 장소와 관련한 부분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부분은 작업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대다수의 소비자(고객)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업장 중심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제시한 안전 및 보건조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내용은 차치하고, 조치의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모든 장소를 찾아가면서 현장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언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작업하는 현장장소에 따라 사전조치와 현장조치로 구별해야 한다.

〈표 VI-5〉는 B2C와 B2B 사업형태에 따라 작업장소의 공간적 한정 여부, 작업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이 계약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보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주체사업자)에 따라 계약업체 중심의 사전조치와 사업장 중심의 현장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한정적이지 않고, 사업장이 아닌 공공장소 혹은 개인장소인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조치가 매뉴얼이나 교육, 훈련, 알림 등 사전조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작업장소가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이며, 계약업체의 사업장인 경우는 명확하게 사업장 중심의 현장조치가 더해져야만 한다.

〈표 VI-5〉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 방향

분류*	서비스 유형*	직 종*	작업장소의 공간적 한정 여부	작업장소가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이 계약업체와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안전조치 방법**
B2C 사업 (기업 → 특고 → 소비자)	소비자 금융 서비스	1.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X			1
		7. 대출모집인	X			1
		8.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X			1
	교육서비스	3. 학습지 교사 등	△	X		1
	레저서비스	4. 골프장 캐디	●	●	●	1, 2
	배송/운송 서비스	5. 택배기사	●	△	△	1, 2
		6. 퀵서비스	X			1
		9. 대리운전자	X			1
	판매/설치/ 관리 서비스	10. 방문판매원	●	X		1
		11. 방문 점검원	●	X		1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X		1
B2B 사업 (사업주 → 특고 → 사업주)	2. 건설기계 운전자	●	△	△		1, 2
	13. 화물자동차	●	●	△		1, 2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	△	△		1, 2

* 전윤구 외(2021)를 수정

** 안전조치 방법에서

1. 계약업체(보험가입사업주) 중심 사전조치로 안전보건교육, 사전 정보제공 등 조치
2. 사업장 중심 현장조치로 지배적 사업장의 근로자에 준하여 안전조치 수행

4)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정의 및 범위

결과적으로 발제에서 정리하는 바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의와 현실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대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결국,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명확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특히, 안전 및 보건조치에 예방 및 환경조성 기준 이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생략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①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서 소비자(고객)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의 전통적 취지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과 그 고용 사업주라는 점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서 소비자(고객)를 포함하는 것은 계약이나 전문성 차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적 성격을 지닌 것이 널리 정의되는 내용으로서, 기업에게는 근로자적 성격을, 소비자(고객)에게는 자영업자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고려된다. 따라서,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했던 부분과 같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서 소비자(고객)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②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사업 또는 사업주로 제한

실질적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밖에 없으며, 그 사업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요구하고 감독하기에도 수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모두 사업,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 대가⁴⁰⁾ 지급에 대한 노무제공계약 등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주체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법령 적용이나 이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과도하게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소재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주를 노무제공 계약체결자 혹은 사업에 대해 중개 또는 알선업체 등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정의하는 것도 검토가 요구된다.

③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의 근로자적 사용관계 성립 상황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립조건 중 하나는 “근로자와 유사하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라 작업에 대한 사용관계가 형성되는 현장⁴¹⁾에서는 그 장소에서 노무제공을 책임지는 자의 안전조치 책임소재가 있음은 적합하다. 따라서 먼저 이해관계자에 있어 근로자적 사용관계가 성립되는 장소와 업무를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를 살펴보면, 직무범위가 아니거나 사용관계가 없는 작업장소에 대한 규칙들이 많이 존재한다. 앞서 위 험요인 분석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조항을 살펴보면, 이 때 작업장소는 설치장소인 소비자 장소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조치 할 수 없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는 자영업자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당

40) 대가는 금전적인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41) 앞서 전문가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계약관계 상의 직접적인 위계관계가 아닌, 작업장소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위계 관계를 의미한다.

사자가 수행하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사전조치 및 현장조치 역할 및 책임 명시
 효과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위치와 유형에 따라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의 목적이나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리 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안전관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노무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 사업자 현장의 사용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계약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받는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개 또는 알선 사업자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종사자를 중개하고 알선하기 위해 적격 작업자를 주선하고 안전조치와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가져야 하며, 현장의 사업자는 그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업 분야에 한정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조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67조에서는 도급인은 누가 계약을 하였든,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의 설치나 작업에 대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에서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역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기계와 운전자를 모두 대여하는 업체에서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한다⁴²⁾. 이때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점검이나 운전자의 안전보건교육, 현장의 정보제공 등이 해당된다.

42) 모두 건설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나 대여 상의 안전조치로, 건설기계작업운전자는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직종은 유사한 적용과정을 검토할 필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순증개하는 사업자 포함)와 현장을 지배하는 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계있는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각 주체를 구별하여, 안전보건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의 사전조치와 현장조치의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9조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법령임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과 위탁관계인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이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현장조치 및 시행은 영업점이 하더라도, 그 시행여부의 감독은 택배서비스사업자로 사전조치화 시킨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자 간 관계로서 감독여부가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으로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역할을 사전관리감독과 현장감독으로 구분한 내용임을 살펴볼 수 있다.

2. 이해관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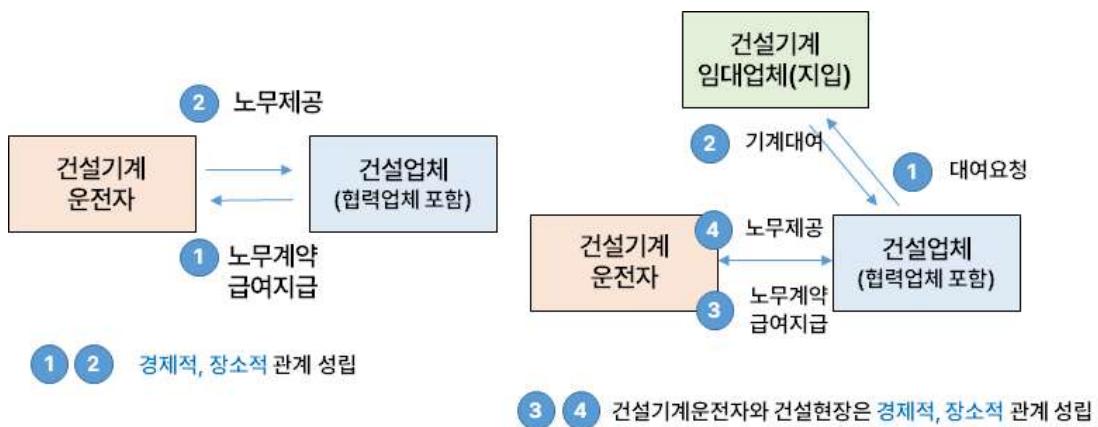
1)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이해관계자 분석

건설기계직접운전자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정의된 관계자를 먼저 이해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제3조), 건설기계 대여업과 관련한 사항(제21조)을 파악해야 한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원청 건설사 및 협력 건설사이고, 건설기계를 제공하는 자는 건설업체가 직접 소지한 건설기계나 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건설기계 개인사업자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건설사의 경우 협력사와 도급 계약을 하고, 협력사는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기계직접운전자와 노무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정규직 근로자 계약을 맺지 않는 자로, 대규모 건설현장의 업무를 충원하기 위해 고용된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 고용은 개인사업자인 운전자가 직접 맺기도 하나, 대부분은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중개(배차)업체에 등록하여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가 고용을 맺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⁴³⁾. 먼저 건설기계 미소유자인 도급기사 노무 형태⁴⁴⁾로써, [그림 VI-1]은 건설기계 미소유자가 건설업체 소유의 건설기계(자가용)를 직접 운전만 하는 형태와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임대업체에 건설기계만 임대하고 운전자와 직접 노무계약을 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 건설기계운전자와 건설업체는 경제적, 장소적 관계가 성립함을 볼 수 있다. 다만, 도급기사는 그 형태가 단기간 일회성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는 현장의 계약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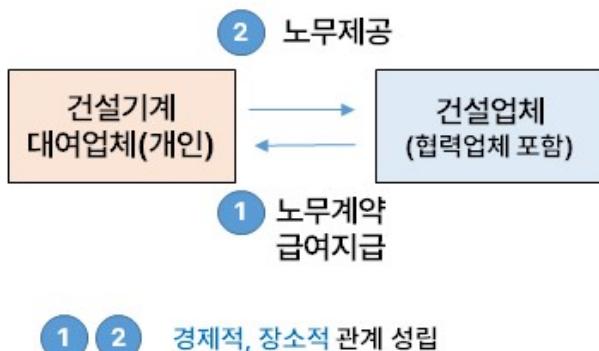
43) 실제 원청과 하도급업체, 법인형 건설기계대여업체(지입회사)가 관여하지만, 이는 너무 복잡하게 엮어지므로 일단 계 하도급이 최대한 없는 형태로 요약 정리하였다.

44)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정지현 외(2020)에서 사용한 [표 III-1]의 직종 정의를 사용한다.



[그림 VI-1] 건설기계 미소유자(도급기사)의 이해관계자 모형

다음으로, [그림 VI-2]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개인 사업자가 건설현장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물량확보 등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이 존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건설업체와만 경제적, 장소적 관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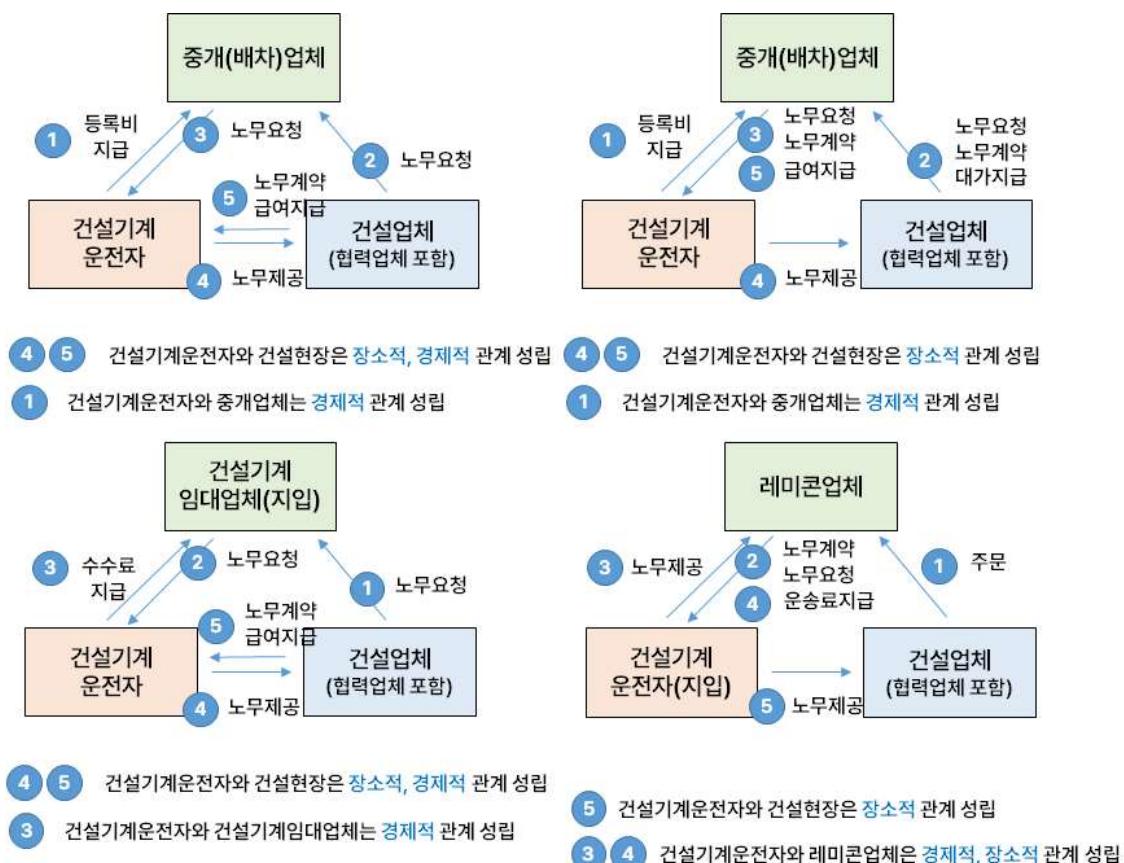


[그림 VI-2] 건설기계 소유자의 직접 계약 유형의 이해관계자 모형

마지막으로 [그림 VI-3]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임대업체나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중개를 받아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⁴⁵⁾. 이 경우,

45) 합법적인 상태의 사업운영은 아니나 현장에서 노동력 수급을 위해 사용되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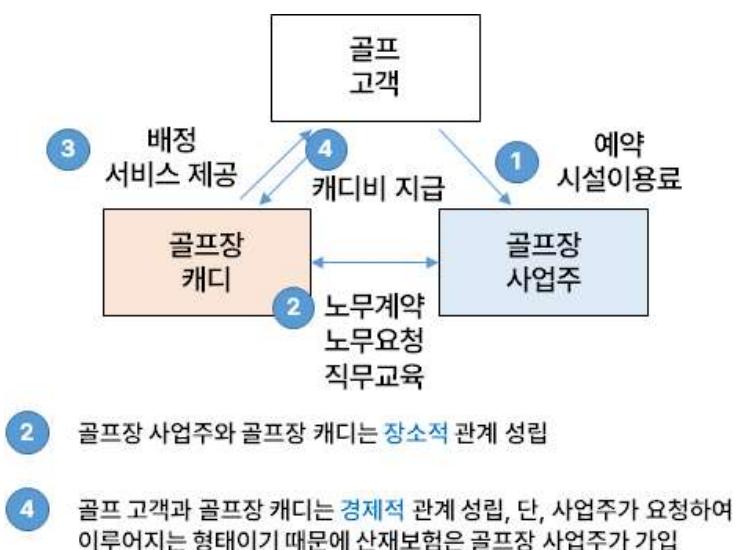
노무계약 주체와 대가지급 주체가 여러 단계로 얹혀있으며, 대가지급 역시 급여·등록비·수수료 등 사업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화물차주의 성격을 가지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레미콘업체와 지입계약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물량의 크기에 따라 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고용 규모가 달라 대가 지급의 효율성을 현장에서 선택하는 차이(정지현 외, 2020)로서, 현장의 계약형태에 따라 경제적 관계와 장소적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결국, 장소적 관계는 단순하게 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 등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나, 경제적 관계는 그 액수가 차이가 있지만, 중개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건설 및 레미콘업체 등 상황과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VI-3] 건설기계 소유자(지입, 개인사업자)의 중개 이해관계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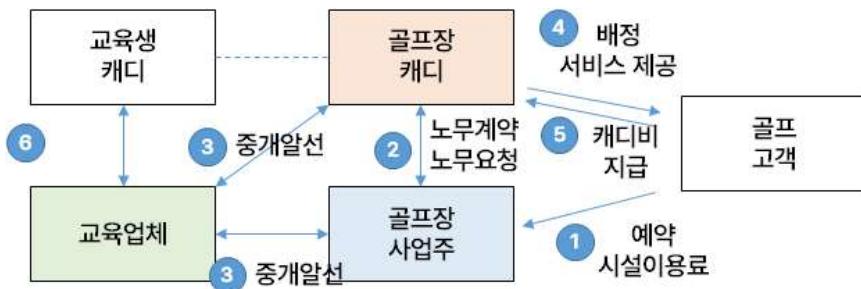
2) 골프장캐디 이해관계자 분석

[그림 VI-4]는 개인사업자를 낸 캐디(노무제공자)와 골프장(사업주)이 직접 계약 체결 과정을 보여준다.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는 고객에게 직접 급여(캐디피)를 받고, 사업주는 고객에게 시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시설이용료(그린피, 카트비, 그늘집 이용료 등)를 고객에게 받는다. 여기서 골프장 사업주와 캐디는 장소적 관계가 명확하나 경제적 관계는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로서 골프장 사용자인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장소적 관계가 성립되는 골프장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명확하나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그림 VI-4] 골프장 캐디의 이해관계자 모형

한편, [그림 VI-5]는 교육 관련 아웃소싱과 관련해 교육생 캐디가 오는 경우 역시 경제적 관계는 골프장 사업주와 관계가 없으며, 계약 역시 불분명하고 단순히 허락만 받는 구조이다. 그러나 교육생 캐디 역시 장소적으로 골프장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 이행은 골프장이 하는 것이 명확하나, 아웃소싱 업체 역시 파견의 형식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골프장 사업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다.



- ② 골프장 사업주와 골프장 캐디는 **장소적** 관계 성립
- ③ 아웃소싱업체는 인적 중개이므로 골프장 캐디와 **경제적** 관계 성립
- ⑤ 골프 고객과 골프장 캐디는 **경제적** 관계 성립, 단, 사업주가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골프장 사업주가 가입

[그림 VI-5] 골프장 캐디 교육 기관과의 이해관계자 모형

3) 택배기사 이해관계자 분석

택배기사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의 정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의 정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의 정의와 관련한 법령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택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택배서비스사업, 영업점⁴⁶⁾,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정의되어 있다⁴⁷⁾. 택배기사는 물건을 수령하여 물류센터까지 집화하거나 물류센터에 보관된 물건을 최종고객(라스트 마일; last mile)까지 배송하는 직무를 가진다. 이와 같은 택배배송의 형태와 안전관리는 물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다르며⁴⁸⁾, 택배회사가 물류업만 하는지, 소매업이나 창고업을 통해 택배업을 하는지 등 사업형태에 따라 무엇보다 차이가 크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택배회사가 중간운송업자(영업점, 대리점, 집배점 등)와 사업 계

46) 현장에서는 영업점, 대리점, 집배점 등의 용어나 중간운송, 서브물류 등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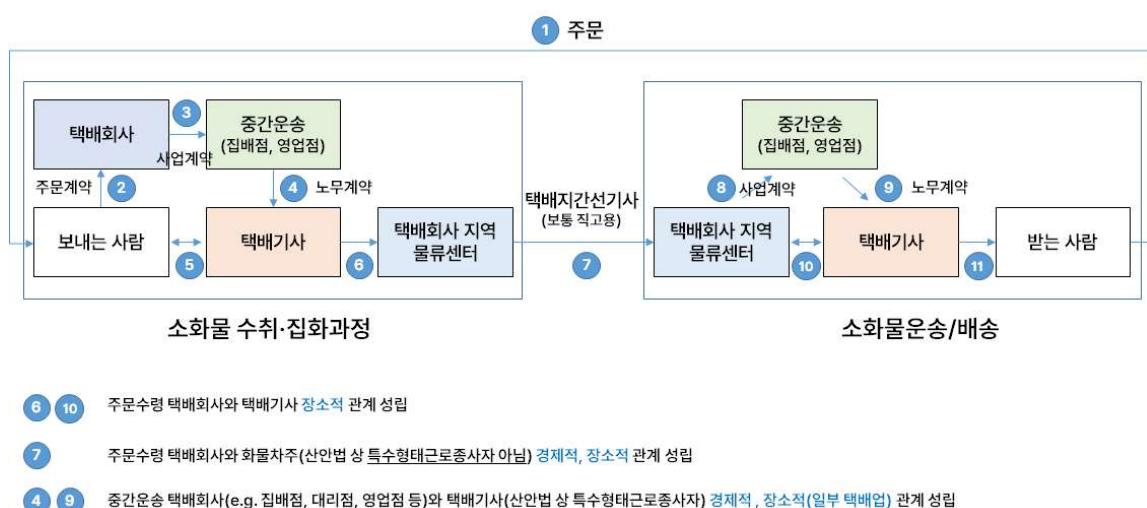
4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택배기사 직종 정의를 이 법령에 맞춰 재정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48) 실제로 택배회사마다 일반 소화물, 가구·도구 등 중량물, 신선식료품(콜드체인), 의약품 등 특징에 맞춰 택배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을 포함한 택배업 형태인 설치물류 기업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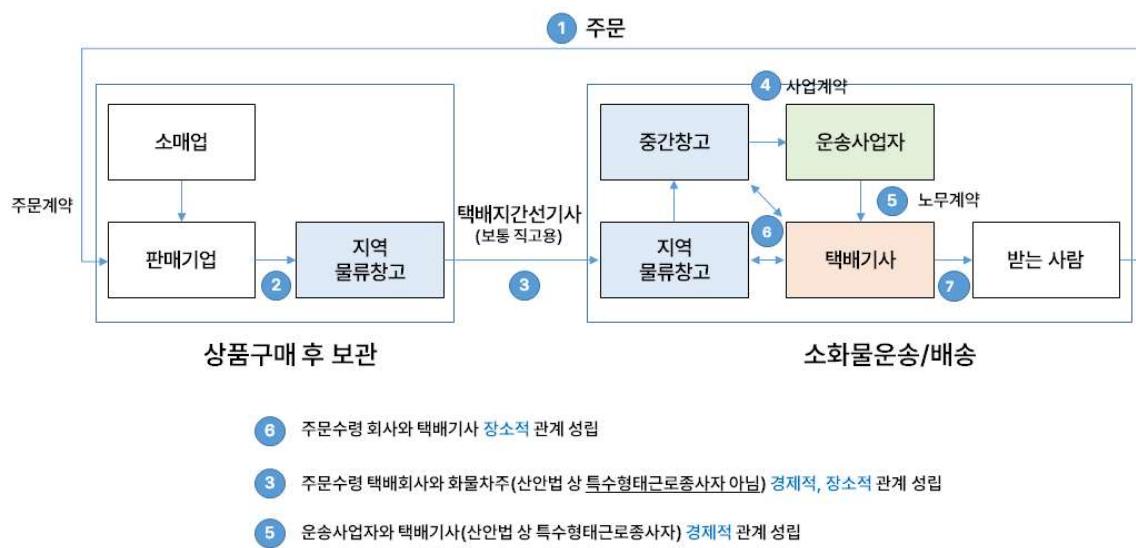
약을 맺는 택배업 형태와 택배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택배업 형태의 이해관계자 모형을 분석한다.

먼저, 중간운송업자 위주의 택배업 형태로 [그림 VI-6]은 택배기사가 보내는 사람(고객)의 물건을 중간운송업자나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집화하고, 집화 후 화물운송되어 물류센터에 보관되는 물건을 받는 사람(고객) 배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인운송사업자인 택배기사는 중간운송업자와 노무계약을 맺고, 업무는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고객 수령지 및 배송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소적 관계에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중간운송업자와 택배기사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이 장소에 따라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운송업자의 업무나 직무가 택배업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중간운송업자는 일정관리만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물류센터에 존재하는 등 현장의 장소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B 기업의 중간운송업자는 물건을 분류하고 적재하는 장소와 도구를 갖추고 있어 현장의 장소적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따라서 택배업체의 중간운송업자인 영업점, 대리점, 집배점 등의 사업 방식에 따라 경제적·장소적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운송사업자 중심 택배업 형태로 [그림 VI-7]⁴⁹⁾은 물류창고 또는 센터가 중간운송업자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배송하는 형태이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 형태로 개인운송사업자를 택배업을 위해 모집하여 직접 노무계약하는 택배기사 형태이다. 장소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택배업체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택배기사와의 계약과 경제적 관계는 운송사업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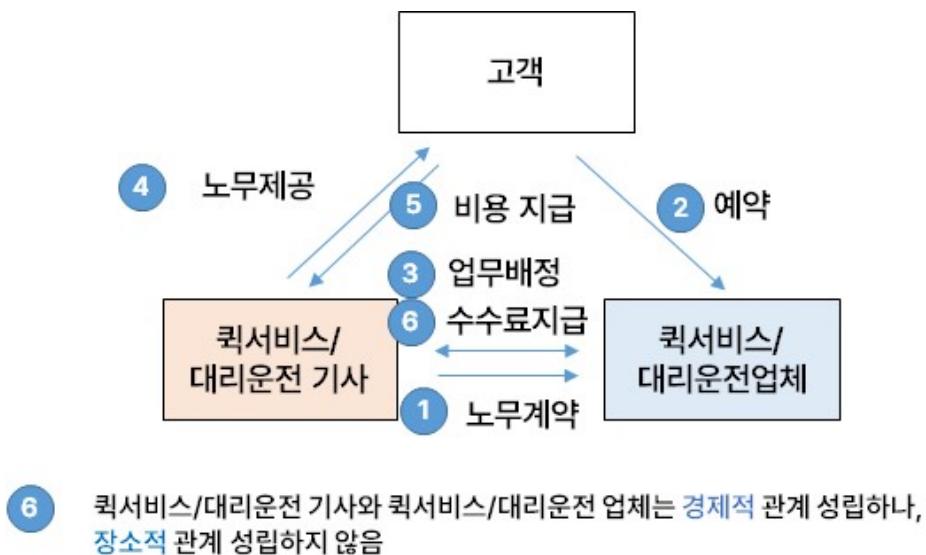


[그림 VI-7] 운송사업자 중심 이해관계자 모형

4)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이해관계자 분석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는 [그림 VI-8]과 같이, 업무를 위해 먼저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업체에 각각 등록하고 노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고객이 요청하는 노무(콜)를 업체가 기사에게 배정하고, 기사는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일부 수수료를 업체에게 다시 지급하는 형태가 전통적인 방식의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의 이해관계 모형으로 볼 수 있다.

49) 앞서 언급한 창고업 형태의 택배업 형태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며, 창고업 형태가 중간운송업자 중심의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류센터와 창고업, 중간운송업자와 운송사업자 형태가 적절히 혼합되어 사업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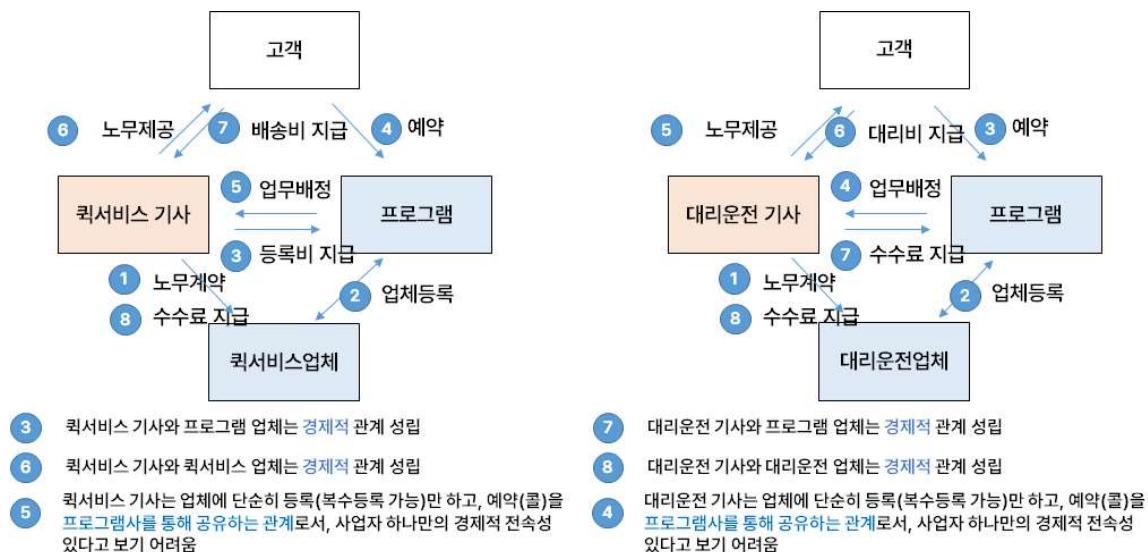


[그림 VI-8] 퀵서비스/대리운전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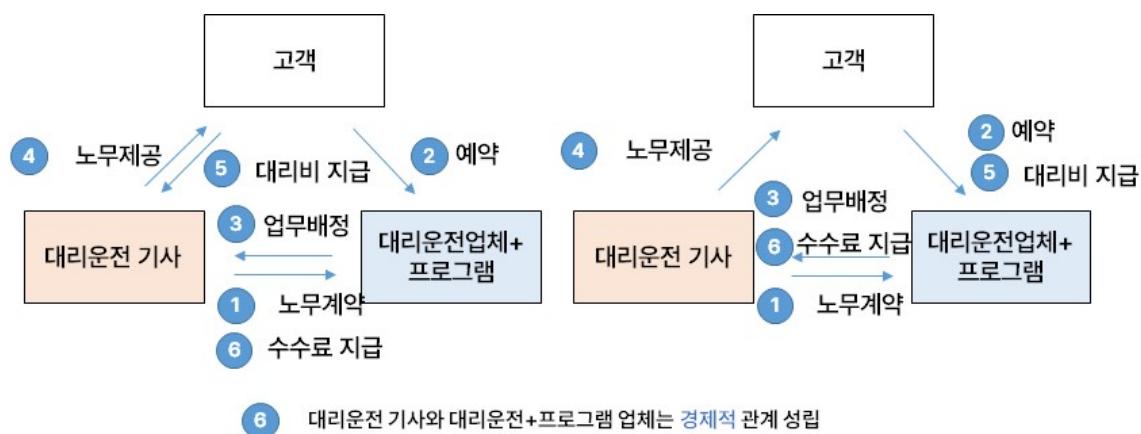
최근에는 [그림 VI-9]과 같이 노무(콜)를 모으고 중개해주는 프로그램 사이의 개입으로, 고객은 업체에 직접적으로 콜을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게 되고, 업체는 직영기사는 물론, 타 기사에게도 콜을 공유하여 노무를 요청하고,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시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퀵서비스 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의 이해관계 모형은 서로 다르게 발전하였다. 먼저, 퀵서비스 프로그램 사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정액 등록비를 받고, 대가의 분할은 퀵서비스 기사와 업체가 하는 구조이다. 반면,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는 정액 등록비가 아닌 실직별 대가 지급으로, 고객으로 받은 대가를 기사·업체·프로그램 사가 분할하는 구조이다. 즉, 실적이 많을수록 퀵서비스 생태계보다는 대리운전 생태계에서 프로그램 사의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림 VI-10]과 같이 대리운전업체에서는 프로그램 사를 통합운영하여 그 수수료의 비율을 높이는 형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 형태는 프로그램 사가 대리운전업체를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시장이 과점 형태로 변하는 계기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관계에서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모두 업체와 고용계약과 수

수료 지급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와도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그 장소가 한정적이지 않아 노무를 제공받는 측에서 현장 안전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⁵⁰⁾.



[그림 VI-9] 쿠루서비스/대리운전 업체와 프로그램사의 이해관계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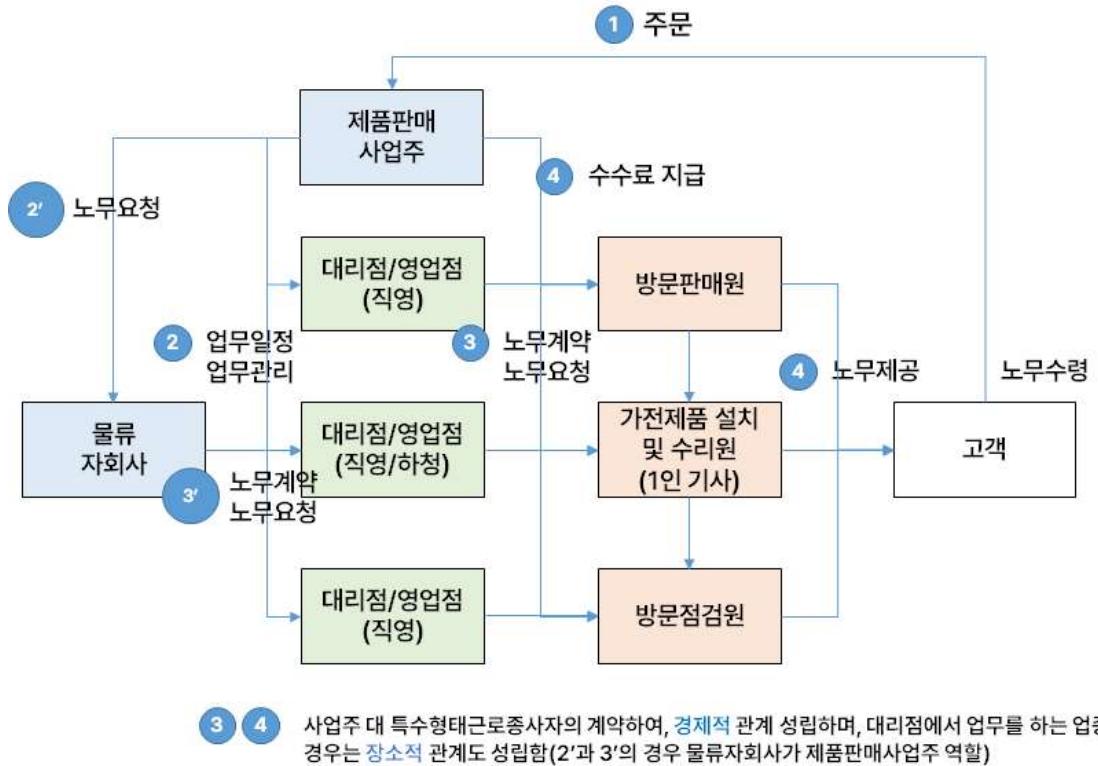
[그림 VI-10]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가 통합된 경우의 이해관계자 모형

50) 대리운전의 경우, 고객의 차량이 장소라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었지만, 고찰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객과의 관계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서 제외하고 서술한다.

5)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이해관계자 분석

방문판매원과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그림 VI-11]과 같이 사업 관계가 순차적 또는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판매사업주로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방문점검원을 모집하고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하게 된다⁵¹⁾. 이에 따라 제품판매사업주(주로 본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여 경제적 관계는 명확하다. 다만, 장소적 관계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다. 만약, 대리점에서 물건 수령이나 교육을 받는 업무가 있는 등 현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장소적 관계도 성립된다. 특히,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중량물을 지점에서 인도받는 점에서 상차 관련 현장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설치 장소나 점검 장소가 고객의 가정이나 회사, 관공서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1)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경우, 제품판매사업주가 물류자회사(e.g. 삼성전자-삼성전자로지텍, LG전자-LX판토스, 청호나이스-나이스엔지니어링 등)를 두어 하청계약업체에 업무요청을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형태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제품판매사업주의 위치를 물류자회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형가전 위주의 주기사-부기사의 2인 기사로 운영하는, 삼성전자로지텍이나 LX판토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정규직으로 직고용하거나 주기사-부기사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관계로 보아, 근로자인 부기사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조치 대상을 받으나 5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일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림 VI-11]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이해관계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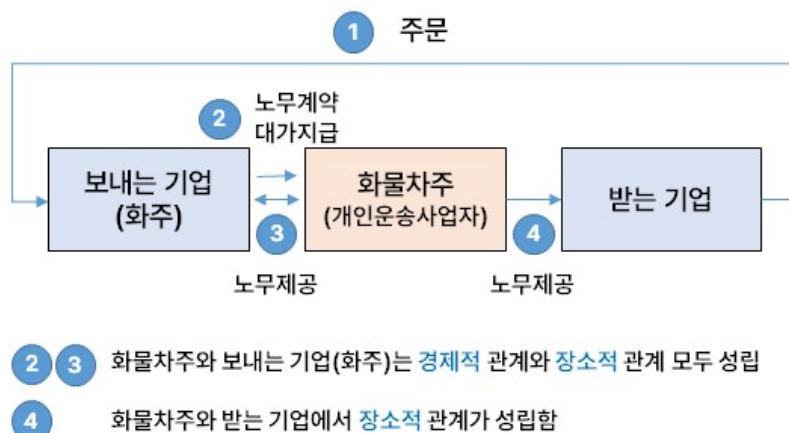
6)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분석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관리법」 제2조의 정의를 파악하여, 화주와 화물차주,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수령인(주문자)의 관계자를 이해해야 한다. 전체적인 법적 관계는 차량이나 기계를 직접 소유해야 하고, 일감을 중개받는 관계자가 있다는 점에서 택배기사와 건설기계직접운전자(도급기사 제외)와 유사한 이해관계자 모형을 보이고 있다⁵²⁾. 다만, 운송사업은 발주자와 공급자의 장소에서 물건을 적재·하역한다는 점에서, 단일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나 소비자 장소 중심의 택배기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림 VI-12]는 개인운송사업자의 경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인다. 직접

52) 특히,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현장까지 레미콘을 운송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의 관계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

계약하는 개인운송사업자인 화물차주는 화주와 경제적, 장소적 관계가 모두 성립하고, 받는 수령기업에도 장소적 간계가 성립하여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한 의무이행주체는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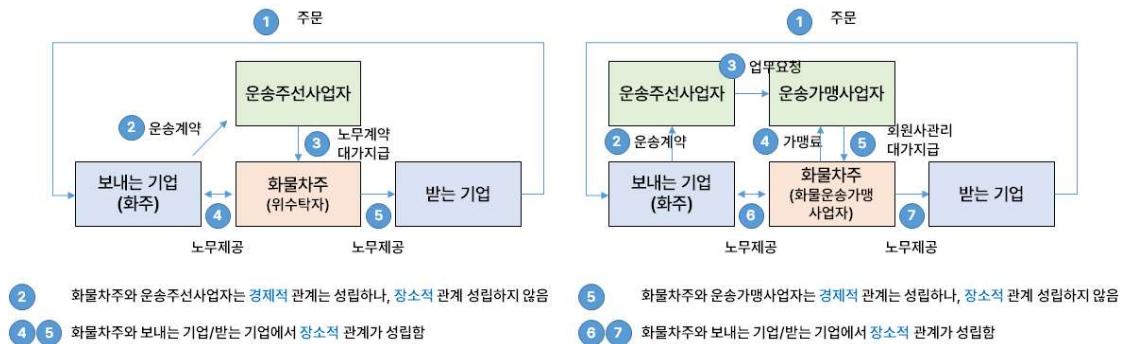


[그림 VI-12] 화물차주(개인운송사업자) 이해관계자 모형

그러나 개인운송사업자 형태로는 충분한 화물수주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림 VI-13]과 같이 개인운송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운송주선사업자(또는 가맹사업자)에 차량을 위수탁하여 운송 일감을 중개 받아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주는 운송주선 또는 가맹사업자와 경제적 관계가 성립되며, 실제 업무현장은 화주의 상차 장소와 주문자인 수령자의 하차 장소로서 장소적 관계를 나타낸다. 운송주선사업자를 가맹관리하는 가맹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있듯이, 화물운송가맹사업자도 이에 준한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⁵³⁾. 앞서 개인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하는 화주와 받는 기업은 장소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관계는 위수탁 관계 및 가맹관계에 있는 운송주선(가맹)사업자와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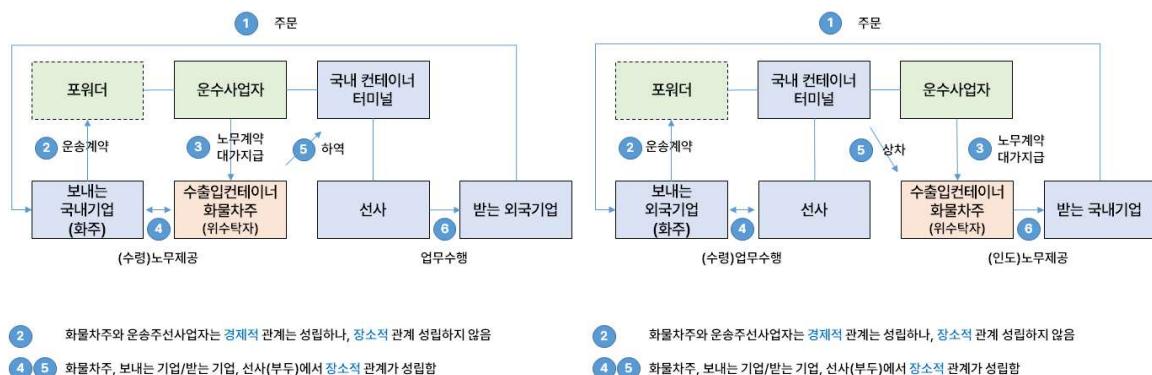
53) 현재는 외식업과 편의점만 해당되지만, 화물차주의 산업재해 건수가 많고 가맹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조치 책임주체를 검토해두는 것이 요구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그림 VI-13] 중개형 운송사업자 중심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모형

앞서 경우와 다른 사례로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로, [그림 VI-14]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포함된 모형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적재함, 탱크로리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는 경우나, 수출입 컨테이너는 견인 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되어, 화물을싣거나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형태이다. 이때 컨테이너는 수출입 선사의 자산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기사는 선사-컨테이너 터미널-운수사업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노무계약과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이다. 특히, 컨테이너 선별과 같이 화물차주의 업무가 아님에도 영업을 위해 부가업무를 할 가능성도 수반되고 있다.



[그림 VI-14] 컨테이너 화물차주 이해관계자 모형

3. 안전조치 감독 방안

1) 사업에 따른 이해관계자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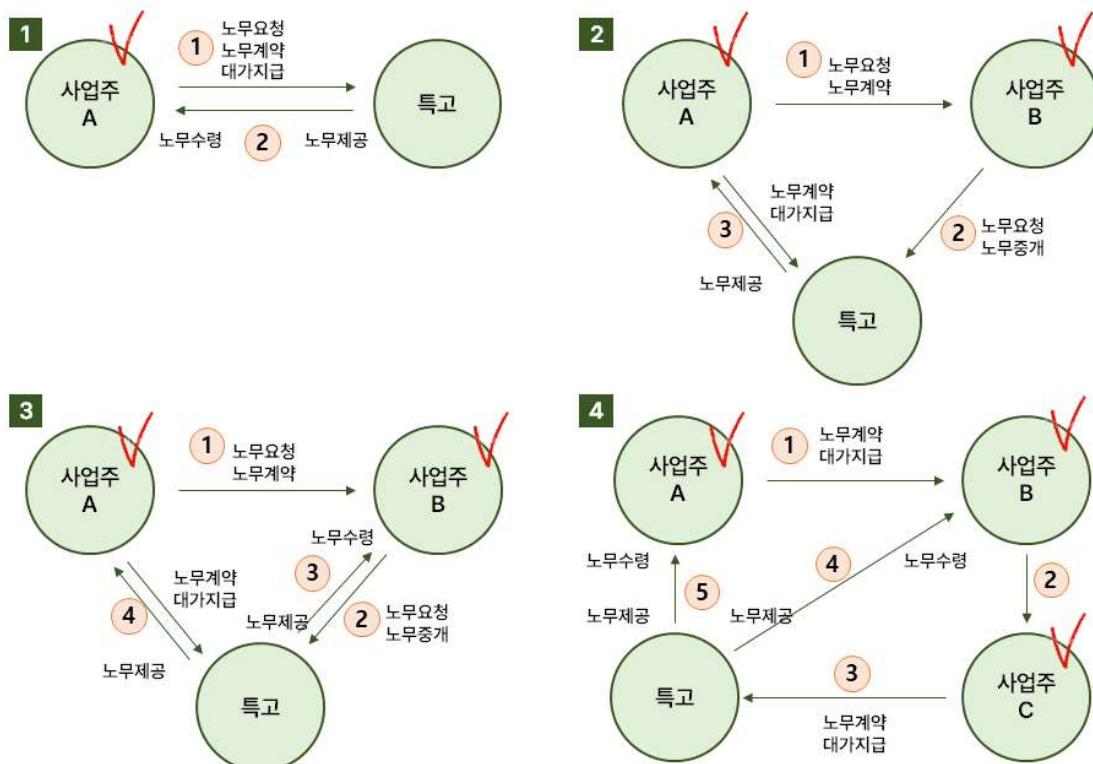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무형태에 따라 사업장이 한정적이고 사업주에게 사용관계가 지배적일 수도 있으며, 공공장소·공중이용시설·개인장소 등 한정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조치를 하는 안전조치 방법과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현장조치로 구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그 이행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조치는 직무교육·작업위험성평가·안전매뉴얼·안전교육 및 훈련·고객응대 대응방법 등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역시 노무를 제공받는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전조치 차원에서 동시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면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고객) 장소로 이동하고 작업하는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확인하는 절차나 기능을 구현하고, 준수 및 위반 여부에 따라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 상벌사항을 계약관계에 명시하면, 서로 간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고려된다. 반면, 현장조치는 지배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조치하고 관리·감독하는 방법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도급인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수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조치와 현장조치의 이행주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 분석을 중심으로 노무 중개/알선 및 노무 제공 관계를 파악하여 직종들의 이해관계자를 유형화하였다. 특히, 노무의 관계와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구조화하여, [그림 VI-15]와 같이 B2B 사업형

태의 이해관계자 모형과 [그림 VI-16]과 같이 B2C 사업형태의 이해관계자 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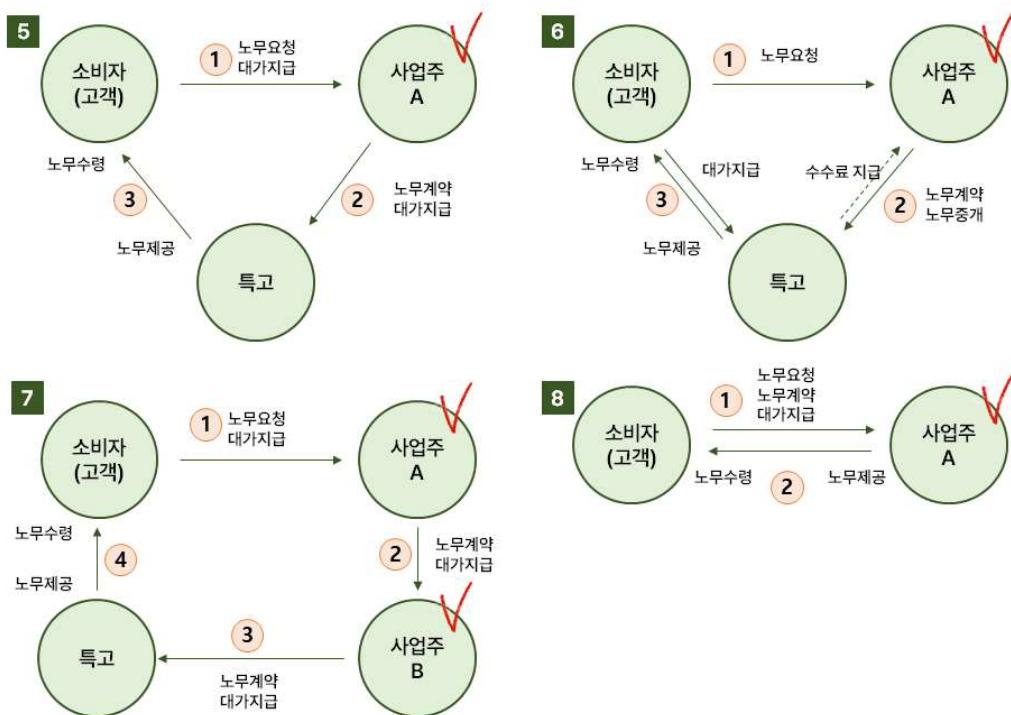
B2B 구조는 먼저 사업주와 자영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계(유형 1)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3단계 관계로 사업주 간에 노무중개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관계(유형 2)이다⁵⁴⁾. 유사하게, 요청이나 중개관계에 있어, 화물배송과 같이 두 사업주 모두에게 노무를 제공해야만 하는 형태(유형 3)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제4자 관계로 사업주 간의 발주-공급 관계에서 중개알선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유형 4)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VI-15] B2B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54) 사업주 A가 사업주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주 B가 일정 급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가지므로 대표 유형으로 재하정 관계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B2C 구조는 소비자를 포함한 3단계 관계로 소비자와 사업주 간의 거래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관계(유형 5)이다. 다소 다르게, 소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직접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로, 사업주는 소비자의 노무요청을 단순히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유형 6)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를 포함한 4단계 형태로 소비자와 사업주 A 간의 거래 관계에 노무를 중개할 선하는 사업주 B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유형 7)도 볼 수 있다. 이때, 유형 7은 사업주 A와 사업주 B의 계약에 따라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둘 필요가 있다⁵⁵⁾.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관계(유형 8)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로서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은 물론,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VI-16] B2C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55) 사업주 A와 B가 사업자 간 동등한 거래계약이라면 사업주 B가 모든 책임을지는 게 적정하나, 사업주 A와 B가 도급관계이거나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관계라면 사업주 A가 안전관리 감독 관련 책임을지는 게 적정하다.

2) 사업유형에 따른 사전조치 및 현장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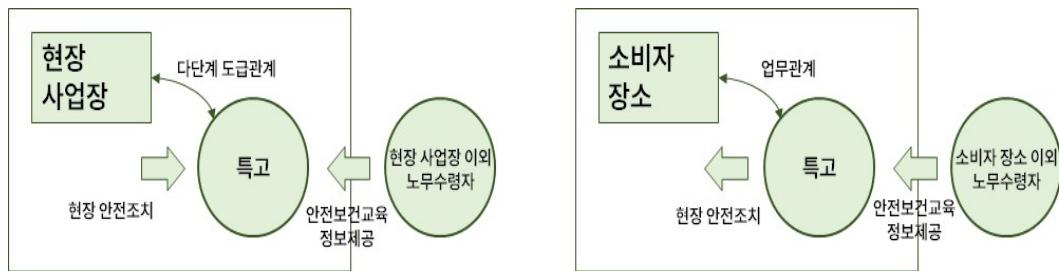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현장을 지배하는 사업자, 현장 사업장 이외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중개/알선 등), 소비자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개/알선 과정과 현장지배력 정도를 구분하여, 사전 및 현장안전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VI-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중 중개/알선 사업자는 작업현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소개하고 투입하는 자로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직무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 이행하고, 안전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 안전정보, 고객대응 또는 작업중지 대응 방침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현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결국 다단계 노무 요청 구조에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 현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없는 공공도로나 소비자 장소(일반 가정, 건물 등)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로서 직접 안전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접점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중개로만 이루어지는 가상기업 형태로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플랫폼 이용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도드라지고 있다. 이 경우, 현장은 대부분 사업장이 아닌 소비자 장소로만 특정될 경우가 많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적 특징과 자영업자 특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 7에서 사업주 A의 사업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장소도 아니고 노무제공 장소도 아닌 상태에서, 사업주 B 역시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현장의 안전조치는 공백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사용관계를 맺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을 책임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는 직접 현장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해야 한다.

〈표 VI-6〉 사업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방법 차별화

	현장 사업장 이외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현장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
사전안전 조치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 고객대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직무교육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교육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따른 안전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정보 제공 • 고객 대응 및 작업중지 등의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안전조치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현장 안전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상 사용관계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현장 안전조치 책임(공공도로, 소비자 장소(가정, 건물 등)은 사용관계 없어 해당사항 아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범위 정의

이에 대해, [그림 VI-17]은 장소가 사용관계가 사업자와 있는 현장인지, 사용관계가 소비자와 있거나 공공도로 등 사업자가 없는 현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보여준다. 왼쪽의 그림은 현장 사업장이 존재하는 예시로, 이 경우 사업장 이외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중개/알선업체 등은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전조치에 책임지며, 현장 사업장은 단단히 도급관계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를 책임진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소비자 장소 예시로, 소비자 장소 이외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정보제공을 책임지며,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 성격으로 본인이 직접 현장 안전조치를 책임지고, 소비자의 안전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17] 장소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

즉, <표 VI-7>과 같이 기업의 사업장과 소비자 장소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의 책임소재와 감독여부를 이행주체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위험요인분석 결과로 나온 안전조치 사항들에 대해 각 직종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작업하는 사업자 장소로 사용관계가 있고 지배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공공도로, 소비자 장소 등 불특정하게 사용관계가 없는 장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현장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도로상의 이동이나 화물의 하차 및 배송, 방문점검이나 가전제품의 설치에 대한 내용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 위치에서 그 안전조치 책임을 스스로 다해야 한다. 단, 노무를 요청한 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이행, 안전정보제공, 고객대응 및 작업중지 방침 수립 등에 대한 사전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서로 간의 위험을 공유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위치에 따라 사전안전조치와 현장 안전조치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의 장소나 내용, 방법 역시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VI-7〉 현장안전조치의 책임 주체 및 감독 사항

직종명	사용관계가 있는 장소에서의 현장안전조치 의무	사용관계가 없는 장소에서의 현장안전조치 의무
현장안전조치 책임주체	현장의 <u>지배적</u> 권리를 가진 사업자	사업자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 노무를 요청한 사업주는 현장의 안전정보제공 및 안전보건교육 수행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함)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 기존 제672조제2항에 제42조, 제44조 추가	• 재38조(공공도로 상 이동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경우)
골프장 캐디	• 기존 제672조제3항제1호에 제663조부터 제666조 추가	-
택배기사	•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 제42조, 제44조, 제171조부터 제178조, 제191조부터 제195조,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	• 제86조, 제89조, 제98조, 제99조, 제657조부터 제666조 • 제190조 추가
퀵서비스 기사	-	•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대리운전 기사	-	-
방문판매원	• 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	-
방문점검원	-	• 제31조부터 제33조, 제663조부터 제666조 • 제24조, 제42조, 제44조,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제171조부터 제178조 추가	• 제31조부터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제656조부터 제666조 • 제190조 추가
화물차주	• 제38조, 제42조, 제44조제171조부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 제227조, 제279조, 제298조 • 제190조 추가	• 제32조, 제33조, 제38조 • 제42조, 제44조 추가

구체적으로, 사전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조치의 이행책임주체를 분석하면 <표 VI-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B2B의 유형 1의 경우는 사전조치는 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수행하고, 현장 안전조치는 현장 사업자가 책임진다. B2B의 유형 2는 사업주 B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노무계약체결자이고 실제 노무는 사업주 A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주 A는 안전한 작업현장을, 사업주 B는 사전 안전교육 및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 책임의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유형 3은 다소 다르게 사업주 A와 사업주 B가 모두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모두 안전한 작업현장을 제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먼저 노무를 요청하는 사업주 B측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B2B의 유형 4는 계약체결사업자인 사업주 C는 사전조치 의무를 지니며, 사업주 A와 B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현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B2C의 유형 5는 계약체결사업자인 사업주 A가 사전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만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어느 정도 안전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폭언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상규에 따라야 하는 점은 명확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무를 요청한 사업주 A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표 VI-6>에서 제시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유형 6은 유형 5 와 유사하지만, 대가 산정을 소비자에게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노무중개와 계약관계는 소비자-사업주 A-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의 관계로 노동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 A가 사전예방조치의 책임과 사용관계가 있는 현장의 유무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를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다. B2C의 유형 7은 사업주 A의 요청으로 사업주 B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제4자 관계의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사전조치는 사업주 B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 A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장 안전조치는 사업주 A가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B2C의 유형 8은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모든 안전조치 책임을 져야 한다.

〈표 VI-8〉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감독 주체 확인

	B2B 사업 (p.204의 [그림 VI-15] 유형)				B2C 사업 (p.205의 [그림 VI-16]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사전안전 조치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 고객대응 포함)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사업주)	사업주 B	사업주 B	사업주 C	사업주 A	사업주 A	사업주 B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사업주)
현장 안전조치 (사업자와 사용관계가 있는 현장의 경우)	사업주 A	사업주 A	사업주 A 사업주 B	사업주 A 사업주 B	사업주 A	사업주 A	사업주 A 또는 사업주 B	-
현장 안전조치 (사업자와 사용관계가 없는 현장의 경우; 공공 도로, 가계, 건물 등)	<p style="text-align: center;"><u>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인사업자)</u></p> <p>* 현장안전조치는 사업주가 지배하는 장소와 노무 상 사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음</p> <p>* 사업주가 없는 사업장으로 지배적 사용관계가 없는 일반 도로나 소비자 장소(가정, 아파트, 건물 등)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현장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 소비자 및 시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함</p> <p>* 단, 노무를 요청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현장의 안전정보제공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의무를 책임져야 함</p>							

3) 직종별 안전조치 감독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직종들의 이해관계자 형태를 〈표 VI-9〉와 같이 정리하였다⁵⁶⁾. 먼저 B2B 사업 유형에는 건설기계직접운전자와 화물차주가

해당된다. 건설기계직접운전자는 유형 2, 4에 해당 가능하다. 유형 2는 원청(사업주 A)-중개/대여업체(사업주 B)-건설기계직접운전자의 관계이며, 유형 4는 원청(사업주 A)-협력업체(사업주 B)-중개/대여업체(사업주 C)-건설기계직접운전자 구조로 볼 수 있다. 화물차주는 보내고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형 3과 같이 발주자(사업주 A)-공급자(사업주 B)-개인운송사업자의 관계와 유형 4와 같이 발주자(사업주 A)-공급자(사업주 B)-운송주선사업자(사업주 C)-화물차주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B2C 사업 유형에서, 골프장 캐디는 유형 6에 해당한다. 이는 골프장 이용객-골프장 사업주(사업주 A)-골프장 캐디 간의 관계이다. 택배기사는 유형 7로서, 소비자-택배업체(사업주 A)-중간운송업자(사업주 B)⁵⁷⁾-택배기사로 볼 수 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소비자-업체(사업주 A)-기사 간의 관계인 유형 5나 유형 6에 해당하며, 대가지급을 어디서 하느냐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유형이든 모두 사업주는 업체로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사항은 달라질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문판매원과 방문점검원은 소비자-업체(사업주 A)-판매원/점검원 관계로 볼 수 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소비자-업체(사업주 A) 간의 관계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 유형 5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업체가 본사가 아닌 대리점으로 보는 경우 유형 7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업의 대리점은 본사의 직영이 아니지만, 방문점검원은 대리점이 본사 직영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와 대리점을 하나의 사업주로 보아 유형 5로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본사와 대리점의 업무 분리를 위해 유형 7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소비자-업체(사업주 A)-위수탁업체(사업주 B)-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관계로 유형 7에 해당한다.

56) 유형 1과 8은 기초적인 이해관계자 형태로 제외하였다.

57) 앞서 이해관계자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이 위치에 중간운송업자는 하나의 경우일 뿐, 운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표 VI-9〉 직종에 따른 사업유형별 이해관계자 모형 확인

직종	B2B 사업			B2C 사업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	△*
대리운전 기사				●	●	△*
방문판매원				●		●
방문점검원				●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		●	●			

* 프로그램사 중개까지 고려하는 경우

** 방문점검원의 안전조치 사항을 본사와 직영대리점으로 구분하려면 유형 7에 해당

결과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구분하여 사전조치와 현장 안전조치의 책임자를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표 VI-10〉은 9개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사전 안

전조치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주체와 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이행주체를 사업의 유형, 장소적 특징, 계약 관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제시한 이해관계자의 유형화는 모든 직종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서도 유형에 맞춰 의무이행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모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고용보험법」에 포함된 지간선 기사는 B2B 형태로 운송사업자에 속해있으며, 하나의 택배회사가 운송사업자에 노무를 요청하여, 지간선 기사가 물류센터 간에서 화물을 집화하고 운송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건설현장에 건설기계직 접운전자를 중개하는 유형 2와 유사하게 해당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집화하고 배송할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이행 또는 확인해야 할 책임을 지니며, 택배회사는 화물을 집화하고 운송할 두 물류센터의 현장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표 VI-10〉 사업유형에 따른 직종별 안전조치 감독 주체

구분	B2B 사업			B2C 사업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13. 화물차주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13. 화물차주	6. 퀵서비스기사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4. 골프장캐디 6. 퀵서비스기사 9. 대리운전기사	5. 택배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사전 안전조치 주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 고객대응 포함)	<u>사업주 B</u> 2. 건설기계 중개/대여업체	<u>사업주 B</u> 13. 공급자	<u>사업주 C</u> 2. 건설기계 중개/대여업체 13. 운송사업자	<u>사업주 A</u> 6. 퀵서비스업체 9. 대리운전업체 10. 방문판매업체 11. 방문점검업체	<u>사업주 A</u> 4. 골프장사업주 6. 퀵서비스업체 9. 대리운전업체	<u>사업주 B</u> 5. 중간운송업자 10. 대리점주 11. 대리점주 12. 대리점주
현장 안전 조치 주체	(사업자와 사용관계가 있는 현장)	<u>사업주 A</u> 2. 건설업체	<u>사업주 A</u> 13. 발주자	<u>사업주 A</u> 2. 원청 13. 발주자	-	<u>사업주 A</u> 4. 골프장사업주
	(사업자와 사용관계가 없는 현장; 공공 도로, 가계, 건물 등)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트럭 등 도로 이용직종만 해당)	13. 화물차주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 (트럭 등 도로 이용직종만 해당) 13. 화물차주	6. 퀵서비스기사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5. 택배기사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VII. 결론

VII. 결론

1. 규제 반영 방향

1) 안전조치 이행주체 정의

본 연구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안전조치와 현장 안전조치로 구분해야 할 근거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이해관계자 분석과 직무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동법 제7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사항과도 연결되며, 또한, 동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예방 사항과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필요성도 현장 안전조치와 사전안전조치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의 노무요청과 노무계약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각 단계에서 장소적 업무관계나 경제적 계약 관계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와 지시 및 명령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현장 안전조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지배적 사업장을 관리하는 주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조치는 관련 사업주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대부분이 현장 안전조치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장의 노무요청을 중개등록업체나 소속계약업체 와 맺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이 업체들은 노무를 요청한 현장의 안전정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등을 미리 사전확인하여 현장에 투입할 의무를 지니는 방향으로 안전조치 책임소재를 구분하였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중개등록업체나 소속계약업체는 인력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관리하고 노무를 요청한 현장의

안전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규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의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더불어, 사용관계가 없는 장소, 즉, 공공장소나 소비자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로서의 의무 규정으로 스스로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이나 가계, 건물 등의 이동이나 업무 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자라는 인식으로 스스로 안전운전이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때 도로에서의 안전운행교육이나 주의점, 소비자로부터의 위협이나 상해, 무리한 요구 등에 대한 사전조치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요청한 사업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장의 사용관계가 노무를 요청한 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스스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2) 안전조치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장이 매번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장이 아닌 공공도로, 가게, 건물 등 다양한 장소가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를 직무경험 분석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즉, 경험 과정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할 뻔한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안전조치 사항에 포함해야 하며, 특징이 비슷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안전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직종에 있어 직무범위가 결정되지 못해, 직종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고나 재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조치 역시 직무범위의 명확한 정의에 따라 조정하고, 현장에 배포한 뒤 불필요한 업무로부터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신규 직종 고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14종의 직종 역시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화에 따라 신규직종이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직종 역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유형(B2B와 B2C)의 구분과 이해관계자의 구분에 따라 적용하여 미리 이행주체와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에 포함된다면,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유사 직종과 함께 관리하면 되지만, 만약,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라면, 새롭게 직무분석을 통해 안전조치 사항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사전안전조치와 현장 안전조치 측면에서 해당 이행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 있어서 해당 직종의 사업 및 직무 분석을 기초로 안전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경제적 전속성 폐지 이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계된 모든 노무를 제공받는 자들의 역할 및 책임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업무와 지시 관계를 분석하여, 사전안전조치 이행주체와 현장 안전조치 이행주체를 구분하여 신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도, 사업주와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이해관계자 구조에 따라 점차 확대해가며 인터뷰 군을 추가했으며, 각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필요성을 <표 V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이해관계자 분석과 유형화를 통해 직종별 이해주체 구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즉,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안전조치의 이행 주체,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조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작동성을 강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직무분석과 직무경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 사례를 수집하였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관계없는 규칙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방안을 개선하고, 특히, 직무분석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가능성 을 도출하였다. 이는 직종별 직무범위를 지침으로 제공하고 현장의 집중안전 사항으로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잡한 직무 관계를 직종별로 종합하여 비교하고 유형화하여, 유사한 이해관계자 형태와 그에 포함되는 직종군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사 직종군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도출 및 개선하고, 감독해야 할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역할, 즉, 사전안전조치와 현장 안전조치의 역할을 구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VII-1〉 연구 기대효과

연구필요성	연구목표	기대효과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이행 책임주체의 정의	(이해관계자 분석) 계약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책임주체를 정의	직종별 이행주체 구분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효과적인 안전조치 방법 제시	(직무분석 및 점검표 개발) 직무분석을 통한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작업 형태 및 장소에 따른 효과적 안전조치 방법 제시	직무분석에 따른 현장 위주의 안전조치 사항 개선 직무범위 정의 필요성 검토
③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 실태조사)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주체 및 방법 점검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의 의견 공유 부족한 안전조치 사항 개선
④ 법령 및 실무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 분석) 법령과 문헌의 이론적 고찰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제시	직종에 따른 사전안전조치 및 현장 안전조치 방법 제시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5),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국민권익위원회(201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15),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대식(2009),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 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KODIT Research 격울호.

김수근(2019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1.택배기사,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

김수근(2019b),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2.퀵서비스,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

박소민(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노동법률 리포트 2020.9월호.

박지순, 권순원, 박선규, 우창수, 이종수(20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이종수, 이명규, 윤정향, 황수옥(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ISSUE PAPER, 145 호.

이후송(20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분석 및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윤구, 방준식, 권혁, 이재현, 노승민, 박성주, 김재현(2021), 산업안전보건
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
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지현, 방준식, 김기남, 노하영, 신용우, 이준호, 이승준(2020), 건설기계 특
고종사자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홍준, 장희은(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
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최은숙, 주영수, 조선주, 이승욱(201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
리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통계청(2021),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Abstract

Field Survey of Improving Safety Measures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Review of Their Effective Supervisory Method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afety measures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by identifying risk factors of their work. We define the stakeholders of nine types of occupation included in special types for clarifying who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safety measure for such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review supervisory method of persons.

Method: We identify the risk factors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rough job analysis and focused-group interview. The matrix approach is then used to identify additional safety measures, matching risk factors and safety measures. To clarify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safety measur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e also conduct stakeholder analysis and define the stakeholders based on the result of focused-group interview. Finally, the responsibility for person provided with labor of such person in a special type of employment

is divided into pre-safety measures(safety and health educ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safety, etc.) and on site-safety measures.

Results: We derived additional safety measures for managing safety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More importantly, we also define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safety measure for such persons through stakeholder analysis and two supervisory directions are suggested for managing safety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pre-safety measures(safety and health educ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safety, etc.) and on site-safety measures.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s necessarily additional safety measures for nine types of occupation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lso, to effectively supervise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conducting safety measure for such persons, we proposed two supervisory methods of pre-safety measures(safety and health educ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safety, etc.) and on site-safety measures.

Key words: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afety measure, supervisory method, field survey, stakeholder analysis

연구진

연 구 기 관 : 동국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

연 구 책임자 : 서용윤(부교수, 동국대학교)

연 구 원 : 이상훈(조교수, 한남대학교)

보 조 원 : 이종빈(전임연구원, 부경대학교)

보 조 원 : 김대민(조교수, 동서대학교)

보 조 원 : 김정민(겸임교수, 부경대학교)

보 조 원 : 이유정(연구원, 휴먼메카)

보 조 원 : 김형만(겸임교수, 동서대학교)

보 조 원 : 이세정(박사과정, 부경대학교)

보 조 원 : 정재호(석사과정, 부경대학교)

연구상대역 : 변정환(연구위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기간

2022. 4. 11 ~ 2022.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2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868)**

발 행 일 : 2022년 10월 31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용윤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52

팩 스 : 052-703-0334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782-64-5